농업보험법

국 가 일본

원 법 률 명 農業保険法

제 정 1947.12.15 法律 第185号

개 정 2017.06.23 法律 第74号

수 록 자 료 농업보험법, pp.1-113

발 행 사 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20

이 번역문은 외국 법률의 해석이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農業保険法

昭和二十二年法律第百八十五号

施行日: 令和二年四月一日

第一章 総則

第一条(目的)

この法律は、農業経営の安定を図るため、災害その他の不慮の事故によつて農業者が受けることのある損失を補塡する共済の事業並びにこれらの事故及び農産物の需給の変動その他の事情によつて農業者が受けることのある農業収入の減少に伴う農業経営への影響を緩和する保険の事業を行う農業保険の制度を確立し、もつて農業の健全な発展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第二条 (農業保険)

農業保険は、農業共済組合若しくは農業共済組合連合会又は市町村(特別区のある地にあっては、特別区。以下同じ。)の行う農業共済事業若しくは農業共済責任保険事業又は農業経営収入保険事業及び政府の行う再保険事業又は保険事業とする。

2 国は、農業者の農業保険への加入が促進されるよう、農業者の適切な選択に資する情報の提供等に努めるものとする。

第三条(法人格)

農業共済組合及び農業共済組合連合会(以下 「農業共済団体」という。)は、法人とす る。

농업보험법

1947년 법률 제185호

시행일: 2020년 4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해 및 그 밖의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농업인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는 공제사업 및 이러한 사고, 농산물의 수급변동 및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농업인이 입을 수 있는 농업수입의 감소에 따른 농업경영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는 보험사업을 실시하는 농업보험제도를 확립함으로써 농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보험)

① 농업보험은 농업공제조합이나 농업공제조합연합회 또는 시정촌(특별구가 있는 곳의경우에는 특별구, 이하 같다)이 실시하는 농업공제사업이나 농업공제책임보험사업 또는 농업경영수입보험사업 및 정부가 실시하는 재보험사업 또는 보험사업으로 한다.

② 국가는 농업인의 농업보험 가입이 촉진되도록 농업인의 적절한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의 제공 등에 노력한다.

제3조(법인격)

농업공제조합 및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이하 "농업공제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第四条(名称)

農業共済組合又は農業共済組合連合会の名称中には、農業共済組合又は農業共済組合連合会という文字を用いなければならない。

2 農業共済団体でない者は、その名称中に農業共済組合又は農業共済組合連合会という文字を用いてはならない。

第五条 (区域)

農業共済組合の区域は、第七十三条第四項に 規定する特定組合以外の農業共済組合にあつ ては一又は二以上の市町村の区域、同項に規 定する特定組合にあつては一又は二以上の都 道府県の区域による。ただし、特別の事由が あるときは、この区域によらないことができ る。

2 農業共済組合連合会の区域は、都道府県又は全国の区域による。

第六条(住所)

農業共済団体の住所は、その主たる事務所の 所在地にあるものとする。

第七条(登記)

農業共済団体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登記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り登記すべき事項は、登記 の後でなければ、これをもつて第三者に対抗 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八条 (事業年度)

農業共済団体の事業年度は、四月一日から翌

제4조(명칭)

① 농업공제조합 또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명칭 중에는 농업공제조합 또는 농업공제조 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농업공제단체가 아닌 자는 명칭 중에 농업공제조합 또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구역)

① 농업공제조합의 구역은 제73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조합 이외의 농업공제조합인 경우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시정촌의 구역,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조합인 경우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도도부현의 구역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구역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구역은 도도부현 또는 전국의 구역에 따른다.

제6조(주소)

농업공제단체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7조(등기)

① 농업공제단체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은 등기 후가 아니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8조(사업연도)

농업공제단체의 사업연도는 4월 1일부터 다

[]

年三月三十一日までとする。

第九条 (印紙税の非課税)

農業保険に関する書類には、印紙税を課さない。

第十条 (農作物共済の共済掛金の負担)

国庫は、農作物共済につき、水稲及び第九十八条第一項第一号の政令で指定する食糧農作物に係るものにあつては、第百三十六条第一項に規定する共済目的の種類ごとに、農業共済組合の組合員、第二十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全国連合会(全国の区域をその区域とする農業共済組合連合会をいう。以下同じ。)の組合員又は第百七条第一項に規定する共済事業を行う市町村との間に当該共済事業に係る共済関係の存する者(以下「組合員等」という。)の支払うべき共済掛金のうち、当該組合員等に係る共済金額に、当該組合員等に係る第百三十七条第一項の基準共済掛金率を乗じて得た金額の二分の一に相当する金額を負担する。

2 国庫は、農作物共済につき、麦に係るものにあつては、第百三十六条第一項に規定する共済目的の種類ごとに、組合員等の支払うべき共済掛金のうち、当該組合員等に係る共済金額に、当該組合員等に係る第百三十七条第一項の基準共済掛金率及び農作物共済掛金国庫負担割合を乗じて得た金額に相当する金額を負担する。

3 前項の農作物共済掛金国庫負担割合は、第 百三十七条第一項に規定する共済掛金区分ご とに、同条第二項の共済掛金標準率を次の表 음 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인지세의 비과세)

농업보험에 관한 서류에는 인지세를 부과하 지 아니한다.

제10조(농작물공제의 공제부금 부담)

① 국고는 농작물공제와 관련하여 논벼 및 제98조제1항제1호의 정령으로 지정하는 식 량농작물과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제1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 목적의 종류별로 농업공제조합의 조합원, 제20조제4항의 규 정에 따른 전국연합회(전국의 구역을 그 구 역으로 하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합원 또는 제107조제1항에 서 규정하는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시정촌 간 에 해당 공제사업과 관련된 공제관계가 존재 하는 자(이하 "조합원 등"이라 한다)가 지급 하여야 하는 공제부금 중 해당 조합원 등과 관련된 공제금액에 해당 조합원 등과 관련된 제137조제1항의 기준공제부금률을 곱하여 얻은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 담한다.

② 국고는 농작물공제와 관련하여 보리와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제13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 목적의 종류별로 조합원 등이 지급하여야 하는 공제부금 중 해당 조합원 등과 관련된 공제금액에 해당 조합원 등과 관련된 제137조제1항의 기준공제부금률 및 농작물공제부금 국고부담비율을 곱하여 얻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③ 전항의 농작물공제부금 국고부담비율은 제13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부금 구분 별로 같은 조 제2항의 공제부금표준율을 다 の上欄に掲げる部分に区分し、それぞれ同表 の下欄に掲げる割合を乗じて得た率を合計し て得た率を同項の共済掛金標準率で除して得 た数とする。

[Table 1]

4 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負担金に相当する金額は、毎会計年度予算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一般会計から食料安定供給特別会計に繰り入れる。

第十一条(共済掛金に係る負担金の交付の方 法)

前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負担金 は、組合員等が農業共済組合、第百条第一項 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により共済事業を行う 全国連合会又は第百七条第一項に規定する共 済事業を行う市町村(以下「組合等」とい う。)に支払うべき共済掛金の一部に充てる ため、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組合等 にこれを交付す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組合等(第七十三条第四項に規定する特定組合及び全国連合会を除く。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に交付すべき交付金は、組合等に交付するのに代えて、当該組合等がその属する都道府県連合会(全国連合会以外の農業共済組合連合会をいう。以下同じ。)に支払うべき保険料の全部若しくは一部に充てるため、当該都道府県連合会にこれを交付し、又は当該都道府県連合会が支払うべき再保険料の全部若しくは一部に充て、食料安定供給特別会計の再保険料収入

음 표의 왼쪽란에 열거하는 부분으로 구분하고,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열거하는 비율을 곱하여 얻은 비율을 합계하여 나온 비율을 같은 항의 공제부금표준율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표 1]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 회계연도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식료안정공급특별회계로 이월한다.

제11조(공제부금과 관련된 부담금의 교부방법)

①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은 조합원 등이 농업공제조합, 제100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전국연합회 또는 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시정촌(이하 "조합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 여야 하는 공제부금의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 여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 등 에 교부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 등(제73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조합 및 전국연합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교부하여야 하는 교부금은 조합 등에 교부하는 것을 대신하여 해당 조합 등이 속하는 도도부현연합회(전국연합회 이외의 농업공제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도도부현연합회가 지급하여야 하는 재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 식료안

にこれを計上することができる。

3 第一項の規定により第七十三条第四項に規定する特定組合又は全国連合会に交付すべき交付金は、当該特定組合又は全国連合会に交付するのに代えて、当該特定組合又は全国連合会が支払うべき保険料の全部又は一部に充てて、食料安定供給特別会計の保険料収入にこれを計上することができる。

第十二条(家畜共済の共済掛金の負担)

国庫は、家畜共済につき、組合員等の支払うべき共済掛金の二分の一(豚に係るものにあっては、五分の二)に相当する金額(その金額が農林水産大臣の定める金額を超え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農林水産大臣の定める金額)を負担する。

第十三条(果樹共済の共済掛金の負担)

国庫は、果樹共済につき、収穫共済にあつては第百四十八条第一項に規定する収穫共済の 共済目的の種類ごとに、樹体共済にあつては同条第六項に規定する樹体共済の共済目的の 種類ごとに、組合員等の支払うべき共済掛金 のうち、当該組合員等に係る共済金額に、当 該組合員等に係る第百四十九条第一項の基準 共済掛金率を乗じて得た金額の二分の一に相 当する金額を負担する。

第十四条 (畑作物共済の共済掛金の負担)

国庫は、畑作物共済につき、第百五十三条第 一項に規定する共済目的の種類ごとに、組合 정공급특별회계의 재보험료수입에 이를 반영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73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조합 또는 전국연합회에 교부하여야 하는 교부금은 해당 특정조합 또는 전국연합회에 교부하는 것을 대신하여 해당 특정조합 또는 전국연합회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 식료안정공급특별회계의 보험료수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가축공제의 공제부금 부담)

국고는 가축공제와 관련하여 조합원 등이 지급하여야 하는 공제부금의 2분의 1(돼지와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5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제13조(과수공제의 공제부금 부담)

국고는 과수공제와 관련하여 수확공제의 경우에는 제14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확공제 공제 목적의 종류별로, 수체공제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수체공제공제 목적의 종류별로 조합원 등이 지급하여야 하는 공제부금 중 해당 조합원 등과 관련된 공제금액에 해당 조합원 등과 관련된 제149조제1항의 기준공제부금률을 곱하여 얻은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다.

제14조(밭작물공제의 공제부금 부담)

국고는 밭작물공제와 관련하여 제153조제1 항에서 규정하는 공제 목적의 종류별로 조합 員等の支払うべき共済掛金のうち、当該組合 員等に係る共済金額に、当該組合員等に係る 第百五十四条第一項の基準共済掛金率を乗じ て得た金額の百分の五十五(蚕繭に係るもの にあつては、二分の一)に相当する金額を負 担する。

第十五条 (園芸施設共済の共済掛金の負担)

国庫は、園芸施設共済につき、組合員等の支払うべき共済掛金の二分の一に相当する金額 (その金額が農林水産大臣の定める金額を超え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農林水産大臣の定める金額) を負担する。

第十六条(農業経営収入保険の保険料の負担)

国庫は、農業経営収入保険につき、被保険者の支払うべき保険料のうち、当該被保険者に係る保険金額に、当該被保険者に係る第百八十条第一項の基準保険料率を乗じて得た金額の二分の一に相当する金額を負担する。

第十七条(準用)

第十二条から前条までの規定による負担金に は、第十条第四項及び第十一条の規定(前条 の規定による負担金にあつては、第十一条第 二項の規定を除く。)を準用する。

第十八条(特約補塡金に係る交付金の交付)

国庫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全国連合会に対し、第百八十二条第一項第二号の特約補塡金の交付に要する費用に充てるため、交付金を交付する。

원 등이 지급하여야 하는 공제부금 중 해당 조합원 등과 관련된 공제금액에 해당 조합원 등과 관련된 제154조제1항의 기준공제부금 률을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55(누에 고치와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제15조(원예시설공제의 공제부금 부담)

국고는 원예시설공제와 관련하여 조합원 등이 지급하여야 하는 공제부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제16조(농업경영수입보험의 보험료 부담)

국고는 농업경영수입보험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료 중 해당 피보험자와 관련된 보험금액에 해당 피보험자와관련된 제180조제1항의 기준보험요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제17조(준용)

제12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에는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의 규정(전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8조(특약보전금과 관련된 교부금의 교부)

국고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연합회에 제182조제1항제2호의 특약보전금의 교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부금을 교부한다.

第十九条(事務費の負担)

国庫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毎会計 年度予算の範囲内において、農業共済団体及 び第百七条第一項に規定する共済事業を行う 市町村の事務費を負担する。

第二章 農業共済団体の組織 第一節 組合員

第二十条(組合員たる資格)

農業共済組合の組合員たる資格を有する者は、当該農業共済組合が行う次の各号に掲げる共済事業の種類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者で、当該農業共済組合の区域内に住所を有するもの(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基準に従い定款で定める者を除く。)とする。

- 一 農作物共済 農作物共済において共済目的 の種類とされている農作物につき耕作の業務 を営む者
- 二 家畜共済 死亡廃用共済又は疾病傷害共済 において共済目的の種類とされている家畜に つき養畜の業務を営む者
- 三 果樹共済 収穫共済又は樹体共済において 共済目的の種類とされている果樹につき栽培 の業務を営む者

四 畑作物共済 畑作物共済において共済目的 の種類とされている農作物又は蚕繭につき栽培又は養蚕の業務を営む者

五 園芸施設共済 第九十八条第一項第七号に 規定する特定園芸施設を所有し、又は管理す

제19조(사무비의 부담)

국고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업공제단체 및 제10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사업을 실 시하는 시정촌의 사무비를 부담한다.

제2장 농업공제단체의 조직 제1절 조합원

제20조(조합원 자격)

- ① 농업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는 해당 농업공제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공제사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 각호에 정하는 자로 해당 농업공제조합의 구역내에 주소를 두는 자(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 1. 농작물공제: 농작물공제에서 공제 목적의 종류로 되어 있는 농작물에 관하여 경작 업 무를 영위하는 자
- 2. 가축공제: 폐사·폐용공제 또는 질병·상해 공제에서 공제 목적의 종류로 되어 있는 가 축에 관하여 사육 업무를 영위하는 자
- 3. 과수공제: 수확공제 또는 수체공제에서 공제 목적의 종류로 되어 있는 과수에 관하 여 재배 업무를 영위하는 자
- 4. 밭작물공제: 밭작물공제에서 공제 목적의 종류로 되어 있는 농작물 또는 누에고치에 관하여 재배 또는 양잠 업무를 영위하는 자
- 5. 원예시설공제: 제98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특정원예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る者で農業を営むもの

六 任意共済 任意共済において共済目的の種類とされている農作物の耕作若しくは栽培の業務を営む者又は当該任意共済において共済目的の種類とされている農産物、建物若しくは農機具等を所有する者で農業に従事するもの

2 前項第一号、第三号又は第四号に定める者のみが構成員となつている団体(法人を除くものとし、共済掛金の分担及び共済金の配分の方法、代表者その他の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基準に従った規約を定めているものに限る。以下「農業共済資格団体」という。)で、その構成員の全てが一の農業共済組合の区域内に住所を有するものについては、当該農業共済資格団体を同項第一号、第三号又は第四号に定める者で当該農業共済組合の区域内に住所を有する者と、当該農業共済資格団体の構成員が営む同項第一号、第三号又は第四号に規定する業務を当該農業共済資格団体の業務とそ

3 農業共済組合連合会の組合員たる資格を有する者は、都道府県連合会にあつては当該都道府県連合会の区域の一部をその区域とする組合等とし、全国連合会にあつては第七十三条第四項に規定する特定組合及び都道府県連合会とする。

れぞれみなして、この法律の規定を適用す

る。

4 第百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により 共済事業を行う全国連合会の組合員たる資格 を有する者は、前項の規定により組合員たる 資格を有する者のほか、当該全国連合会が行 자로 농업을 영위하는 자

6. 임의공제: 임의공제에서 공제 목적의 종류로 되어 있는 농작물의 경작이나 재배 업무를 영위하는 자 또는 해당 임의공제에서 공제 목적의 종류로 되어 있는 농산물, 건물이나 농기구 등을 소유하는 자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전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하 는 자만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단체(법인 을 제외하고, 공제부금의 부담 및 공제금의 배분방법, 대표자 및 그 밖의 농림수산성령 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농림수산성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규약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농업공제자격단체" 라 한다)로 구성원 전부가 하나의 농업공제 조합의 구역 내에 주소를 두는 자에 대해서 는 해당 농업공제자격단체를 같은 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정하는 자로서 해당 농 업공제조합의 구역 내에 주소를 두는 자로, 해당 농업공제자격단체의 구성원이 영위하는 같은 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서 규정 하는 업무를 해당 농업공제자격단체의 업무 로 각각 보아 이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는 도도부현 연합회의 경우에는 해당도도부현 연합회의 구역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는 조합 등으로 하고, 전국연합회의 경우에는 제73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조합및 도도부현 연합회로 한다.

④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전국연합회의 조 합원 자격을 갖춘 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 외에 해당 전국연합 う第一項各号に掲げる共済事業の種類に応 じ、当該各号に定める者で、当該共済事業の 実施区域内に住所を有するもの(農林水産省 令で定める基準に従い定款で定める者を除 く。)とする。

5 前項の規定により同項の全国連合会の組合 員たる資格を有する者については、第二項の 規定を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項中 「農業共済組合の区域」とあるのは、「共済 事業の実施区域」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二十一条 (加入)

都道府県連合会が成立したときは、当該都道府県連合会の区域の一部をその区域とする組合等は、その時に、全て、当該都道府県連合会の組合員となる。都道府県連合会が成立した後に、当該都道府県連合会の区域の一部をその区域とする農業共済組合が成立したとき、及び当該都道府県連合会の区域の一部をその区域とする市町村が第百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共済事業を行うこととなつたときは、当該組合等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2 全国連合会が成立したときは、第七十三条 第四項に規定する特定組合及び都道府県連合 会は、その時に、全て、当該全国連合会の組 合員となる。全国連合会が成立した後に、同 項に規定する特定組合又は都道府県連合会が 成立したときは、当該特定組合又は都道府県 連合会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3 農業共済組合及び全国連合会は、前条第一項又は第四項の規定により組合員たる資格を有する者でこれらの組合員になろうとするも

회가 실시하는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공 제사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 각 호에 정하는 자로서 해당 공제사업의 실시구역 내에 주소 를 두는 자(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로 한 다.

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항의 전국연합회의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중 "농업공제조합의 구역"은 "공제사업의 실시구역"으로 대체한다.

제21조(가입)

① 도도부현 연합회가 성립한 때에는 해당 도도부현 연합회의 구역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는 조합 등은 그때 전부 해당 도도부현 연합회의 조합원이 된다. 도도부현 연합회가 성립한 후에 해당 도도부현 연합회의 구역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는 농업공제조합이 성립한 때 및 해당 도도부현 연합회의 구역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는 시정촌이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사업을 실시하게된 때에는 해당 조합 등에 대해서도 같다.

② 전국연합회가 성립한 때에는 제73조제4 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조합 및 도도부현 연합 회는 그때 전부 해당 전국연합회의 조합원이 된다. 전국연합회가 성립한 후에 같은 항에 서 규정하는 특정조합 또는 도도부현 연합회 가 성립한 때에는 해당 특정조합 또는 도도 부현 연합회에 대해서도 같다.

③ 농업공제조합 및 전국연합회는 전조 제1 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 을 갖춘 자로 이러한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のから加入の申込みを受けたときは、正当な 理由がなければ、その加入を拒んではならな い。

第二十二条 (議決権及び選挙権)

農業共済団体の組合員は、各一個の議決権及び役員(農業共済組合及び全国連合会の組合員にあつては、役員及び総代)の選挙権を有する。

2 都道府県連合会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政令で定める基準に従い定款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組合員に対して、当該組合員の組合員等の数に基づき、二個以上の議決権及び役員の選挙権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

3 全国連合会は、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政令で定める基準に従い定款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組合員に対して、当該組合員たる第七十三条第四項に規定する特定組合の組合員の数又は当該組合員たる都道府県連合会の組合員たる組合等の組合員等の数に基づき、二個以上の議決権並びに役員及び総代の選挙権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

第二十三条

農業共済団体の組合員は、定款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第五十一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あらかじめ通知のあつた事項につき、書面又は代理人をもつて議決権又は選挙権を行うことができる。

2 農業共済団体の組合員は、定款で定めると ころにより、前項の規定による書面をもつて する議決権の行使に代えて、議決権を電磁的 자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 유가 없으면, 가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22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농업공제단체의 조합원은 각 1개의 의결 권 및 임원(농업공제조합 및 전국연합회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임원 및 대표)의 선거권 을 가진다.

② 도도부현 연합회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해당 조합원의 조합원 등의 수에 기초하여 2개 이상의 의결권 및 임원의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전국연합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해당 조합원인 제73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조합의 조합원의 수 또는 해당 조합원인 도도부현 연합회의 조합원인 조합 등의 조합원 등의 수에 기초하여 2개 이상의 의결권과 임원 및 대표의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23조

① 농업공제단체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통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농업공제단체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의결 권의 행사를 대신하여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 方法(電子情報処理組織を使用する方法その 他の情報通信の技術を利用する方法であつて 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以下同 じ。)により行うことができる。

3 前二項の規定により議決権又は選挙権を行う者は、これを出席者とみなす。

4 代理人は、代理権を証する書面を農業共済 団体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 おいて、電磁的方法により議決権を行うこと が定款で定められているときは、当該書面の 提出に代えて、代理権を当該電磁的方法によ り証明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十四条 (議決権のない場合)

農業共済団体と特定の組合員との関係について議決をする場合には、その組合員は、議決権を有しない。

第二十五条 (脱退)

農業共済団体の組合員は、次に掲げる事由に よつて脱退する。

- 一 組合員たる資格の喪失
- 二 死亡又は解散(第百七条第一項に規定する 共済事業を行う市町村にあつては、共済事業 の全部の廃止)
- 2 農業共済組合の組合員又は第二十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全国連合会の組合員は、前項各号に掲げる事由によるほか、共済関係の全部の消滅(第六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場合を除く。)によつて脱退する。ただし、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基準に従い定款で特別の定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및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농 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행사할 수 있다.

- ③ 전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자로 본다.
- ④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농업 공제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 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때에는 해당 서면의 제출을 대 신하여 대리권을 해당 전자적 방법으로 증명 할 수 있다.

제24조(의결권이 없는 경우)

농업공제단체와 특정 조합원의 관계에 대하여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25조(탈퇴)

- ① 농업공제단체의 조합원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에 의하여 탈퇴한다.
- 1. 조합원 자격의 상실
- 2. 사망 또는 해산(제107조제1항에서 규정 하는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시정촌의 경우에 는 공제사업의 전부 폐지)
- ② 농업공제조합의 조합원 또는 제20조제4 항의 규정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조합원은 전 항 각 호에 열거하는 사유에 의하는 외에 공 제관계의 전부 소멸(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탈퇴한다. 다만,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めを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3 農業共済組合の組合員又は第二十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全国連合会の組合員で、前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り共済関係の全部の消滅があつても脱退をしないものその他当該農業共済組合又は全国連合会との間に共済関係の存しないもの(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は、定款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脱退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節 設立

第二十六条(発起人)

農業共済組合を設立するには、第二十条第一項に規定する者で農業共済組合を設立しようとするもの十五人以上が、農業共済組合連合会を設立するには、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その組合員たる資格を有する者で農業共済組合連合会を設立しようとするもの二以上が発起人と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十七条(設立準備会)

農業共済組合を設立する場合には、発起人は、あらかじめ農業共済組合の区域及び組合員たる資格に関する目論見書を作り、一定の期間前までにこれを設立準備会の日時及び場所とともに公告して、設立準備会を開かなければならない。

- 2 農業共済組合連合会を設立する場合には、 発起人は、一定の期間前までに設立準備会の 日時及び場所を公告して、設立準備会を開か なければならない。
- 3 前二項の一定の期間は、二週間を下つては

니하다.

③ 농업공제조합의 조합원 또는 제20조제4 항의 규정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조합원으로, 전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제관계의 전부 소멸이 있더라도 탈퇴를 하지 아니하는 자 및 그 밖에 해당 농업공제조합 또는 전국연 합회 간에 공제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제2절 설립

제26조(발기인)

농업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 농업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자하는 자 15인 이상이 농업공제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따라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로 농업공제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 둘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제27조(설립준비회)

- ① 농업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발기 인은 미리 농업공제조합의 구역 및 조합원 자격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일정한 기 간 전까지 이를 설립준비회의 일시 및 장소 와 함께 공고하여 설립준비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농업공제조합연합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간 전까지 설립준비회의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 설립준비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③ 전2항의 일정한 기간은 2주일 이상이 되

ならない。

第二十八条(定款等作成委員の選任等)

設立準備会においては、出席した組合員たる 資格を有する者(農業共済組合を設立する場 合にあつては法人及び農業共済資格団体(以 下「法人等」という。)を除き、出席した組 合員たる資格を有する法人等の業務を執行す る役員を含むものとし、農業共済組合連合会 を設立する場合にあつては出席した組合員た る資格を有する農業共済団体の業務を執行す る役員又は出席した組合員たる資格を有する 市町村の職員とする。) の中から定款及び事 業規程(以下「定款等」という。)の作成に 当たるべき者(以下「定款等作成委員」とい う。)を選任し、かつ、区域、組合員たる資 格その他定款作成の基本となるべき事項及び 共済掛金又は保険料その他事業規程作成の基 本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2 前項の定款等作成委員は、十五人以上でなければならない。
- 3 設立準備会の議事は、出席した組合員たる 資格を有する者(農業共済組合を設立する場 合にあつては、前条第一項の目論見書に定め る組合員たる資格を有する者)の過半数の同 意をもつてこれを決する。

第二十九条 (創立総会)

定款等作成委員が定款等を作成したときは、 発起人は、一定の期間前までにこれを創立総 会の日時及び場所とともに公告して、創立総 会を開か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一定の期間は、二週間を下つてはな

어야 한다.

제28조(정관 등 작성위원의 선임 등)

- ① 설립준비회에서는 출석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농업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인 및 농업공제자격단체(이하 "법인 등"이 라 한다)를 제외하고, 출석한 조합원 자격을 가진 법인 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을 포 함하고, 농업공제조합연합회를 설립하는 경 우에는 출석한 조합원 자격이 있는 농업공제 단체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 또는 출석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시정촌의 직원으로 한 다) 중에서 정관 및 사업규정(이하 "정관 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담당하는 자(이하 "정관 등 작성위원"이라 한다)를 선임하고, 구역, 조합원 자격 및 그 밖에 정관작성의 기본이 되는 사항, 공제부금 또는 보험료 및 그 밖에 사업규정 작성의 기본이 되는 사항 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정관 등 작성위원은 15인 이상이 어야 한다.
- ③ 설립준비회의 의사는 출석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농업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계획서에서 정하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의 동의로써 이를 결정한다.

제29조(창립총회)

- ① 정관 등 작성위원이 정관 등을 작성한 때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간 전까지 이를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와 함께 공고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일정한 기간은 2주일 이상이 되

らない。

- 3 定款等作成委員が作成した定款等の承認、 事業計画の設定その他設立に必要な事項の決 定は、創立総会の議決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
- 4 創立総会においては、前項の定款等を修正 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区域及び組合員 たる資格に関する定款の規定については、こ の限りでない。
- 5 創立総会の議事は、組合員たる資格を有する者でその会日までに発起人に対し設立の同意を申し出たものの半数以上が出席し、その議決権の三分の二以上でこれを決する。
- 6 前項の者は、書面又は代理人をもつて議決権又は選挙権を行うことができる。
- 7 創立総会については、第二十二条第一項、 第二十三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及び第二十四条の規定を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 第二十三条第二項中「前項」とあるのは「第二十九条第六項」と、同条第三項中「前二項」とあるのは「第二十九条第六項又は前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三十条 (認可の申請)

発起人は、創立総会終了の後遅滞なく、定款 等及び事業計画書を行政庁に提出して、設立 の認可を申請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発起人は、行政庁の要求があるときは、農業共済団体の設立に関する報告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어야 한다.

- ③ 정관 등 작성위원이 작성한 정관 등의 승인, 사업계획의 설정 및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창립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 ④ 창립총회에서는 전항의 정관 등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구역 및 조합원 자격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창립총회의 의사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로, 총회일까지 발기인에 대하여 설립의 동의를 신청한 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하고,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이를 결정한다.
- ⑥ 전항의 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 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⑦ 창립총회에 대해서는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2항 중 "전항"은 "제29조제6항"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전2항"은 "제29조제6항 또는 전항"으로 대체한다.

제30조(인가 신청)

- ① 발기인은 창립총회 종료 후 지체 없이 정 관 및 사업계획서 등을 행정청에 제출하여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발기인은 행정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농업공제단체의 설립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第三十一条 (認可の基準)

行政庁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請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設立の手続又は定款等若しくは事業計画の内容が法令又は法令に基づいてする行政庁の処分に違反せず、かつ、その事業が健全に行われ、公益に反しないと認められるときには、設立の認可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十二条 (認可の期間)

第三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請があつたと きは、行政庁は、申請書を受理した日から二 月以内に、発起人に対し、認可又は不認可の 通知を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行政庁が前項の期間内に同項の通知を発しなかつたときは、その期間満了の日に第三十条第一項の認可があつたものとみなす。この場合には、発起人は、行政庁に対し、認可に関する証明をすべき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 3 行政庁が第三十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報告 書提出の要求を発したときは、その日からそ の報告書が行政庁に到達するまでの期間は、 これを第一項の期間に算入しない。
- 4 行政庁は、不認可の通知をするときは、その理由を通知書に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5 発起人が不認可の取消しを求める訴えを提起した場合において、裁判所がその取消しの 判決をしたときは、その判決確定の日に第三 十条第一項の認可があつたものとみなす。こ の場合には、第二項後段の規定を準用する。

제31조(인가 기준)

행정청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설립절차 또는 정관이나 사업계 획의 내용이 법령 또는 법령에 기초하여 실 시하는 행정청의 처분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사업이 건전하게 실시되며 공익에 반하지 아 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설립인가를 하여 야 한다.

제32조(인가 기간)

- 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행정청은 신청서를 수리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발기인에게 인가 또는 불인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이 전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만료일에 제30조제1항의 인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발기인은 행정청에 인가에 관한 증명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 요구를 발송한 때에는 그 날부터 보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행정청은 불인가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⑤ 발기인이 불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재판소가 그 취소를 결정한 때에는 판결확정일에 제30조제1항의 인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三十三条(理事への事務引渡し)

第三十条第一項の設立の認可があつたときは、発起人は、遅滞なく、その事務を理事に引き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十四条 (成立の時期)

農業共済団体は、主たる事務所の所在地において、設立の登記をすることによつて成立する。

第三十五条 (定款)

農業共済団体の定款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 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目的
- 二 名称
- 三 区域
- 四 事務所の所在地

五 組合員たる資格並びに組合員の加入及び脱退に関する規定

六 事業の種類

七 役員の定数及び選挙又は選任に関する規定

八 準備金の額及びその積立ての方法

九 剰余金の処分及び不足金の処理に関する規定

- 十 公告の方法
- 2 農業共済団体の定款には、前項各号に掲げ

제33조(이사에 대한 사무인도)

제30조제1항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사무를 이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34조(성립 시기)

농업공제단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5조(정관)

- ① 농업공제단체의 정관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구역
- 4. 사무소의 소재지
- 5. 조합원 자격,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
- 6. 사업의 종류
- 7. 임원의 정수 및 선거 또는 선임에 관한 규정
- 8. 준비금액 및 적립방법
- 9. 잉여금의 처분 및 부족금의 처리에 관한 규정
- 10. 공고방법
- ② 농업공제단체의 정관에는 전항 각 호에

る事項のほか、総代会を設ける場合には、総 代の定数及び選挙に関する規定を記載しなけ 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第七号の役員の選挙に関する規定及び前項の総代の選挙に関する規定には、選挙期日、選挙に関する通知、候補者の推薦又は立候補、選挙管理者、選挙立会人、投票、開票及び当選に関する事項並びに役員又は総代を総会外において選挙することとしたときはその旨、総代の選挙につき選挙区を設けることとしたときは選挙区に関す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4 行政庁は、模範定款例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第三十六条 (事業規程)

農業共済組合は、事業規程をもつて、次に掲げる事項(第七号に掲げる事項にあつては、 第七十三条第四項に規定する特定組合に限 る。)を規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共済事業の種類別の共済目的の種類に関する事項
- 二 共済金額に関する事項
- 三 共済掛金及び事務費に関する事項
- 四 共済責任に関する事項
- 五 業務の委託に関する事項
- 六 損害評価会に関する事項

七 第百六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事業に関する事項

열거하는 사항 외에 대표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의 정수 및 선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7호의 임원의 선거에 관한 규정 및 전항의 대표의 선거에 관한 규정에는 선 거기일, 선거에 관한 통지, 후보자의 추천 또는 입후보, 선거관리자, 선거입회인, 투표, 개표 및 당선에 관한 사항, 임원 또는 대표 를 총회 외에서 선거하기로 한 때에는 그 사 실, 대표의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를 설치 하기로 한 때에는 선거구에 관한 사항을 정 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모범정관례를 정할 수 있다.

제36조(사업규정)

- ① 농업공제조합은 사업규정으로써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제7호에 열거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제73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조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여야 한다.
- 1. 공제사업의 종류별 공제 목적의 종류에 관한 사항
- 2. 공제금액에 관한 사항
- 3. 공제부금 및 사무비에 관한 사항
- 4. 공제책임에 관한 사항
- 5.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6. 손해평가회에 관한 사항
- 7.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 한 사항

八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農林水産省令 で定める事項

- 2 都道府県連合会は、事業規程をもつて、次に掲げる事項を規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保険金額に関する事項
- 二 保険料及び事務費に関する事項
- 三 保険責任に関する事項
- 四 損害評価会に関する事項
- 五 第百六十三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事業に関 する事項
- 六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農林水産省令 で定める事項
- 3 全国連合会は、事業規程をもつて、次に掲げる事項を規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共済事業に関する次に掲げる事項
- イ 共済事業の種類別の共済目的の種類及び実 施区域に関する事項
- ロ 第一項第二号から第六号までに掲げる事項
- ハ 第百六十三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事業に関 する事項
- 二 第百七十三条各号に掲げる事業に関する事 項
- 三 農業経営収入保険事業に関する次に掲げる 事項

- 8. 전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농림수산 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도도부현 연합회는 사업규정으로써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1. 보험금액에 관한 사항
- 2. 보험료 및 사무비에 관한 사항
- 3. 보험책임에 관한 사항
- 4. 손해평가회에 관한 사항
- 5. 제1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 한 사항
- 6. 전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농림수산 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전국연합회는 사업규정으로써,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1. 공제사업에 관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 가. 공제사업의 종류별 공제 목적의 종류 및 실시구역에 관한 사항
- 나.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열거하는 사항
- 다. 제1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 제173조 각 호에 열거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 3. 농업경영수입보험사업에 관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 イ 前項第一号から第三号までに掲げる事項
- ロ 第百七十五条第二項第二号に掲げる事業に 関する事項
- ハ 第百八十二条第一項の特約に関する事項
- ニ 業務の委託に関する事項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事項

4 行政庁は、模範事業規程例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第三節 管理

第三十七条(役員の定数及び選挙又は選任)

農業共済団体に、役員として理事及び監事を 置く。

- 2 理事の定数は、五人以上とし、監事の定数は、二人以上とする。
- 3 役員は、定款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組合 員が総会(設立当時の役員にあつては、創立 総会)においてこれを選挙する。ただし、農 業共済組合又は全国連合会の役員(設立当時 の役員を除く。)は、定款で定めるところに より、総会外においてこれを選挙することが できる。
- 4 役員の選挙は、無記名投票によつてこれを 行う。ただし、役員候補者が選挙すべき役員 の定数以内であるときは、定款で定めるとこ ろにより、投票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る。
- 5 投票は、一人(第二十二条第二項又は第三

- 가. 전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열거하는 사항
- 나. 제175조제2항제2호에 열거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 다. 제182조제1항의 특약에 관한 사항
- 라.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4. 전3호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농림수산성 렁으로 정하는 사항
- ④ 행정청은 모범사업규정례를 정할 수 있다.

제3절 관리

제37조(임원의 정수 및 선거 또는 선임)

- ① 농업공제단체에 임원으로서 이사 및 감사를 둔다.
- ② 이사의 정수는 5인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정수는 2인 이상으로 한다.
- ③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원이 총회(설립 당시의 임원인 경우에는 창 립총회)에서 선거한다. 다만, 농업공제조합 또는 전국연합회의 임원(설립 당시의 임원을 제외한다)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 회 외에서 선거할 수 있다.
- ④ 임원의 선거는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실시 한다. 다만, 임원후보자가 선거하여야 하는 임원의 정수 이내인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투표는 1인(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項の規定によりその組合員に対して二個以上 の選挙権を与える農業共済組合連合会にあつ ては、選挙権一個)につき一票とする。

- 6 定款で定める投票方法による選挙の結果投票の多数を得た者(第四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り投票を省略した場合は、当該候補者)を 当選人とする。
- 7 役員の選挙においては、選挙ごとに選挙管理者、投票所ごとに投票管理者、開票所ごとに開票管理者を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 8 役員の選挙をしたときは、選挙管理者は選挙録、投票管理者は投票録、開票管理者は開票録を作り、それぞれこれに署名しなければならない。
- 9 総会外において役員の選挙を行うときは、 投票所は、組合員の選挙権の適正な行使を妨 げない場所に設けなければならない。
- 10 役員は、第三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定款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組合員が総会(創立当時の役員にあつては、創立総会)において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 11 農業共済団体の理事の定数の少なくとも四分の三は、組合員(農業共済組合にあつては法人等たる組合員を除き、組合員たる法人等の業務を執行する役員を含むものとし、都道府県連合会にあつては組合員たる農業共済組合の役員又は組合員たる市町村の職員とし、全国連合会にあつては組合員たる農業共済団体の役員又は組合員たる個人若しくは組合員たる法人等(農業共済団体を除く。)の業務を執行する役員とする。)でなければな

규정에 따라 조합원에게 2개 이상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경우에는 선거권 1개)당 1표로 한다.

- ⑥ 정관에서 정하는 투표방법에 의한 선거의 결과, 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제4항 단서 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생략한 경우에는 해 당 후보자)을 당선인으로 한다.
- ⑦ 임원의 선거에서는 선거별로 선거관리자, 투표소별로 투표관리자, 개표소별로 개표관 리자를 두어야 한다.
- ⑧ 임원의 선거를 한 때에는 선거관리자는 선거록, 투표관리자는 투표록, 개표관리자는 개표록을 작성하고 각각 이에 서명하여야 한 다.
- ⑨ 총회 외에서 임원의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투표소는 조합원 선거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임원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총회(창립 당시의 임원인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 ① 농업공제단체 이사 정수의 적어도 4분의 3은 조합원(농업공제조합의 경우에는 법인 등인 조합원을 제외하고, 조합원인 법인 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을 포함하고, 도도부현 연합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인 농업공제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원인 시정촌의 직원으로 하며, 전국연합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인 가인이나 조합원인 법인 등(농업공제단체를 제외한다)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으로 한다)이어

らない。ただし、設立当時の理事の定数の少なくとも四分の三は、設立の同意者(農業共済組合にあつては法人等たる同意者を除き、同意者たる法人等の業務を執行する役員を含むものとし、農業共済組合連合会にあつては同意者たる農業共済団体の役員又は同意者たる市町村の職員とする。)で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十八条 (役員の任期)

役員の任期は、三年以内において定款で定める。

2 設立当時の役員の任期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創立総会(農業共済組合の合併による設立の場合にあつては、設立委員)において定める。ただし、その期間は、一年を超えてはならない。

3 定款で定めた役員の員数が欠けた場合には、任期の満了又は辞任により退任した役員は、新たに選任された役員(第四十五条の仮理事を含む。)が就任するまで、なお役員としての権利義務を有する。

第三十九条(役員の忠実義務)

役員は、法令、法令に基づいてする行政庁の 処分、定款等及び総会の議決を遵守し、農業 共済団体のため忠実にその職務を遂行しなけ ればならない。

2 役員がその任務を怠つたときは、その役員 は、農業共済団体に対し連帯して損害賠償の 責任を負う。

3 役員がその職務を行うにつき悪意又は重大

야 한다. 다만, 설립 당시 이사 정수의 적어 도 4분의 3은 설립의 동의자(농업공제조합 의 경우에는 법인 등인 동의자를 제외하고, 동의자인 법인 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을 포함하며,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경우에는 동의자인 농업공제단체의 임원 또는 동의자 시정촌의 직원으로 한다)이어야 한다.

제3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농업공제조합의 합병에 의한 설립인 경우에는 설립위원)에서정한다. 다만, 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판으로 정한 임원의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임원은 새롭게 선임된 임원(제45조의임시이사를 포함한다)이 취임할 때까지 계속임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제39조(임원의 충실의무)

① 임원은 법령, 법령에 기초하여 실시하는 행정청의 처분, 정관 등 및 총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농업공제단체를 위하여 충실히 직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임원은 농업공제단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악의 또

な過失があつたときは、その役員は、第三者に対し連帯して損害賠償の責任を負う。重要な事項につき、第五十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書類に虚偽の記載をし、又は虚偽の登記若しくは公告を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第四十条(役員の兼職禁止)

理事は、監事又は農業共済団体の使用人と、 監事は、理事又は農業共済団体の使用人と兼 ねてはならない。

第四十一条(業務の決定)

農業共済団体の業務は、定款に特別の定めが ないときは、理事の過半数で決する。

第四十二条 (代表)

理事は、農業共済団体の全ての業務について、農業共済団体を代表する。ただし、定款の規定に反することはできず、また、総会又は総代会の議決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十三条 (理事の代表権の制限)

理事の代表権に加えた制限は、善意の第三者 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四十四条(理事の代理行為の委任)

理事は、定款又は総会若しくは総代会の議決によって禁止されていないときに限り、特定の行為の代理を他人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十五条 (仮理事)

理事が欠けた場合において、業務が遅滞する

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임원은 제 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제53조제1항에 서 규정하는 서류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 로 등기 또는 공고를 한 때에도 같다.

제40조(임원의 겸직금지)

이사는 감사 또는 농업공제단체의 사용인, 감사는 이사 또는 농업공제단체의 사용인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업무의 결정)

농업공제단체의 업무는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때에는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42조(대표)

이사는 농업공제단체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농업공제단체를 대표한다. 다만, 정관의 규 정에 반할 수 없고, 총회 또는 대표회의 의 결에 따라야 한다.

제43조(이사의 대표권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44조(이사의 대리행위 위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나 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특정한 행위의 대리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5조(임시이사)

이사가 결원인 경우, 업무가 지체됨으로써

ことにより損害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は、行政庁は、利害関係人又は検察官の請求により、仮理事を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十六条(理事の自己契約等の禁止)

農業共済団体が理事と契約をするときは、監事が、農業共済団体を代表する。農業共済団体を代表する。農業共済団体と理事との訴訟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第四十七条(監事の職務)

監事の職務は、次のとおりとする。

- 一 農業共済団体の財産の状況を監査すること。
- 二 理事の業務の執行の状況を監査すること。
- 三 財産の状況又は業務の執行について、法令若しくは定款等に違反し、又は著しく不当な事項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総会又は行政庁に報告をすること。

四 前号の報告を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総会を招集すること。

第四十八条 (総会の招集)

理事は、毎事業年度一回通常総会を招集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理事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いつでも臨時総会又は総代会を招集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十九条

組合員が総組合員の五分の一以上の同意をもって、会議の目的たる事項及び招集の理由を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때에는 행정청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임 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46조(이사의 자기계약 등의 금지)

농업공제단체가 이사와 계약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농업공제단체를 대표한다. 농업공제 단체와 이사의 소송에 대해서도 같다.

제4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농업공제단체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것
- 2.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것
- 3. 재산 상황 또는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법 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회 또는 행정청에 보고하는 것
-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것

제48조(총회의 소집)

- ① 이사는 매 사업연도에 1회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 든지 임시총회 또는 대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9조

① 조합원이 총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 사항 및 소집 이유

記載した書面を理事に提出して総会の招集を 請求したときは、理事は、その請求のあつた 日から二十日以内に総会を招集しなければな らない。総代が総代総数の五分の一以上の同 意を得て、会議の目的たる事項及び招集の理 由を記載した書面を理事に提出して総代会の 招集を請求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電磁的方法により議 決権を行うことが定款で定められているとき は、同項の規定による書面の提出に代えて、 当該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及び理由を当該電 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 場合において、当該組合員は、当該書面を提 出したものとみなす。

3 前項前段の電磁的方法(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方法を除く。)により行われた当該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及び理由の提供は、理事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に備えられたファイルへの記録がされた時に当該理事に到達したものとみなす。

第五十条

理事の職務を行う者がないとき、又は前条第一項の請求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理事が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総会又は総代会の招集の手続をしないときは、監事は、総会又は総代会を招集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五十一条(組合員に対する通知又は催告)

農業共済団体の組合員に対してする通知又は 催告は、組合員名簿に記載したその者の住所 (農業共済資格団体にあつてはその代表者の 住所、市町村にあつてはその事務所の所在 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그 청구가 있 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대표가 대표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 사항 및 소집 이유 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대표회 의 소집을 청구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때에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의 제출을 대신 하여 해당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및 이유를 해당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 다. 이 경우, 해당 조합원은 해당 서면을 제 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전항 전단의 전자적 방법(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한다)에 의한 해당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및 이유의 제공은 이사의 사용과 관련된 컴퓨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된 때에 해당 이사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0조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는 때 또는 전조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가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총회 또는 대표회의 소집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는 총회 또는 대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51조(조합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

① 농업공제단체의 조합원에 대하여 하는 통지 또는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한 그 자의 주소(농업공제자격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 시정촌의 경우에는 사무소의 소

地)に、その者が別に催告を受ける場所を農業共済団体に通知したときは、その場所に宛 てることをもつて足りる。

2 前項の通知又は催告は、通常到達すべきであった時に、到達したものとみなす。

3 総会又は総代会の招集の通知は、その会日から十日前までに、その会議の目的たる事項を示して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五十二条(定款その他の書類の備付け及び 閲覧)

理事は、定款等及び総会又は総代会の議事録を各事務所に備え置き、かつ、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組合員名簿を主たる事務所に備えて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2 農業共済団体の組合員及び債権者は、前項 に規定する書類の閲覧を求めることができ る。

第五十三条(決算関係書類の提出、備付け及び閲覧)

理事は、通常総会の会日から一週間前までに、事業報告書、財産目録、貸借対照表、損益計算書及び剰余金処分案又は不足金処理案を監事に提出し、かつ、これらを主たる事務所に備えて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2 農業共済団体の組合員及び債権者は、前項 に規定する書類の閲覧を求めることができ る。

3 第一項に規定する書類を通常総会に提出するときは、監事の意見書を添付しなければな

재지)로 그 자가 별도로 최고를 받을 장소를 농업공제단체에 통지한 때에는 그 장소로 보 내는 것으로써 충분하다.

②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통상 도달할 수 있었던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총회 또는 대표회의 소집통지는 그 회일부터 10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여 하여야 한다.

제52조(정판 및 그 밖의 서류의 비치 및 열 람)

① 이사는 정관 등 및 총회 또는 대표회의 의사록을 각 사무소에 비치하고, 농림수산성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농업공제단체의 조합원 및 채권자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결산 관련 서류의 제출, 비치 및 열 람)

① 이사는 통상총회의 회일부터 1주일 전까지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안 또는 부족금처리안을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비치하여야 한다.

② 농업공제단체의 조합원 및 채권자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통상총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らない。

4 前項の監事の意見書については、これに記載すべき事項を記録した電磁的記録(電子的方式、磁気的方式その他人の知覚によつ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式で作られる記録であつて、電子計算機による情報処理の用に供されるものとして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の添付をもつて、当該監事の意見書の添付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理事は、当該監事の意見書を添付したものとみなす。

第五十四条(役員の改選の請求)

役員は、総組合員の五分の一以上の請求により、任期中でも総会においてこれを改選する 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請求は、理事の全員又は 監事の全員について、同時にこれをしなけれ ばならない。ただし、法令、法令に基づいて する行政庁の処分又は定款等の違反を理由と する改選の請求は、この限りでない。

3 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は、改選の理由を記載した書面を農業共済団体に提出して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前項の規定による書面の提出があつたときは、農業共済団体は、総会の会日から七日前までに、役員に対し、その書面を送付し、かつ、総会において弁明する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五十五条(準用)

야 한다.

④ 전항의 감사의 의견서에 대해서는 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 (전자적 방법, 자기적 방법 및 그 밖에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작성되는 기록으로, 컴퓨터의 정보처리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해당 감사의 의견서 첨부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는 해당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

제54조(임원의 변경 선임 청구)

① 임원은 총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청구에 의하여 임기 중이라도 총회에서 변경 선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는 이사의 전원 또는 감사의 전원에 대하여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법령에 기초하여 실 시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정관 등의 위반 을 이유로 하는 변경 선임의 청구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는 변경 선임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농업공제단체에 제출하여 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농업공제단체는 총회의 회일부터 7일 전까지 임원에게 서면을 송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5조(준용)

役員については、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 法人に関する法律(平成十八年法律第四十八 号)第七十八条の規定を準用する。

第五十六条 (参事)

農業共済団体は、参事を選任し、その主たる 事務所又は従たる事務所において、その業務 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 2 参事の選任及び解任は、理事の過半数によって決する。
- 3 参事については、会社法(平成十七年法律 第八十六号)第十一条第一項及び第三項、第 十二条並びに第十三条の規定を準用する。

第五十七条

組合員は、総組合員の十分の一以上の同意を 得て、理事に対し、参事の解任を請求するこ とができる。

- 2 前項の規定による請求は、解任の理由を記載した書面を理事に提出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前項の規定による書面の提出があつたときは、理事は、当該参事の解任の可否を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理事は、前項の可否を決する日の七日前までに当該参事に対して第二項の書面を送付し、かつ、弁明する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五十八条 (総会の議決事項)

次の事項は、総会の議決を経なければならな

임원에 대해서는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 단법인에 관한 법률」(2006년 법률 제48호)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하다.

제56조(참사)

- ① 농업공제단체는 참사를 선임하고, 주된 사무소 또는 종된 사무소에서 업무를 수행하 도록 할 수 있다.
- ② 참사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 ③ 참사에 대해서는 「회사법」(2005년 법률 제86호)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2조,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

- ① 조합원은 총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에 대하여 참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는 해임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하여야한다.
- ③ 전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이사는 해당 참사의 해임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이사는 전항의 가부를 결정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해당 참사에게 제2항의 서면을 송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8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20

- 一 定款等の変更
- 二 事務費を徴収する場合には、その額及び徴収方法
- 三 事業報告書、財産目録、貸借対照表、損益 計算書及び剰余金処分案又は不足金処理案
- 2 定款等の変更(軽微な事項その他の農林水 産省令で定める事項に係るものを除く。) は、行政庁の認可を受けなければ、その効力 を生じない。
- 3 前項の認可については、第三十一条及び第 三十二条の規定を準用する。
- 4 農業共済団体は、第二項の農林水産省令で 定める事項に係る定款等の変更をしたとき は、遅滞なく、その旨を行政庁に届け出なけ ればならない。

第五十九条 (総会の議事)

総会の議事は、この法律又は定款に特別の定めのある場合を除いては、出席者の議決権の過半数でこれを決し、可否同数のときは、議長の決するところによる。

- 2 議長は、総会においてこれを選任する。
- 3 議長は、組合員として総会の議決に加わる権利を有しない。
- 4 総会においては、第五十一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あらかじめ通知した事項についてのみ、議決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定款に特別の定め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

- 1. 정관 등의 변경
- 2. 사무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금액 및 징수방법
- 3.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안 또는 부족금처리안
- ② 정관 등의 변경(경미한 사항 및 그 밖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은 행정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③ 전항의 인가에 대해서는 제31조 및 제3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농업공제단체는 제2항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정관 등의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9조(총회의 의사)

- ① 총회의 의사는 이 법률 또는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자 의결 권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의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③ 의장은 조합원으로서 총회의 의결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 ④ 총회에서는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1

第六十条 (特別の議決)

次の事項は、総組合員の半数以上が出席し、 その議決権の三分の二以上の多数による議決 を必要とする。

- 一 定款の変更
- 二 農業共済団体の解散
- 三 農業共済組合の合併

第六十一条 (総代会)

農業共済組合及び全国連合会は、農林水産省 令で定める基準に従い定款で定めるところに より、総会に代わるべき総代会を設けること ができる。

- 2 総代の定数は、三十人以上でなければならない。
- 3 総代は、当該農業共済組合又は全国連合会の組合員でなければならない。
- 4 総代会には、総会に関する規定を、総代には、第三十七条第三項から第九項まで、第三十八条及び第五十四条の規定を準用する。
- 5 総代会において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総代の選挙及び解散の議決をすることが できない。

第六十二条 (区分経理)

農業共済団体は、その会計を農林水産省令で 定める勘定区分ごとに経理しなければならな い。

제60조(특별 의결)

다음 사항은 총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 하고,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농업공제단체의 해산
- 3. 농업공제조합의 합병

제61조(대표회)

- ① 농업공제조합 및 전국연합회는 농림수산 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총회를 대신할 대표회를 설 치할 수 있다.
- ② 대표의 정수는 30인 이상이어야 한다.
- ③ 대표는 해당 농업공제조합 또는 전국연합회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 ④ 대표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대표에는 제37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 제38조 및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대표회에서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의 선거 및 해산의 의결을 할 수 없다.

제62조(구분경리)

농업공제단체는 회계를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계정구분별로 경리하여야 한다.

第六十三条(責任準備金の積立て)

農業共済団体は、毎事業年度の終わりにおいて存する共済責任又は保険責任につき、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責任準備金を積み立て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四条 (準備金の積立て)

農業共済団体は、不足金の補塡に備えるため、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毎事業年度の剰余金の中から準備金を積み立て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節 解散及び清算

第六十五条 (解散事由)

農業共済団体は、次の事由によつて解散する。

- 一 総会の議決
- 二 農業共済組合の合併(合併により当該農業 共済組合が消滅する場合に限る。)
- 三 破産手続開始の決定

四 第二百十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解散の命令

- 2 解散の議決は、行政庁の認可を受け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
- 3 前項の場合には、第三十二条の規定を準用する。
- 4 都道府県連合会は、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由によるほか、第七十三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権利義務の承継があつたことによつて解散

제63조(책임준비금의 적립)

농업공제단체는 매 사업연도의 말에 존재하는 공제책임 또는 보험책임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64조(준비금의 적립)

농업공제단체는 부족금의 보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 중에서 준비금을 적립 하여야 한다.

제4절 해산 및 청산

제65조(해산사유)

- ① 농업공제단체는 다음 사유에 의하여 해산 한다.
- 1. 총회의 의결
- 2. 농업공제조합의 합병(합병에 의하여 해당 농업공제조합이 소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파산절차개시의 결정
- 4. 제2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산의 명 령
- ② 해산의 의결은 행정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도도부현 연합회는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사유에 의하는 외에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가 있는 것에 의

[]

する。

第六十六条(解散による共済関係等の終了)

農業共済団体が解散したときは、農業共済組合の合併及び前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解散の場合を除いては、共済関係又は保険関係は、終了する。

2 前項の場合には、農業共済団体は、まだ経 過しない期間に対する共済掛金又は保険料を 払い戻さ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七条(合併の手続)

農業共済組合が合併しようとするときは、総 会において合併を議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合併は、行政庁の認可を受け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
- 3 前項の場合には、第三十一条及び第三十二 条の規定を準用する。

第六十八条

農業共済組合が合併の議決をしたときは、その議決の日から二週間以内に財産目録及び貸借対照表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

- 2 農業共済組合は、前項の期間内に、債権者に対して、異議があれば一定の期間内にこれを述べるべき旨を公告し、かつ、知れている債権者には、各別にこれを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前項の一定の期間は、一月を下つてはならない。

하여 해산한다.

제66조(해산에 의한 공제관계 등의 종료)

- ① 농업공제단체가 해산한 때에는 농업공제 조합의 합병 및 전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관계 또는 보 험관계는 종료한다.
- ② 전항의 경우에는 농업공제단체는 아직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공제부금 또는 보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67조(합병의 절차)

- ① 농업공제조합이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합병을 의결하여야 한다.
- ② 합병은 행정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

- ① 농업공제조합이 합병의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일부터 2주일 이내에 재산목록 및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농업공제조합은 전항의 기간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이를 진술하여야 하는 사실을 공고하고, 알려진 채권자에게는 각각 최고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일정한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第六十九条

債権者が前条第二項の一定の期間内に異議を 述べなかつたときは、合併を承認したものと みなす。

2 債権者が異議を述べたときは、農業共済組合は、弁済し、若しくは相当の担保を供し、 又はその債権者に弁済を受けさせることを目的として信託会社若しくは信託業務を営む金融機関に相当の財産を信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合併をしてもその債権者を害するおそれが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七十条

合併によつて農業共済組合を設立するには、 各農業共済組合の総会において組合員(法人 等たる組合員を除き、組合員たる法人等の業 務を執行する役員を含む。)の中から選任し た設立委員が共同して、定款等を作成し、役 員を選任し、その他設立に必要な行為をしな ければならない。

- 2 前項の規定による役員のうち理事の選任には、第三十七条第十一項本文の規定を準用する。
- 3 第一項の規定による設立委員の選任には、 第六十条の規定を準用する。

第七十一条(合併の時期)

農業共済組合の合併は、合併後存続する農業 共済組合又は合併によつて設立する農業共済 組合が、その主たる事務所の所在地におい て、登記をすることによつてその効力を生ず る。

제69조

- ① 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②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농업공제 조합은 변제 또는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거 나 채권자에게 변제받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 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금융 기관에 상응하는 재산을 신탁하여야 한다. 다만, 합병을 하여도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

- ① 합병에 의하여 농업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각 농업공제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법인 등인 조합원을 제외하고, 조합원 법인 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정관 등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며, 그 밖에 설립에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 내 이사의 선임에는 제37조제1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위원의 선임에는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합병의 시기)

농업공제조합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농 업공제조합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하는 농 업공제조합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 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第七十二条(合併による権利義務の承継)

合併後存続する農業共済組合又は合併によつ て設立した農業共済組合は、合併によつて消滅した農業共済組合の権利義務(当該農業共 済組合がその行う事業に関し、行政庁の許 可、認可その他の処分に基づいて有する権利 義務を含む。)を承継する。

第七十三条(特定組合による権利義務の承 継)

都道府県連合会の組合員たる一の農業共済組合のほかに当該都道府県連合会の組合員がなくなつたとき、又は都道府県連合会の組合員たる組合等の区域の全てを合わせた区域をその区域とする農業共済組合が成立したときは、当該農業共済組合は、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農林水産大臣に、当該都道府県連合会の権利義務(当該都道府県連合会の権利義務(当該都道府県連合会がその行う事業に関し、行政庁の許可、認可その他の処分に基づいて有する権利義務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を承継することについて、認可を申請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認可があつたときは、当該都道府県連合会の権利義務は、その時において当該認可の申請に係る農業共済組合に承継されるものとし、当該都道府県連合会は、その時において解散するものとする。

3 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存する農業共済組合は、第二十条第三項及び第二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前項の規定による権利義務の承継が行われるまでの間は、これを当

제72조(합병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

합병 후 존속하는 농업공제조합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한 농업공제조합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농업공제조합의 권리의무(해당 농업공제조합이 실시하는 사업에 관하여 행정청의 허가, 인가 및 그 밖의 처분에 기초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제73조(특정조합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

① 도도부현 연합회의 조합원인 하나의 농업 공제조합 외에 해당 도도부현 연합회의 조합원이 없어진 때 또는 도도부현 연합회의 조합원인 조합 등의 구역 전부를 합친 구역을 그 구역으로 하는 농업공제조합이 성립된 때에는 해당 농업공제조합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대신에게 해당 도도부현 연합회의 권리의무(해당 도도부현 연합회의 권리의무(해당 도도부현 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에 관하여 행정청의 허가, 인가 및 그 밖의 처분에 기초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승계하는 것에 대하여 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다.

② 전항의 인가가 있는 때에는 해당 도도부 현 연합회의 권리의무는 그때 해당 인가의 신청과 관련된 농업공제조합에 승계되고, 해 당 도도부현 연합회는 그때 해산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존재하는 농업공제조합은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규정에 따른권리의무의 승계가 될 때까지는 해당 도도부

該都道府県連合会の組合員とみなす。

4 第二項の規定による権利義務の承継の際現に存する都道府県連合会と政府との間の再保険関係については、当該再保険関係に係る共済責任期間(家畜共済に係るものにあつては、共済掛金期間)が終了するまでの間は、同項の規定により都道府県連合会の権利義務を承継した農業共済組合(以下「特定組合」という。)を当該都道府県連合会とみなして、この法律の規定を適用する。

5 前各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第二項の規定により農業共済組合が都道府県連合会の権利義務を承継する場合の手続及び当該農業共済組合が当該都道府県連合会の権利義務を承継した場合の当該都道府県連合会と政府との間の再保険関係に係る経過措置に関し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

第七十四条 (清算中の農業共済団体の能力)

解散した農業共済団体は、清算の目的の範囲 内において、その清算の結了に至るまでは、 なお存続するものとみなす。

第七十五条(清算人の就任)

農業共済団体が解散したときは、合併及び破産手続開始の決定並びに第六十五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解散の場合を除いては、理事が、その清算人となる。ただし、総会において他人を選任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七十六条 (裁判所による清算人の選任)

현 연합회의 조합원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시 현재 존재하는 도도부현 연합회와 정부 간의 재보험관계에 대해서는 해당 재보험관 계와 관련된 공제책임기간(가축공제와 관련 된 것인 경우에는 공제부금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 연합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농업공제조합 (이하 "특정조합"이라 한다)을 해당 도도부 현 연합회로 보아 이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 다.

⑤ 전 각 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공제조합이 도도부현 연합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의 절차 및해당 농업공제조합이 해당 도도부현 연합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 해당 도도부현연합회와 정부 간의 재보험관계와 관련된 경과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74조(청산 중인 농업공제단체의 능력)

해산한 농업공제단체는 청산 목적의 범위 내에서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75조(청산인의 취임)

농업공제단체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 및 파산절차개시의 결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재판소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前条の規定により清算人となる者がないとき、又は清算人が欠けたため損害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は、裁判所は、利害関係人若しくは検察官の請求により又は職権で、清算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七十七条 (清算人の解任)

重要な事由があるときは、裁判所は、利害関係人若しくは検察官の請求により又は職権で、清算人を解任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七十八条 (清算人の職務及び権限)

清算人の職務は、次のとおりとする。

- 一 現務の結了
- 二 債権の取立て及び債務の弁済
- 三 残余財産の引渡し
- 2 清算人は、前項各号に掲げる職務を行うために必要な一切の行為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七十九条(清算人の財産調査義務)

清算人は、就職の後遅滞なく、農業共済団体の財産の状況を調査し、財産目録及び貸借対照表を作り、財産処分の方法を定め、これを総会に提出してその承認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八十条(債権の申出の催告等)

清算人は、その就職の日から二月以内に、少なくとも三回の公告をもつて、債権者に対し、一定の期間内にその債権の申出をすべき旨の催告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

전조의 규정에 따라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때 또는 청산인이 없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재판소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77조(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소는 이해관 계인이나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 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78조(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

-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현재 사무의 종결
- 2.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변제
- 3. 잔여재산의 인도
- ② 청산인은 전항 각 호에 열거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할수 있다.

제79조(청산인의 재산조사의무)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농업공제단체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 표를 작성하며,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구하여야 한 다.

제80조(채권신고의 최고 등)

①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적어도 3회의 공고로써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실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은 2개월 이상이

おいて、その期間は、二月を下ることができない。

- 2 前項の公告には、債権者がその期間内に申 出をしないときは清算から除斥されるべき旨 を付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清算人 は、知れている債権者を除斥することができ ない。
- 3 清算人は、知れている債権者には、各別にその申出の催告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第一項の公告は、官報に掲載してする。

第八十一条(期間経過後の債権の申出)

前条第一項の期間の経過後に申出をした債権 者は、農業共済団体の債務が完済された後ま だ権利の帰属すべき者に引き渡されていない 財産に対してのみ、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 る。

第八十二条(清算中の農業共済団体についての破算手続の開始)

清算中に農業共済団体の財産がその債務を完済するのに足りないことが明らかになつたときは、清算人は、直ちに破産手続開始の申立てをし、その旨を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清算人は、清算中の農業共済団体が破産手 続開始の決定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破産管 財人にその事務を引き継いだときは、その任 務を終了したものとする。
- 3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清算中の農業共済団体が既に債権者に支払い、又は権利の帰属すべき者に引き渡したものがあるときは、破産管財人は、これを取り戻すことがで

어야 한다.

- 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청산에서 제척되어야 하는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인은 알려진 채권자를 제척할 수 없다.
- ③ 청산인은 알려진 채권자에게는 각각 신고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여 한다.

제81조(기간 경과 후의 채권신고)

전조 제1항의 기간 경과 후에 신고를 한 채 권자는 농업공제단체의 채무가 모두 변제된 후 아직 권리가 귀속되어야 하는 자에게 인 도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를 할 수 있다. 。

제82조(청산 중인 농업공제단체에 대한 파산 절차의 개시)

- ① 청산 중에 농업공제단체의 재산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함이 밝혀진 때에는 청 산인은 즉시 파산절차개시를 신청하고 그 사 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청산인은 청산 중인 농업공제단체가 파산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한 때에는 임무를 종료한 것으로 한다.
- ③ 전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청산 중인 농업 공제단체가 이미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권리가 귀속될 자에게 인도한 것이 있는 때에

きる。

4 第一項の規定による公告は、官報に掲載してする。

第八十三条 (残余財産の帰属)

解散した農業共済団体の残余財産は、合併及 び破産手続開始の決定による解散の場合を除 くほか、第八十六条の規定による届出の時に おいて、定款で指定した農業共済団体に帰属 す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処分されない財産は、国庫に帰属する。

第八十四条 (裁判所による監督)

農業共済団体の解散及び清算は、裁判所の監督に属する。

- 2 裁判所は、職権で、いつでも前項の監督に 必要な検査をすることができる。
- 3 農業共済団体の解散及び清算を監督する裁判所は、農業共済団体の業務を監督する行政 庁に対し、意見を求め、又は調査を嘱託する ことができる。
- 4 前項に規定する行政庁は、農業共済団体の解散及び清算を監督する裁判所に対し、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第八十五条 (決算報告書)

清算事務が終わつたときは、清算人は、遅滞なく、決算報告書を作り、これを総会に提出してその承認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는 파산관재인은 이를 회복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관보에 게 재하여 한다.

제8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농업공제단체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절차개시의 결정에 의한 해산의 경우 를 제외하고,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시 정관에서 지정한 농업공제단체에 귀속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제84조(재판소에 의한 감독)

- ① 농업공제단체의 해산 및 청산은 재판소의 감독에 속한다.
- ② 재판소는 직권으로 언제든지 전항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 ③ 농업공제단체의 해산 및 청산을 감독하는 재판소는 농업공제단체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에 의견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 ④ 전항에서 규정하는 행정청은 농업공제단 체의 해산 및 청산을 감독하는 재판소에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5조(결산보고서)

청산사무가 종료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구하여야 한다.

第八十六条 (清算結了の届出)

清算が結了したときは、清算人は、その旨を 行政庁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八十七条 (解散及び清算の監督等に関する 事件の管轄)

農業共済団体の解散及び清算の監督並びに清 算人に関する事件は、その主たる事務所の所 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第八十八条 (不服申立ての制限)

清算人の選任の裁判に対しては、不服を申し 立てることができない。

第八十九条(裁判所の選任する清算人の報 酬)

裁判所は、第七十六条の規定により清算人を 選任した場合には、農業共済団体が当該清算 人に対して支払う報酬の額を定めることがで 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裁判所は、当該 清算人及び監事の陳述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 い。

第九十条 (検査役の選任)

裁判所は、農業共済団体の解散及び清算の監督に必要な調査をさせるため、検査役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裁判所が検査役を選任した場合については、前二条の規定を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前条中「清算人及び監事」とあるのは、「農業共済団体及び検査役」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제86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7조(해산 및 청산의 감독 등에 관한 사건의 관할)

농업공제단체의 해산 및 청산의 감독, 청산 인에 관한 사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의 관할에 속한다.

제88조(불복신청의 제한)

청산인의 선임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 할 수 없다.

제89조(재판소가 선임하는 청산인의 보수)

재판소는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농업공제단체가 해당 청산 인에 지급할 보수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 우에는 재판소는 해당 청산인 및 감사의 진 술을 들어야 한다.

제90조(검사인의 선임)

- ① 재판소는 농업공제단체의 해산 및 청산의 감독에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역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소가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조 중 "청산인 및 감사"는 "농업 공제단체 및 검사인"으로 대체한다.

第五節 特定合併及び事業譲渡

第九十一条 (特定合併)

全国連合会と特定組合とは、合併を行うこと ができる。

- 2 全国連合会と都道府県連合会及びその組合員たる全ての農業共済組合とは、合併を行うことができる。
- 3 前二項の場合において、合併後存続する法 人は、全国連合会とする。

第九十二条

前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合併(以下「特定合併」という。)の際現に存する特定組合と政府との間の保険関係又は都道府県連合会と政府との間の再保険関係については、当該保険関係又は再保険関係に係る共済責任期間(家畜共済に係るものにあつては、共済掛金期間)が終了するまでの間は、全国連合会を当該特定組合又は都道府県連合会とみなして、この法律の規定を適用する。

第九十三条

特定合併については、第六十条、第六十五条 第一項、第六十七条から第六十九条まで、第 七十一条及び第七十二条の規定を準用する。 この場合において、これらの規定中「農業共 済組合」とあるのは、「農業共済団体」と読 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九十四条(事業譲渡)

農業共済組合は、共済事業の全部又は一部を

제5절 특정합병 및 사업양도

제91조(특정합병)

- ① 전국연합회와 특정조합은 합병할 수 있다.
- ② 전국연합회와 도도부현 연합회 및 조합원 인 모든 농업공제조합은 합병할 수 있다.
- ③ 전2항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전국연합회로 한다.

제92조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합병(이하 "특정합병"이라 한다) 시 현재 존재하는 특정조합과 정부 간의 보험관계 또는 도도부현 연합회와 정부 간의 재보험관계에 대해서는 해당보험관계 또는 재보험관계와 관련된 공제책임기간(가축공제와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공제부금기관)이 종료할 때까지는 전국연합회를 해당 특정조합 또는 도도부현 연합회로보아 이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3조

특정합병에 대해서는 제60조, 제65조제1항,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러한 규정중 "농업공제조합"은 "농업공제단체"로 대체한다.

제94조(사업양도)

① 농업공제조합은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

全国連合会に譲り渡すことができる。

- 2 全国連合会は、農業共済組合から共済事業の全部又は一部を譲り受けることができる。
- 3 前二項の規定による共済事業の全部又は一部の譲渡し又は譲受け(以下「事業譲渡」という。)については、第六十条及び第六十七条から第六十九条までの規定を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これらの規定中「農業共済組合」とあるのは、「農業共済団体」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九十五条 (共済事業の効率化)

農業共済団体は、共済事業の効率化を図るため、相互に連携し、合併の推進その他共済事業の実施体制の改善に努めるものとする。

第九十六条(政令への委任)

この節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農業共済団体が特定合併又は事業譲渡をした場合における 共済関係、保険関係又は再保険関係に係る経 過措置その他特定合併又は事業譲渡に関し必 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

第三章 農業共済事業等 第一節 農業共済事業 第一款 通則

第九十七条(共済事業の種類)

共済事業の種類は、次のとおりとする。

一 農作物共済

부를 전국연합회에 양도할 수 있다.

- ② 전국연합회는 농업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있다.
- ③ 전2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또는 양수(이하 "사업양 도"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60조,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 러한 규정 중 "농업공제조합"은 "농업공제단 체"로 대체한다.

제95조(공제사업의 효율화)

농업공제단체는 공제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 연계하여 합병의 추진 및 그밖에 공제사업의 실시체제 개선에 노력한다.

제96조(정령에 대한 위임)

이 절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농업공제단체가 특정합병 또는 사업양도를 한 경우, 공제관계, 보험관계 또는 재보험관계와 관련된경과조치 및 그 밖에 특정합병 또는 사업양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3장 농업공제사업 등 제1절 농업공제사업 제1관 통칙

제97조(공제사업의 종류)

- ① 공제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농작물공제

- 二 家畜共済
- 三 果樹共済
- 四 畑作物共済
- 五 園芸施設共済

六 任意共済

- 2 家畜共済は、死亡廃用共済及び疾病傷害共済とする。
- 3 果樹共済は、収穫共済及び樹体共済とす る。

第九十八条(共済事業の内容)

共済事業は、農作物共済にあつては第一号、 家畜共済のうち死亡廃用共済にあつては第二 号、家畜共済のうち疾病傷害共済にあつては 第三号、果樹共済のうち椒穫共済にあつては 第四号、果樹共済のうち樹体共済にあつては 第五号、畑作物共済にあつては第六号、園芸 施設共済にあつては第七号に掲げる共済目的 につき、当該各号に掲げる共済事故によつて 生じた損害について、組合員等に対し共済金 を交付する事業とする。

一 共済目的 水稲、麦その他政令で指定する 食糧農作物

共済事故 風水害、干害、冷害、雪害その他気 象上の原因(地震及び噴火を含む。)による 災害、火災、病虫害及び鳥獣害

二 共済目的 牛、馬及び豚で出生後経過した 期間が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基準に適合する

- 2. 가축공제
- 3. 과수공제
- 4. 밭작물공제
- 5. 원예시설공제
- 6. 임의공제
- ② 가축공제는 폐사·폐용공제 및 질병·상해 공제로 하다.
- ③ 과수공제는 수확공제 및 수체공제로 한다.

제98조(공제사업의 내용)

① 공제사업은 농작물공제의 경우에는 제1호, 가축공제 중 폐사·폐용공제의 경우에는 제2호, 가축공제 중 질병·상해공제의 경우에는 제3호, 과수공제 중 수확공제의 경우에는 제4호, 과수공제 중 수체공제의 경우에는 제5호, 발작물공제의 경우에는 제6호, 원예시설공제의 경우에는 제7호에 열거하는 공제목적과 관련하여 해당 각 호에 열거하는 공제 제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조합원 등에게 공제금을 교부하는 사업으로 한다.

1. 공제 목적: 논벼, 보리 및 그 밖에 정령으로 지정하는 식량농작물

공제사고: 풍수해, 가뭄해, 냉해, 설해 및 그밖에 기상 원인(지진 및 분화를 포함한다)에의한 재해, 화재, 병충해 및 조수해

2. 공제 목적: 소, 말 및 돼지로 출산 후 경과한 기간이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

もの

共済事故 牛、馬及び種豚にあつては死亡(と 殺による死亡及び家畜伝染病予防法(昭和二 十六年法律第百六十六号)第五十八条第一項 (第四号に係る部分に限る。)の規定による 手当金、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特別手当金 又は同法第六十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補 償金の交付の原因となる死亡を除く。以下こ の条において同じ。)及び廃用、種豚以外の 豚にあつては死亡

三 共済目的 前号に掲げる牛、馬及び豚(種豚に限る。)

共済事故 疾病及び傷害

四 共済目的 うんしゆうみかん、なつみかん、りんご、ぶどう、なし、ももその他政令で指定する果樹(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品種に属するもの及び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栽培方法により栽培されているものを除く。)

共済事故 風水害、干害、寒害、雪害その他気 象上の原因(地震及び噴火を含む。)による 災害、火災、病虫害及び鳥獣害(果実の減収 又は品質の低下を伴うものに限る。)

五 共済目的 前号に掲げる果樹(農林水産省 令で定めるその支持物を含むものとし、農林 水産省令で定める生育の程度に達していない 果樹及びその支持物を除く。以下この号にお いて同じ。)

共済事故 風水害、干害、寒害、雪害その他気象上の原因(地震及び噴火を含む。)による

에 적합한 것

공제사고: 소, 말 및 씨돼지의 경우에는 폐사(도살에 의한 폐사 및 「가축전염병예방법」(1951년 법률 제166호) 제58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규정에 따른 수당금,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따른 특별수당금 또는 같은 법 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교부 원인이되는 폐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폐용, 씨돼지 이외의 돼지인 경우에는 폐사

3. 공제 목적: 전호에 열거하는 소, 말 및 돼지(씨돼지로 한정한다)

공제사고: 질병 및 상해

4. 공제 목적: 온주밀감, 여름밀감, 사과, 포도, 배, 복숭아 및 그 밖에 정령으로 지정하는 과수(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품종에 속하는 것 및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재배방법으로 재배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공제사고: 풍수해, 가뭄해, 한해, 설해 및 그 밖에 기상 원인(지진 및 분화를 포함한다)에 의한 재해, 화재, 병충해 및 조수해(과실의수확 감소 또는 품질의 저하를 수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공제 목적: 전호에 열거하는 과수(농림수 산성령으로 정하는 지지물을 포함하고, 농림 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생육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및 지지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공제사고: 풍수해, 가뭄해, 한해, 설해 및 그 밖에 기상 원인(지진 및 분화를 포함한다)에 災害、火災、病虫害及び鳥獣害(果樹の枯死、流失、滅失、埋没又は損傷を伴うものに限る。)

六 共済目的 ばれいしよ、大豆、小豆、いん げん、てん菜及びさとうきび(農林水産省令 で定める品種に属するもの及び農林水産省令 で定める栽培方法により栽培されているもの を除く。)並びに第一号に掲げる農作物、桑 及び果樹以外の農作物で政令で指定するもの 並びに蚕繭

共済事故 農作物にあつては風水害、干害、冷害、ひよう害その他気象上の原因(地震及び噴火を含む。)による災害、火災、病虫害及び鳥獣害、蚕繭にあつては蚕児の風水害、地震又は噴火による災害、火災、病虫害及び鳥獣害並びに桑葉の風水害、干害、凍害、ひよう害、雪害その他気象上の原因(地震及び噴火を含む。)による災害、火災、病虫害及び獣害

七 共済目的 施設園芸(農作物の生育条件を一定の施設により調節し、及び管理して、これを栽培することをいう。)の用に供する施設 (第四項第一号において「施設園芸用施設」という。)のうち温室その他のその内部で農作物を栽培するための施設及び気象上の原因により農作物の生育が阻害されることを防止するための施設(これらに附属する設備を含むものとし、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簡易なものを除く。以下「特定園芸施設」という。)

共済事故 風水害、ひよう害その他気象上の原因(地震及び噴火を含む。)による災害、火災、破裂、爆発、航空機の墜落及び接触、航

의한 재해, 화재, 병충해 및 조수해(과수의 고사, 유실, 멸실, 매몰 또는 손상을 수반하 는 것으로 한정한다)

6. 공제 목적: 감자, 콩, 팥, 강낭콩, 사탕무 및 사탕수수(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품종에 속하는 것 및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재배방법으로 재배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제1호에 열거하는 농작물, 뽕나무 및 과수 이외의 농작물로 정령으로 지정하는 것 및 누에고치

공제사고: 농작물의 경우에는 풍수해, 가뭄해, 냉해, 박해 및 그 밖에 기상 원인(지진 및 분화를 포함한다)에 의한 재해, 화재, 병충해 및 조수해, 누에고치의 경우에는 누에의 풍수해, 지진 또는 분화에 의한 재해, 화재, 병충해 및 조수해, 뽕잎의 풍수해, 가뭄해, 동해, 박해, 설해 및 그 밖에 기상 원인(지진 및 분화를 포함한다)에 의한 재해, 화재, 병충해 및 수해(獸害)

7. 공제 목적: 시설원예(농작물의 생육조건을 일정한 시설에 의하여 조절 및 관리하여이를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용으로 사용하는시설(제4항제1호에서 "시설원예용시설"이라한다)중 온실 및 그 밖의 내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 및 기상 원인에 의한농작물의 생육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에 부속하는 설비를 포함하고, 농립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간이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특정원예시설"이라 한다)

공제사고: 풍수해, 박해 및 그 밖에 기상 원인(지진 및 분화를 포함한다)에 의한 재해, 화재, 파열, 폭발, 항공기의 추락 및 접촉, 空機からの物体の落下、車両及びその積載物 の衝突及び接触、病虫害並びに鳥獣害

- 2 前項第二号に掲げる牛以外の牛及び牛の胎児(これらのうち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生育の程度に達したものに限る。)は、事業規程(第百七条第一項に規定する共済事業を行う市町村にあつては、共済事業の実施に関する条例。第四項において同じ。)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家畜共済(牛の胎児にあつては、死亡廃用共済に限る。)の共済目的と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牛の胎児に係る共済事故は、死亡とする。
- 3 第一項第二号の廃用並びに同項第五号の埋 没及び損傷の範囲は、農林水産省令で定め る。
- 4 次に掲げる物は、事業規程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特定園芸施設に併せて園芸施設共済の共済目的と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施設園芸用施設(特定園芸施設を除く。)であつて、特定園芸施設とともに次号に掲げる農作物の栽培の用に供されるもの(以下「附帯施設」という。)
- 二 特定園芸施設を用いて栽培される農作物 (農作物共済、果樹共済及び畑作物共済に係 る農作物その他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農作物 を除く。以下「施設内農作物」という。)
- 5 共済事業は、任意共済にあつては、第一項 第一号に掲げる農作物、同項第四号に掲げる 果樹、同項第六号に掲げる農作物及び施設内 農作物以外の農作物、農産物、特定園芸施設

항공기로부터 물체의 낙하, 차량 및 적재물 의 충돌과 접촉, 병충해, 조수해

- ② 전항 제2호에 열거하는 소 이외의 소 및 소의 태아(이들 중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생육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 한정한다)는 사업규정(제10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시정촌의 경우에는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조례. 제4항에서 같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공제(소의 태아인 경우에는 폐사·폐용공제로 한정한다)의 공제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의 태아와 관련된 공제사고는 폐사로 한다.
- ③ 제1항제2호의 폐용과 같은 항 제5호의 매몰 및 손상의 범위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다.
- ④ 다음에 열거하는 물건은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원예시설과 함께 원예시설공제의 공제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1.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원예용시설 (특정원예시설을 제외한다)로 특정원예시설 과 함께 다음 호에 열거하는 농작물의 재배 용으로 사용되는 것(이하 "부대시설"이라 한 다)
- 2. 특정원예시설을 사용하여 재배되는 농작물(농작물공제, 과수공제 및 밭작물공제와 관련된 농작물 및 그 밖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농작물을 제외한다. 이하 "시설 내 농작물"이라 한다)
- ⑤ 공제사업은 임의공제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 열거하는 농작물, 같은 항 제4호에 열거하는 과수, 같은 항 제6호에 열거하는 농작물 및 시설 내 농작물 이외의 농작물,

及び附帯施設以外の建物及び農機具その他農 林水産省令で定める物について生じた損害又 は家畜の輸送中に生じた損害について、組合 員等に対し共済金を交付する事業とする。

第九十九条(農業共済組合による共済事業の 実施)

農業共済組合は、第九十七条第一項第一号及 び第二号に掲げる共済事業を行う。

2 農業共済組合は、農作物共済の一の共済目的の種類につき、当該農業共済組合の組合員の営む当該種類についての耕作の業務の総体としての規模が農林水産大臣の定める基準に達しないことその他当該種類を共済目的の種類としないことについて政令で定める相当の事由があるとき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農作物共済において、当該種類を共済目的の種類としないことができる。

3 家畜共済には、前項の規定を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項中「当該農業共済組合の組合員の営む当該種類についての耕作の業務の総体としての規模が農林水産大臣の定める基準に達しないことその他当該種類」とあるのは、「当該種類」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ほか、必要な技術的読替えば、政令で定める。

4 農業共済組合(特定組合を除く。次項において同じ。)は、その所属する都道府県連合会が第百六十四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その共済責任に係る保険事業を行う場合に限り、第

농산물, 특정원예시설 및 부대시설 이외의 건물 및 농기구, 그 밖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물건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 및 가축 의 수송 중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조합원 등에게 공제금을 교부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99조(농업공제조합에 의한 공제사업의 실시)

① 농업공제조합은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 2호에 열거하는 공제사업을 실시한다.

② 농업공제조합은 농작물공제의 한 가지 공제 목적의 종류와 관련하여 해당 농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해당 종류에 대한 경작업무의 총체로서의 규모가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달하지 아니하는 것 및 그밖에 해당 종류를 공제 목적의 종류로 하지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작물공제에 있어서 해당종류를 공제 목적의 종류로 하지아니할 수있다.

③ 가축공제에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중 "해당 농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해당 종류에 대한 경작업 무의 총체로서의 규모가 농림수산대신이 정 하는 기준에 달하지 아니하는 것 및 그 밖에 해당 종류"는 "해당 종류"로 대체하는 외에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정령으로 정한다.

④ 농업공제조합(특정조합을 제외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은 소속된 도도부현 연합회가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책임과 관 련된 보험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九十七条第一項第三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 る共済事業を行うことができる。

5 農業共済組合は、その所属する都道府県連合会が第百六十四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その 共済責任に係る保険事業を行う場合に限り、 当該都道府県連合会の承認を経て、第九十七 条第一項第六号に掲げる共済事業を行うこと ができる。

6 特定組合は、第九十七条第一項第三号から 第六号までに掲げる共済事業を行うことがで きる。

第百条(全国連合会による共済事業の実施)

全国連合会は、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特定区域(当該全国連合会と特定合併をした特定組合又は都道府県連合会の区域に相当する区域をいう。以下同じ。)を実施区域として、第九十七条第一項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共済事業を行う。

2 全国連合会は、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特定区域を実施区域として、第九十七条第一項第三号から第六号までに掲げる 共済事業を行うことができる。

3 前二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全国連合会は、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特定区域以外の区域(以下この項において「特定区域外区域」という。)を実施区域として、共済事業を行う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全国連合会は、特定区域外区域において農業共済組合又は第百七条第一項に規定する共済事業を行う市町村が行う共済事業の共済目的の種類とされているものを、共済

제9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열거하는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농업공제조합은 소속된 도도부현 연합회가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책임과 관련된 보험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해당 도도부현 연합회의 승인을 거쳐 제 97조제1항제6호에 열거하는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⑥ 특정조합은 제9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 까지에 열거하는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 다.

제100조(전국연합회에 의한 공제사업의 실시)

① 전국연합회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구역(해당 전국연합회와 특정 합병을 한 특정조합 또는 도도부현 연합회의 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실시구역으로 하여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하는 공제사업을 실시한다.

② 전국연합회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구역을 실시구역으로 제97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열거하는 공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전국연합 회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정구역 이외의 구역(이하 이 항에서 "특정구 역 밖 구역"이라 한다)을 실시구역으로 하여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국 연합회는 특정구역 밖 구역에서 농업공제조 합 또는 제10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사 업을 실시하는 시정촌이 실시하는 공제사업 의 공제 목적의 종류로 되어 있는 것을 공제 事業の共済目的の種類とすることができない。 い。

4 第一項の規定により全国連合会が共済事業を行う場合には、前条第二項の規定を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必要な技術的読替えは、政令で定める。

第百一条(市町村に対する共済事業の実施の 申出)

農業共済組合(一の市町村の区域の全部又は 一部をその区域とする農業共済組合に限 る。)は、その行う共済事業の規模が農林水 産大臣の定める基準に達しない場合その他政 令で定める特別の事由がある場合には、あら かじめその区域を管轄する市町村と協議し、 総会の議決を経て、当該市町村に対し、当該 市町村が第九十七条第一項第一号から第五号 までに掲げる共済事業を行うことにつき申出 をすることができる。

- 2 農業共済組合は、前項の申出をし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旨を都道府県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 3 第一項の総会の議決には、第六十条の規定を準用する。

第百二条(市町村による共済事業の実施の認 可)

市町村は、前条第一項の申出があつた場合 (当該市町村の区域の一部をその区域とする 農業共済組合で第九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 り現に共済事業を行つているものが二以上存 するときは、その全ての農業共済組合から前 사업의 공제 목적의 종류로 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국연합회가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조 제2항의 규 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대 체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시정촌에 대한 공제사업의 실시 신 청)

- ① 농업공제조합(하나의 시정촌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는 농업공제조합으로 한정한다)은 실시하는 공제사업의 규모가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구역을 관할하는 시정촌과 협의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시정촌에 대하여 해당 시정촌이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열거하는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관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농업공제조합은 전항의 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총회의 의결에는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2조(시정촌에 의한 공제사업의 실시 인가)

① 시정촌은 전조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해당 시정촌의 구역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는 농업공제조합으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재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둘 이상 존재하는 때에는 모든 농업공

条第一項の申出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申出に基づき共済事業を行うことを必要かつ適当と認めるときは、都道府県知事の認可を受け、当該申出に係る農業共済組合の区域に相当する区域において、第九十七条第一項第一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共済事業を行うことができる。

2 市町村は、前項の認可を受けようとすると きは、共済事業の実施に関する条例及び共済 事業の実施計画(第百七条第一項に規定する 共済事業を行う市町村にあつては、共済事業 の実施に関する条例の変更に関する条例及び 新たに共済事業の実施区域となる地域に係る 共済事業の実施計画)を定め、これを申請書 に添え、都道府県知事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 ない。

3 都道府県知事は、前項の規定による申請書 の提出を受けたときは、これを受理した日か ら二月以内に、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 により、当該市町村に対し書面で認可又は不 認可の通知を発するとともに、その旨を、当 該申請の原因となつた前条第一項の申出をし た農業共済組合に対し書面で通知し、かつ、 認可処分に係る場合にあつては共済事業の実 施区域を明らかにして公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二項の規定による申請書の提出があつた場合には、第三十一条及び第三十二条第二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を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三十一条中「定款等」とあるのは、「共済事業の実施に関する条例」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5 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十二条第二項又

제조합으로부터 전조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에 기초하여 공제사업을 실 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도부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당 신 청과 관련된 농업공제조합의 구역에 해당하 는 구역에서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 지에 열거하는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정촌은 전항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조례 및 공제사업의 실시계획(제10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시정촌의 경우에는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조례의 변경에 관한조례 및 새롭게 공제사업의 실시구역이 되는지역과 관련된 공제사업의 실시계획)을 정하고,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도도부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도부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이를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정촌에 서면으로 인가 또는 불인가의 통지를 발송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해당 신청의 원인이 된 전조 제1항의신청을 한 농업공제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인가처분과 관련된 경우에는 공제사업의실시구역을 분명히 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 및 제3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 31조 중 "정관 등"은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 한 조례"로 대체한다.

⑤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32조제2항 또는 제

は第五項の場合には、都道府県知事は、同条第二項の場合にあつては同項の期間満了後、同条第五項の場合にあつては同項の判決の確定後、遅滞なく、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旨を、共済事業の実施区域を明らかにして公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百三条 (共済事業の実施に関する条例)

市町村の共済事業の実施に関する条例には、 第三十五条第一項第六号、第八号及び第九号 並びに第三十六条第一項第一号から第六号ま で及び第八号に掲げる事項、共済事業の実施 区域並びに共済関係の成立及び消滅に関する 事項を規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百四条 (共済資格者)

第百七条第一項に規定する共済事業を行う市町村との間に当該共済事業の共済関係を成立させることができる者は、当該市町村が行う第二十条第一項第一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共済事業の種類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者で、当該共済事業の実施区域内に住所を有するもの(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基準に従い共済事業の実施に関する条例で定める者を除く。)とする。

2 前項に規定する共済関係を成立させることができる者(以下「共済資格者」という。)については、第二十条第二項の規定を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項中「農業共済組合の区域」とあるのは、「共済事業の実施区域」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3 第百七条第一項に規定する共済事業を行う 市町村との間に当該共済事業の共済関係の存 5항의 경우에는 도도부현지사는 같은 조 제 2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의 기간만료 후, 같 은 조 제5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의 판결확 정 후, 지체 없이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제사업의 실시구역을 분명히 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03조(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조례)

시정촌의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조례에는 제35조제1항제6호, 제8호 및 제9호, 제36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열거하는 사항, 공제사업의 실시구역, 공제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한다.

제104조(공제자격자)

① 제10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시정촌과의 사이에서 해당 공제사업의 공제관계를 성립할 수 있는 자는 해당시정촌이 실시하는 제20조제1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에 열거하는 공제사업의 종류에따라 해당 각 호에 정하는 자로, 해당 공제사업의 실시구역 내에 주소를 두는 자(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공제관계를 성립할 수 있는 자(이하 "공제자격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같은 항 중 "농업공제조합의 구역"은 "공제사업의 실시구역"으로 대체한다.

③ 제10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시정촌과의 사이에서 해당 공제사

する者が、共済資格者でなくなつたときは、 その時に、当該共済関係は、消滅するものと する。

第百五条(農業共済組合による共済事業に関 する経過措置)

第百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公示(同条第五項の規定による公示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があつた日以後においては、当該公示に係る農業共済組合が行う共済事業は、第九十九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次に掲げるものに限るものとする。

- 一 その共済責任期間が当該公示前に始まり当 該公示の際まだ満了していない共済目的につ いての農作物共済
- 二 当該公示以前にその共済責任期間が満了した共済目的についての農作物共済
- 三 当該公示以前に共済事故が発生した家畜共済に係る共済目的についてその共済事故の発生の際存した当該共済関係に係る家畜共済

四 果樹共済又は畑作物共済を行う農業共済組合にあつては、次に掲げる果樹共済又は畑作物共済

イ その共済責任期間が当該公示前に始まり当 該公示の際まだ満了していない共済関係に係 る果樹共済又は畑作物共済

ロ 当該公示以前にその共済責任期間が満了した共済関係に係る果樹共済又は畑作物共済

五 園芸施設共済又は任意共済を行う農業共済

업의 공제관계가 존재하는 자가 공제자격자 가 아니게 된 때에는 그때 해당 공제관계는 소멸하다.

제105조(농업공제조합에 의한 공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날 이후에는 해당 공시와 관련된 농업공제조합이 실시하는 공제사업은 제9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 공제책임기간이 해당 공시 전에 시작하여 해당 공시 시 아직 만료하지 아니한 공제 목 적에 대한 농작물 공제
- 2. 해당 공시 이전에 공제책임기간이 만료한 공제 목적에 대한 농작물공제
- 3. 해당 공시 이전에 공제사고가 발생한 가 축공제와 관련된 공제 목적에 대하여 공제사 고의 발생 시 존재한 해당 공제관계와 관련 된 가축공제
- 4. 과수공제 또는 밭작물공제를 실시하는 농 업공제조합의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과 수공제 또는 밭작물공제
- 가. 공제책임기간이 해당 공시 전에 시작하여 해당 공시 시 아직 만료하지 아니한 공제 관계와 관련된 과수공제 또는 밭작물공제
- 나. 해당 공시 이전에 공제책임기간이 만료 한 공제관계와 관련된 과수공제 또는 밭작물 공제
- 5. 원예시설공제 또는 임의공제를 실시하는

組合にあつては、当該公示以前に共済事故が 発生した園芸施設共済又は任意共済に係る共 済目的についてその共済事故の発生の際存し た当該共済関係に係る園芸施設共済又は任意 共済

六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当該公示の際 現に行っている共済事業の残務

- 2 第百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公示があつた ときは、その公示の際現に当該公示に係る農 業共済組合とその組合員との間に存する家畜 共済、園芸施設共済又は任意共済の共済関係 は、消滅する。
- 3 前項の規定により家畜共済、園芸施設共済 又は任意共済の共済関係が消滅したときは、 当該農業共済組合は、これらの共済関係についてのまだ経過しない期間に対する共済掛金を払い戻さ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は、農業共済組合連合会又は政府は、これらの共済関係に係る保険関係又はその保険関係に係る再保険関係についてのまだ経過しない期間に対する保険料又は再保険料をそれぞれ当該農業共済組合又は当該農業共済組合連合会に払い戻さなければならない。
- 4 前項後段の規定により政府が払い戻すべき 家畜共済又は園芸施設共済に係る再保険料 は、農業共済組合連合会が払い込むべき家畜 共済又は園芸施設共済に係る再保険料で農林 水産省令で定めるものと相殺することができ る。
- 5 第一項の農業共済組合は、同項の規定により行う同項第一号に掲げる農作物共済に係る 共済目的又は同項の規定により行う同項第四

농업공제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공시 이전에 공제사고가 발생한 원예시설공제 또는 임의 공제와 관련된 공제 목적에 대하여 공제사고 의 발생 시 존재한 해당 공제관계와 관련된 원예시설공제 또는 임의공제

- 6. 전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해당 공시 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제사업의 잔무
- ② 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가 있는 때에는 공시 시 현재 해당 공시와 관련된 농업공제조합과 조합원 간에 존재하는 가축 공제, 원예시설공제 또는 임의공제의 공제관계는 소멸한다.
- 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공제, 원예시설 공제 또는 임의공제의 공제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해당 농업공제조합은 이러한 공제관계 와 관련된 아직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공제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 또는 정부는 이러한 공제관계와 관련된 보험관계 또는 보험관계와 관련된 재보험관계의 아직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 또는 재보험료를 각각 해당 농업공제조합 또는 해당 농업공제조합연합회에 환급하여야 한다.
- ④ 전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환급하여야 하는 가축공제 또는 원예시설공제와 관련된 재보험료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가 납입하여야 하는 가축공제 또는 원예시설공제와 관련된 재보험료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과 상계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농업공제조합은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같은 항 제1호에 열거하는 농작물공제와 관련된 공제 목적 또는 같

号イに掲げる果樹共済若しくは畑作物共済に 係る共済関係の全てについて共済責任期間が 満了した日として都道府県知事が認定する日 (第百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公示の際共済 責任期間の満了していない農作物共済又は果 樹共済若しくは畑作物共済に係る共済目的又 は共済関係の存しない農業共済組合にあつて は、当該公示の日)から起算して二月を経過 した時に解散する。

第百六条(政令への委任)

この法律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第百一条第 一項の申出、その申出に係る市町村の共済事 業の開始及びその申出に係る農業共済組合の 共済事業の結了に関し必要な事項は、政令で 定める。

第百七条(市町村による共済事業の実施区域 の特例)

第百二条第一項の認可を受けた市町村(以下「共済事業を行う市町村」という。)は、当該市町村の区域内の地域で農業共済組合の区域に属しないものが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地域を共済事業の実施区域に含めることを必要かつ適当と認めるときは、都道府県知事の認可を受け、当該地域においても、第九十七条第一項第一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共済事業を行うことができる。

2 市町村は、前項の認可を受けようとすると きは、共済事業の実施に関する条例の変更に 関する条例及び当該地域に係る共済事業の実 施計画を定め、これを申請書に添え、都道府 県知事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은 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같은 항 제4 호가목에 열거하는 과수공제나 밭작물공제와 관련된 공제관계 전부에 대하여 공제책임기 간이 만료한 날로서 도도부현지사가 인정하 는 날(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 시 공제책임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하는 농작물공 제 또는 과수공제나 밭작물공제와 관련된 공 제 목적 또는 공제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농업공제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공시일)부터 기산하여 2개월이 경과한 때에 해산한다.

제106조(정령에 대한 위임)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제101조제 1항의 신청, 신청과 관련된 시정촌의 공제사 업 개시 및 신청과 관련된 농업공제조합의 공제사업 종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 으로 정한다.

제107조(시정촌에 의한 공제사업의 실시구역 특례)

① 제102조제1항의 인가를 받은 시정촌(이하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시정촌"이라 한다)은 해당 시정촌의 구역 내 지역으로 농업공제조합의 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경우, 해당 지역을 공제사업의 실시구역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도부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당지역에서도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열거하는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정촌은 전항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조례의 변경에 관한 조례 및 해당 지역과 관련된 공제사업의 실시계획을 정하고,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도도부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都道府県知事は、前項の規定による申請書 の提出を受けたときは、これを受理した日か ら二月以内に、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 により、当該市町村に対し書面で認可又は不 認可の通知を発するとともに、認可処分に係 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旨を、新たに共済事 業の実施区域となる地域を明らかにして公示 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二項の規定による申請書の提出があつた場合には、第百二条第四項及び第五項の規定 を準用する。

第百八条(市町村による共済事業の実施)

共済事業を行う市町村については、第九十九 条第一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を準用する。 この場合において、必要な技術的読替えは、 政令で定める。

第百九条(市町村による共済事業に関する経 過措置)

共済事業を行う市町村は、前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九十九条第一項及び第四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共済事業の実施区域の全部又は一部をその区域とする農業共済組合が第百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行う同項第一号に掲げる共済事業の共済目的に係る農作物共済並びに当該農業共済組合が同項の規定により行う同項第四号イに掲げる共済事業の共済関係に係る果樹共済及び畑作物共済を行うことができない。

第百十条 (区分経理)

共済事業を行う市町村は、当該共済事業の経

③ 도도부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 서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이를 수리한 날부 터 2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정촌에 서면으로 인가 또 는 불인가의 통지를 발송하는 동시에 인가처 분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새롭게 공 제사업의 실시구역이 되는 지역을 밝혀 공시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제10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 정을 준용한다.

제108조(시정촌에 의한 공제사업의 실시)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시정촌에 대해서는 제 9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109호(시정촌에 의한 공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시정촌은 전조에서 준용하는 제9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불구하고, 공제사업의 실시구역의 전부 또는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는 농업공제조합이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같은항 제1호에 열거하는 공제사업의 공제 목적과 관련된 농작물공제, 해당 농업공제조합이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같은 항 제4호가목에 열거하는 공제사업의 공제관계와관련된 과수공제 및 밭작물공제를 할 수 있다.

제110조(구분경리)

①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시정촌은 해당 공제

理について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特別会計を設けてこれを行い、その経費は、当該共済事業による収入をもつて充てなければならない。

2 共済事業を行う市町村は、特別の事由により必要があるときは、予算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一般会計又は他の特別会計からの繰入金による収入をもつて当該共済事業の経費に充てることができる。

3 前項の規定による繰入金に相当する金額は、翌年度以降において、予算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繰入金を繰り入れた一般会計又は他の特別会計に繰り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一般会計又は他の特別会計において支出すべきものを当該共済事業の特別会計において支出したことによる繰入金その他特別の事由による繰入金については、議会の議決を経て、当該繰入金を繰り入れた一般会計又は他の特別会計に繰り入れないことができる。

4 共済事業を行う市町村の経理については、 第六十三条及び第六十四条の規定を準用す る。

第百十一条(市町村による共済事業の全部の 廃止)

共済事業を行う市町村は、都道府県知事の認可を受けて当該共済事業の全部を廃止することができる。

2 市町村は、前項の認可を受けようとすると きは、共済事業の実施に関する条例の廃止に 関する条例を定め、これを申請書に添え、都 사업의 경리에 대해서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를 두어 이를 실시하고, 경비는 해당 공제사업에 의한 수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

②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시정촌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이월금에 의한 수입으로써 해당 공제사업의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따른 이월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 이후,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월금을 이월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이월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지출하여야 하는 것을 해당 공제사업의 특별회계에서 지출한 것에 의한 이월금 및 그 밖에 특별한사유에 의한 이월금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이월금을 이월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이월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시정촌의 경리에 대해서는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1조(시정촌에 의한 공제사업의 전부 폐지)

①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시정촌은 도도부현 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당 공제사업의 전부를 폐지할 수 있다.

② 시정촌은 전항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조례의 폐지에관한 조례를 정하고,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

道府県知事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前項の規定による申請書の提出があつた場合には、第三十二条の規定を準用する。
- 4 市町村が共済事業の全部を廃止した場合には、第六十六条の規定を準用する。

第百十二条(共済事業の実施に関する条例の 変更)

共済事業を行う市町村は、共済事業の実施に関する条例の変更(共済事業の実施区域の拡張に係る変更を除く。)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都道府県知事の認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場合には、第三十一条及び第三十二 条の規定を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 三十一条中「定款等」とあるのは、「共済事 業の実施に関する条例の変更に関する条例」 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百十三条(市町村の廃置分合の場合の取扱い)

この法律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共済事業を 行う市町村につき廃置分合があつた場合にお ける当該廃置分合に係る市町村の行つていた 当該共済事業についての経過措置並びに当該 廃置分合後の市町村の当該廃置分合に係る地 域についての当該共済事業の開始当時におけ るその事業の種類及び共済目的の種類その他 当該共済事業の開始に関し必要な事項は、政 令で定める。

第百十四条 (業務の委託)

- 여 도도부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시정촌이 공제사업의 전부를 폐지한 경우에는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2조(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조례의 변경)

- ①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시정촌은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조례의 변경(공제사업 실시구역의 확장과 관련된 변경을 제외한다)을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도부현지사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 중 "정관등"은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조례의 변경에 관한 조례"로 대체한다.

제113조(시정촌 폐지·설치·분리·병합의 경우 의 취급)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시정촌과 관련하여 폐지·설치·분리· 병합이 있는 경우의 해당 폐지·설치·분리·병 합과 관련된 시정촌이 실시하고 있던 해당 공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해당 폐지·설치· 분리·병합 후 시정촌의 해당 폐지·설치·분리· 병합과 관련된 지역에 대한 해당 공제사업의 개시 당시에 사업의 종류 및 공제 목적의 종 류, 그 밖에 해당 공제사업의 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업무의 위탁)

組合等は、その行う共済事業に係る業務のうち、共済掛金の徴収に係るもの、損害防止のため必要な施設に係るものその他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ものを次に掲げる者に委託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農業協同組合又は農業協同組合連合会その 他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金融機関
- 二 その他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法人
- 2 前項第一号に掲げる者は、農業協同組合法 (昭和二十二年法律第百三十二号)第十条の 規定その他の法律の規定にかかわらず、同項 の規定による委託を受けて同項に規定する業 務を行うことができる。

第百十五条 (申込みに応ずる義務)

組合等は、その行う共済事業の共済関係の成立について組合員又は共済資格者から申込みを受けたときは、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いては、その承諾を拒んではならない。

第百十六条(共済掛金の支払)

組合員等は、組合等との間に共済関係が成立 したときは、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支払期限 までに、事業規程又は共済事業の実施に関す る条例(以下「事業規程等」という。)で定 めるところにより、共済掛金を組合等に支払 わなければならない。

第百十七条(共済事故としない旨の申出)

組合員等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組

- ① 조합 등은 실시하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 공제부금의 징수와 관련된 것, 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관련된 것 및 그 밖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다음 에 열거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1.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 및 그 밖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금융기 관
- 2. 그 밖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법인
- ② 전항 제1호에 열거하는 자는 「농업협동 조합법」(1947년 법률 제132호) 제10조의 규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을 받아 같은 항 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5조(신청에 응할 의무)

조합 등은 실시하는 공제사업의 공제관계 성립에 관하여 조합원 또는 공제자격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때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6조(공제부금의 지급)

조합원 등은 조합 등과의 사이에 공제관계가 성립된 때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지 급기한까지 사업규정 또는 공제사업의 실시 에 관한 조례(이하 "사업규정 등"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부금을 조합 등 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17조(공제사고로 하지 아니하는 사실의 신청)

① 조합원 등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合等に対し、第九十八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 共済事故の一部を共済事故としない旨の申出 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申出があつたときは、当該申出に係る共済事業の共済関係(家畜共済の共済関係にあつては、当該申出に係る共済掛金期間)においては、第九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同項各号に掲げる共済事故のうち当該申出に係るものを共済事故としないものとする。

3 組合等は、第一項の申出に係る共済関係については、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共済掛金を割り引く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十条第一項及び第二項、第十三条並びに第十四条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これらの規定中「基準共済掛金率」とあるのは、「基準共済掛金率を基礎として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算定される率」とする。

第百十八条 (事務費の賦課)

組合等は、事業規程等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第十九条の規定により国庫が負担する事務費以外の事務費を組合員等に賦課す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規定による賦課金の賦課について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る。
- 3 第百七十二条及び第百七十四条において準 用する前二項の規定により賦課される賦課金 の支払に充てる費用についても、前二項と同 様とする。

第百十九条(共済掛金等に関する権利の消滅

조합 등에 제98조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공제사고의 일부를 공제사고로 하지 아니하 는 사실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된 공제사업의 공제관계(가축공제의 공 제관계인 경우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된 공제 부금기간)에서는 제9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열거하는 공제사 고 중 해당 신청과 관련된 것을 공제사고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조합 등은 제1항의 신청과 관련된 공제 관계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부금을 할인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 중 "기준 공제부금률"은 "기준공제부금률을 기초로 농 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비율"로 한다.

제118조(사무비의 부과)

① 조합 등은 사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가 부담하는 사무비 이외의 사무비를 조합원 등에게 부과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에 대해서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제172조 및 제174조에서 준용하는 전2 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부과금의 지급에 충당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전2항과 같다.

제119조(공제부금 등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

時効)

共済掛金若しくは前条第一項若しくは第三項の規定による賦課金又はこれらに係る延滞金を徴収する権利、共済掛金の返還又は払戻しを受ける権利及び共済金の支払を受け、又はその返還を受ける権利は、これら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時から三年間行使しないときは、時効によつて消滅する。

第百二十条(共済掛金等の相殺の制限)

組合員等は、組合等に支払うべき共済掛金及 び第百十八条第一項又は第三項の規定による 賦課金について相殺をもつて当該組合等に対 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百二十一条 (共済金の額の下限)

組合等が組合員等に対して支払う共済金の額は、当該組合等が政府又は農業共済組合連合会から支払を受けた保険金の額を下回つてはならない。

第百二十二条(共済金額の削減)

共済金の支払に不足を生ずるときは、組合等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共済金額を 削減することができる。

第百二十三条(共済関係の存続)

組合等との間に共済事業の共済関係の存する 者が、住所を移転したこと(農業共済資格団 体にあつては、その構成員が住所を移転した こと)により組合員又は共済資格者でなくな 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者が当該共済関係を 存続させることについてその移転前に当該組 合等の承諾を受けていたときは、当該共済関

直)

공제부금 또는 전조 제1항이나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 또는 이와 관련된 연체금을 징수할 권리, 공제부금의 반환 또는 환급을 받을 권리 및 공제금의 지급을 받거나 반환을 받을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에의하여 소멸한다.

제120조(공제부금 등의 상계 제한)

조합원 등은 조합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공 제부금 및 제11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 에 따른 부과금에 관하여 상계로써 해당 조 합 등에 대항할 수 없다.

제121조(공제금액의 하한)

조합 등이 조합원 등에 지급하는 공제금액은 해당 조합 등이 정부 또는 농업공제조합연합 회로부터 지급을 받은 보험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제122조(공제금액의 삭감)

공제금의 지급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조합 등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액을 삭감할 수 있다.

제123조(공제관계의 존속)

① 조합 등과의 사이에 공제사업의 공제관계가 존재하는 자가 주소를 이전한 것(농업공제자격단체의 경우에는 구성원이 주소를 이전한 것)에 의하여 조합원 또는 공제자격자가 아니게 된 경우, 그 자가 해당 공제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에 대하여 이전 전에 해당조합 등의 승낙을 받은 때에는 해당 공제관

係は、なお存続するものとする。

2 組合等は、正当な理由がなければ、前項の 承諾を拒むことができない。

第百二十四条(共済関係に関する権利義務の 承継)

共済目的の譲受人(農業共済資格団体の構成 員が共済目的を譲り受けた場合にあつては、 当該農業共済資格団体)は、組合等の承諾を 受けて、共済関係に関し譲渡人(農業共済資 格団体の構成員が共済目的を譲り渡した場合 にあつては、当該農業共済資格団体)の有す る権利義務を承継することができる。

- 2 組合等は、正当な理由がなければ、前項の 承諾を拒むことができない。
- 3 共済目的について相続その他の包括承継があつた場合には、前二項の規定を準用する。

第百二十五条(通常すべき管理等の義務)

組合員等は、共済目的について通常すべき管理その他損害防止を怠つてはならない。

2 組合等は、前項の管理その他損害防止について組合員等を指導することができる。

第百二十六条(損害防止の処置の指示)

組合等は、組合員等に、損害防止のため特に 必要な処置をすべきことを指示することがで きる。この場合には、組合員等の負担した費 用は、当該組合等の負担とする。 계는 계속 존속한다.

② 조합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전항의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제124조(공제관계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

- ① 공제 목적의 양수인(농업공제자격단체의 구성원이 공제 목적을 양수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공제자격단체)은 조합 등의 승낙을 받아 공제관계에 관하여 양도인(농업공제자격단체 의 구성원이 공제 목적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공제자격단체)이 가진 권리를 승계 할 수 있다.
- ② 조합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전항의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 ③ 공제 목적에 대하여 상속 및 그 밖의 포 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5조(통상 하여야 하는 관리 등의 의무)

- ① 조합원 등은 공제 목적에 대하여 통상 하여야 하는 관리 및 그 밖에 손해방지를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조합 등은 전항의 관리 및 그 밖에 손해 방지에 관하여 조합원 등을 지도할 수 있다.

제126조(손해방지의 처치 지시)

조합 등은 조합원 등에게 손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처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는 조합원 등이 부담한 비용은 해당 조합 등의 부담으로 한다.

第百二十七条 (損害防止施設)

組合等は、事業規程等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損害防止のため必要な施設(次条第一項に規定する施設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百二十八条 (家畜診療施設)

組合等は、事業規程等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家畜共済に付した家畜の診療のため必要な施設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組合等は、その事業に支障がない場合に限 り、事業規程等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家畜 共済に付していない牛、馬又は豚につき前項 の施設を利用させることができる。

第百二十九条 (調查)

組合等は、損害の防止又は認定の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いつでも、共済目的のある土地 又は工作物に立ち入り、必要な事項を調査することができる。

第百三十条(通知義務)

組合員等は、次に掲げる場合は、事業規程等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遅滞なく、その旨を組合等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共済目的に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異動を生 じたとき。
- 二 共済事故が発生したとき。
- 三 共済金の支払を受けるべき損害があると認めるとき。

제127조(손해방지시설)

조합 등은 사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다음 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제128조(가축진료시설)

- ① 조합 등은 사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공제에 붙인 가축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다.
- ② 조합 등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 정하여 사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공제에 붙이지 아니한 소, 말 또는 돼지 에 대하여 전항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9조(조사)

조합 등은 손해의 방지 또는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공제 목적이 있는 토지 또는 인공구조물에 출입하여 필요한 사 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130조(통지의무)

조합원 등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사업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합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 1. 공제 목적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생긴 때
- 2. 공제사고가 발생한 때
- 3. 공제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손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第百三十一条 (損害認定)

組合等が支払うべき共済金に係る損害の額の 認定は、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基準に従つて 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組合等は、その支払うべき農作物共済、収穫共済又は畑作物共済の共済金に係る損害の額を認定するに当たつては、事業規程等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あらかじめ当該組合等の損害評価会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第百三十二条 (免責事由)

次の場合には、組合等は、共済金の全部又は 一部につき、支払の責任を免れることができ る。

- 一 組合員等が第百二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義務を怠つたとき。
- 二 組合員等が第百二十六条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かつたとき。
- 三 組合員等が第百三十条の規定による通知を 怠り、又は悪意若しくは重大な過失によつて 不実の通知をしたとき。

四 組合員等が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共済掛金の払込みを遅滞したとき。

五 第百三十五条、第百四十条第一項、第百四十七条、第百五十二条第一項又は第百五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込みをした組合員等が、当該申込みの際、当該申込みに係る農作物、家畜(当該申込みの際、現に飼養していたものに限る。)、果樹、蚕繭又は特定園芸施設(第九十八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共済目的とした附帯施設又は施設内農作物を含む。

제131조(손해인정)

① 조합 등이 지급하여야 하는 공제금과 관련된 손해액의 인정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조합 등은 지급하여야 하는 농작물공제, 수확공제 또는 밭작물공제의 공제금과 관련 된 손해액을 인정할 때에는 사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조합 등의 손해 평가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2조(면책사유)

- ①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 등은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책임을 면할 수있다.
- 1. 조합원 등이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한 때
- 2. 조합원 등이 제126조의 규정에 따른 지 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 3. 조합원 등이 제130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부실한 통지를 한 때
- 4. 조합원 등이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공 제부금의 납입을 지체한 때
- 5. 제135조, 제140조제1항, 제147조, 제152 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한 조합원 등이 해당 신청 시, 해당 신청과 관련된 농작물, 가축(해당 신청 시, 현재 사육하고 있던 것으로 한정한다), 과 수, 누에고치 또는 특정원예시설(제98조제4 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 목적으로 한 부대시 설 또는 시설 내 농작물을 포함한다. 이하

以下「特定園芸施設等」という。)に関する 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重要な事実又は事項に つき、悪意又は重大な過失によつてこれを通 知せず、又は不実の通知をしたとき(組合等 がこれを知つていたとき、及び過失によつて これを知らなかつたときを除く。)。

六 その他政令で定める事由があるとき。

2 組合等は、第百三十六条第一項、第百四十 八条第一項又は第百五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 より栽培方法に応ずる区分が定められた共済 目的の種類に係る農作物又は果樹につき、組 合員等がその栽培方法をこれらの規定により 定められた区分で当該農作物又は果樹に適用 されるものに係る栽培方法以外のものに変更 した場合には、その変更の結果通常生ずべき 損失の額については、当該組合員等に対して 共済金の支払の義務を有しない。

3 組合等は、その組合員等が植物防疫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百五十一号)の規定に違反した場合には、当該違反行為の結果通常生ずべき損失の額については、当該組合員等に対して共済金の支払の義務を有しない。

第百三十三条(協力依頼等)

組合等は、共済金額の決定又は支払うべき共済金に係る損害の額の認定に関し必要があるときは、組合員等からその生産した農産物の加工若しくは販売の委託を受け、若しくは当該農産物の売渡しを受けた者又は組合員等に資材の売渡しをした者に対し、当該委託又は売渡しに係る農産物又は資材の数量、品質又は価格に関する資料の提供につき、その協力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특정원예시설 등"이라 한다)에 관한 농림수 산성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실 또는 사항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통지 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통지를 한 때(조합 등이 이를 알고 있는 때 및 과실로 이를 알 지 못한 때를 제외한다)

6.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조합 등은 제136조제1항, 제148조제1항 또는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배방법 에 따른 구분이 정해진 공제 목적의 종류와 관련된 농작물 또는 과수에 관하여 조합원 등이 재배방법을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구분으로 해당 농작물 또는 과수에 적용되는 것과 관련된 재배방법 이외의 것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의 결과 통상 발생하는 손실액 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원 등에게 공제금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③ 조합 등은 조합원 등이 「식물방역법」 (1950년 법률 제15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결과, 통상 발생 할 손실액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원 등에게 공제금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33조(협력의뢰 등)

① 조합 등은 공제금액의 결정 또는 지급하여야 하는 공제금과 관련된 손해액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합원 등으로부터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 또는 판매의 위탁을 받거나 해당 농산물의 매도를 받은 자 또는 조합원 등에게 자재를 매도한 자에 대하여 해당 위탁 또는 매도와 관련된 농산물 또는 자재의 수량, 품질 또는 가격에 관한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2 行政庁は、組合等に対し、共済事業の効率的かつ円滑な実施に関し必要な情報の提供又は指導若しくは助言を行う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

第百三十四条 (準用)

組合等の共済事業には、保険法(平成二十年 法律第五十六号)第四条、第六条、第十一 条、第十七条第一項、第二十条、第二十五 条、第二十八条、第三十条、第三十一条第一 項及び第二項(第二号を除く。)並びに第三 十二条(第一号に係る部分に限る。)の規定 (これらの規定のほか、家畜共済にあつては 同法第十条、第十七条第二項及び第二十二条 の規定、園芸施設共済にあつては同法第十七 条第二項、第十八条第二項及び第二十二条の 規定、任意共済にあつては同法第九条、第十 条及び第十八条第二項の規定)を準用する。

第二款 農作物共済

第百三十五条 (共済関係の成立)

農作物共済の共済関係は、共済目的の種類ごと及び農作物の年産ごとに、農業共済組合の組合員若しくは第二十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全国連合会の組合員(第百四十六条及び第百六十三条第二項を除き、以下この節において「組合員」と総称する。)又は共済資格者が、事業規程等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組合員又は共済資格者が耕作を行う農作物共済の共済目的たる農作物(農作物共済の共済関係を成立させないことを相当とする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事由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の全てを農作物共済に付することを申し込み、組合等がこれを承諾することによつ

② 행정청은 조합 등에 공제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지도나 조언을 하도록 노력한다.

제134조(준용)

조합 등의 공제사업에는 「보험법」(2008년 법률 제56호) 제4조, 제6조, 제11조, 제17 조제1항, 제20조,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제1항 및 제2항(제2호를 제외한다), 제32조(제1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의 규정(이러한 규정 외에 가축공제의 경우 에는 같은 법 제10조, 제17조제2항 및 제22 조의 규정, 원예시설공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2조의 규정, 임의공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제2관 농작물공제

제135조(공제관계의 성립)

농작물공제의 공제관계는 공제 목적의 종류 별 및 농작물의 연간생산별로 농업공제조합 의 조합원이나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조합원(제146조 및 제163조제 2항을 제외하고, 이하 이 절에서 "조합원"이 라 총칭한다) 또는 공제자격자가 사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 또는 공제자격자가 경작하는 농작물공제의 공제 목적인 농작물(농작물공제의 공제관계를 성 립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한 농림수산성 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다)의 전부를 농작물공제에 붙이는 것을 신 청하고, 조합원 등이 이를 승낙하는 것에 의 []

て、成立するものとする。

第百三十六条 (共済金額)

農作物共済の共済金額は、共済目的の種類 (農林水産大臣が特定の共済目的の種類につ き品種、栽培方法等に応じて区分を定めたと きは、その共済目的の種類については、その 定めた区分。以下この款において同じ。)ご とに、次に掲げるいずれかの金額とする。

- 一 当該共済目的の種類に係る基準収穫量に農 林水産省令で定める割合を乗じて得た数量 に、単位当たり共済金額を乗じて得た金額
- 二 当該共済目的の種類に係る共済限度額を超 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 ところにより組合員又は共済資格者が申し出 た金額
- 2 前項第一号の基準収穫量は、組合員又は共 済資格者ごとに、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 ろにより組合等が定める数量とし、同号の単 位当たり共済金額は、共済目的の種類に係る 収穫物の単位当たり価格に相当する額を限度 として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組 合員又は共済資格者が申し出た金額とする。
- 3 第一項第二号の共済限度額は、基準生産金額に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割合を乗じて得た金額とする。
- 4 前項の基準生産金額は、組合員又は共済資格者ごとに、過去一定年間において収穫された共済目的の種類ごとの農作物の生産金額(当該農作物に係る収入金額で農林水産省令

하여 성립한다.

제136조(공제금액)

- ① 농작물공제의 공제금액은 공제 목적의 종류(농림수산대신이 특정 공제 목적의 종류에 대하여 품종, 재배방법 등에 따라 구분을 정한 때에는 공제 목적의 종류에 대해서는 정한 구분. 이하 이 관에서 같다)별로 다음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 1. 해당 공제 목적의 종류와 관련된 기준수 확량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 하여 얻은 수량에 단위당 공제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 2. 해당 공제 목적의 종류와 관련된 공제한 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농림 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또는 공제자격자가 신청한 금액
- ② 전항 제1호의 기준수확량은 조합원 또는 공제자격자별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등이 정하는 수량으로 하고, 같은 호의 단위당 공제금액은 공제 목적의 종류와 관련된 수확물의 단위당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또는 공제자격자가 신청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제1항제2호의 공제한도액은 기준생산금 액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 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 ④ 전항의 기준생산금액은 조합원 또는 공제 자격자별로 과거 일정 연간에 수확된 공제 목적의 종류별 농작물의 생산금액(해당 농작 물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농림수산성령으로

で定めるものを含む。第百三十八条第二項に おいて同じ。)を基礎として、農林水産省令 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組合等が定める金額と する。

第百三十七条 (共済掛金率)

農作物共済の共済掛金率は、共済目的の種類 その他の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共済関係の区 分(以下この条において「共済掛金区分」と いう。)ごと及び共済事故の発生状況その他 危険の程度を区分する要因となる事項に応じ て組合等が定める区分(以下この節において 「危険段階」という。)ごとに、基準共済掛 金率を下回らない範囲内において事業規程等 で定める。

- 2 前項の基準共済掛金率は、その率を危険段階ごとの共済金額の合計金額の見込額により加重平均して得た率が共済掛金標準率に一致するように、組合等が共済掛金区分ごと及び危険段階ごとに定める。
- 3 前項の共済掛金標準率は、共済掛金区分ご とに、過去一定年間における被害率を基礎と して、農林水産大臣が定める。
- 4 第二項の共済掛金標準率は、三年ごとに一般に改定する。

第百三十八条(共済金)

組合等は、第百三十六条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金額を共済金額とする農作物共済については、共済目的の種類ごとに、共済事故による農作物の減収量が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数量を超えた場合に、その超えた部分の数量に同号の単位当たり共済金額を乗じて得た金額を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138조제2항에서 같다)을 기초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조합 등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37조(공제부금률)

- ① 농작물공제의 공제부금률은 공제 목적의 종류 및 그 밖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공제관계의 구분(이하 이 조에서 "공제부금 구분"이라 한다)별 및 공제사고 발생 상황 및 그 밖에 위험의 정도를 구분하는 요인이되는 사항에 따라 조합 등이 정하는 구분(이하 이 절에서 "위험단계"라 한다)별로 기준 공제부금률 이상이 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규정 등으로 정한다.
- ② 전항의 기준공제부금률은 비율을 위험단계별 공제금액의 합계금액 예상액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얻은 비율이 공제부금표준율과일치하도록 조합 등이 공제부금 구분별 및위험단계별로 정한다.
- ③ 전항의 공제부금표준율은 공제부금 구분 별로 과거 일정 연간의 피해율을 기초로 농 림수산대신이 정한다.
- ④ 제2항의 공제부금표준율은 3년마다 일반적으로 개정한다.

제138조(공제금)

① 조합 등은 제136조제1항제1호에 열거하는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하는 농작물공제에 대해서는 공제 목적의 종류별로 공제사고에 의한 농작물의 수확감소량이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수량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부분의 수량에 같은 호의 단위당 공제금액을 곱

共済金として支払うものとする。

2 組合等は、第百三十六条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金額を共済金額とする農作物共済については、共済目的の種類ごとに、共済事故による農作物の減収又は品質の低下(これらのうち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ものに限る。)が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年産の農作物の生産金額が同号の共済限度額に達しないときに、当該共済限度額と当該生産金額との差額に、共済金額の共済限度額に対する割合を乗じて得た金額を共済金として支払うものとする。

3 第一項の減収量は、第百三十六条第一項第一号の基準収穫量及びその年産の農作物の収穫量を基礎として、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算定するものとする。

第百三十九条 (共済責任期間)

農作物共済の共済責任期間は、共済目的の種類たる農作物の移植期又は発芽期、共済事故の発生態様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て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基準に従い事業規程等で定める期間とする。

第三款 家畜共済

第百四十条 (共済関係の成立)

家畜共済の共済関係は、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家畜の区分ごとに、組合員又は共済資格者が、事業規程等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組合員又は共済資格者の飼養する当該区分に係る家畜共済の共済目的たる家畜(牛の胎児を含む。以下同じ。)を一体として死亡廃用共済又は疾病傷害共済に付することを申し込

하여 얻은 금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한다.

② 조합 등은 제136조제1항제2호에 열거하는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하는 농작물공제에 대해서는 공제 목적의 종류별로 공제사고에 의한 농작물의 수확감소 또는 품질의 저하(이들 중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 연간생산 농작물의 생산금액이 같은 호의 공제한도액에 이르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 공제한도액과 해당 생산금액의 차액에 공제금액의 공제한도액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수확감소량은 제136조제1항제1 호의 기준수확량 및 연간생산 농작물의 수확 량을 기초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산정한다.

제139조(공제책임기간)

농작물공제의 공제책임기간은 공제 목적의 종류 농작물의 이식기 또는 발아기, 공제사 고의 발생형태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관 가축공제

제140조(공제관계의 성립)

① 가축공제의 공제관계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구분별로 조합원 또는 공제자 격자가 사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 또는 공제자격자가 사육하는 해 당 구분과 관련된 가축공제의 공제 목적인 가축(소의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일체로서 폐사·폐용공제 또는 질병·상해공제 み、組合等がこれを承諾することによつて、 成立するものとする。

2 種雄牛、種雄馬その他の家畜であつて農林 水産省令で定めるものに係る家畜共済の共済 関係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家畜ごと に、組合員又は共済資格者が、事業規程等で 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組合員又は共済資 格者の飼養する家畜共済の共済目的たる家畜 を死亡廃用共済又は疾病傷害共済に付するこ とを申し込み、組合等がこれを承諾すること によつて、成立するものとする。

第百四十一条(共済関係の消滅)

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成立する家畜共済の 共済関係(以下「包括共済関係」という。) の成立の際、その成立により死亡廃用共済に 付されることとなつた家畜につき既に他の死 亡廃用共済の共済関係が存するときは、新た に成立する包括共済関係に係る共済責任の始 まる時に、既に存する死亡廃用共済の共済関 係は、消滅するものとする。

2 疾病傷害共済については、前項の規定を準用する。

第百四十二条(共済責任の開始日及び共済掛 金期間)

組合等の家畜共済に係る共済責任は、事業規程等に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いては、組合等が組合員等から共済掛金の支払(事業規程等で定めるところに従い共済掛金の分割支払がされ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第一回の支払)を受けた日の翌日から始まる。

에 붙이는 것을 신청하고, 조합 등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씨수소, 씨수말 및 그 밖의 가축으로 농립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련된 가축공제의 공제관계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별로 조합원 또는 공제자격자가 사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 또는 공제자격자가 사육하는 가축공제의 공제목적인 가축을 폐사·폐용공제 또는 질병·상해공제에 붙이는 것을 신청하고, 조합 등이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41조(공제관계의 소멸)

①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립되는 가축공제의 공제관계(이하 "포괄공제관계"라한다)의 성립 시, 성립에 따라 폐사·폐용공제에 붙여진 가축에 대하여 이미 다른 폐사·폐용공제의 공제관계가 존재하는 때에는 새롭게 성립된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된 공제책임이 시작하는 때에 이미 존재하는 폐사·폐용공제의 공제관계는 소멸한다.

② 질병·상해공제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2조(공제책임의 개시일 및 공제부금기 간)

① 조합 등의 가축공제와 관련된 공제책임은 사업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조합 등이 조합원 등으로부터 공제부 금의 지급(사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부금이 분할지급 되는 경우에는 제1 회 지급)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 다.

- 2 家畜共済に係る共済掛金期間は、一年(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家畜に係るものにあつては、一年未満で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期間)とする。ただし、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特別の事由があるときは、事業規程等で別段の定めをすることができる。
- 3 家畜共済に係る最初の共済掛金期間は、第 一項の規定により家畜共済に係る共済責任の 始まる時に開始する。

第百四十三条 (共済金額)

死亡廃用共済の共済金額は、共済掛金期間 (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家畜に係るものにあ つては、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飼養区分。次 項において同じ。)ごとに、共済価額を超え ない範囲内において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 ころにより組合員又は共済資格者が申し出た 金額とする。

- 2 疾病傷害共済の共済金額は、共済掛金期間 ごとに、支払限度額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 て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組合員 又は共済資格者が申し出た金額とする。
- 3 第一項の共済価額は死亡廃用共済の共済関係に係る家畜の価額を基礎として、前項の支払限度額は疾病傷害共済の共済関係に係る家畜の価額及び家畜の診療に要する標準的な費用を基礎として、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れぞれ組合等が定める金額とする。
- 4 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事由により包括共済 関係に係る家畜の価額の合計金額に変更が生 じたときは、共済掛金期間の中途において

- ② 가축공제와 관련된 공제부금기간은 1년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가축과 관련된 것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규정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가축공제와 관련된 최초의 공제부금기간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공제와 관련된 공제책임이 시작하는 때에 개시한다.

제143조(공제금액)

- ① 폐사·폐용공제의 공제금액은 공제부금기 간(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가축과 관련된 것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 육구분. 다음 항에서 같다)별로 공제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농림수산성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또는 공제 자격자가 신청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질병·상해공제의 공제금액은 공제부금기 간별로 지급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 내에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조합원 또는 공제자격자가 신청한 금액으 로 한다.
- ③ 제1항의 공제가액은 폐사·폐용공제의 공 제관계와 관련된 가축의 가액을 기초로 전항 의 지급한도액은 질병·상해공제의 공제관계 와 관련된 가축의 가액 및 가축의 진료에 소 요되는 표준적인 비용을 기초로 농림수산성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조합 등이 정 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④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된 가축 가액의 합계금 액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공제부금기간의 도

も、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死 亡廃用共済にあつては第一項の共済価額及び 共済金額を、疾病傷害共済にあつては第二項 の支払限度額及び共済金額を、それぞれ変更 するものとする。

第百四十四条 (共済掛金率)

死亡廃用共済の共済掛金率は、共済目的の種類(農林水産大臣が特定の共済目的の種類につき共済事故の発生態様の類似性を勘案して区分を定めたときは、その共済目的の種類については、その定めた区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ごと及び危険段階ごとに、基準共済掛金率を下回らない範囲内において事業規程等で定める。

- 2 疾病傷害共済の共済掛金率は、共済目的の 種類ごと及び危険段階ごとに、次に掲げる率 を合計して得た率とする。
- 一 疾病及び傷害による損害(次号に規定する 診療技術料等を除く。)に対応する基準共済 掛金率を下回らない範囲内において事業規程 等で定める率
- 二 診療技術料等(疾病及び傷害による損害の うち診療に要する費用で農林水産省令で定め るものをいう。)に対応する基準共済掛金率 を下回らず、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率を超え ない範囲内において事業規程等で定める率
- 3 前二項の基準共済掛金率は、その率を危険 段階ごとの共済金額の合計金額の見込額によ り加重平均して得た率が共済掛金標準率に一 致するように、死亡廃用共済にあつては共済 目的の種類ごと及び危険段階ごとに、疾病傷

중이라도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사·폐용공제의 경우에는 제1항의 공제가액 및 공제금액을, 질병·상해공제의 경우에는 제2항의 지급한도액 및 공제금액을 각각 변경한다.

제144조(공제부금률)

- ① 폐사·폐용공제의 공제부금률은 공제 목적의 종류(농림수산대신이 특정 공제 목적의 종류에 대하여 공제사고 발생형태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구분을 정한 때에는 공제 목적의 종류에 대해서는 정한 부분.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 및 위험단계별로 기준공제부금률 이상이 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규정 등에서 정한다.
- ② 질병·상해공제의 공제부금률은 공제 목적의 종류별 및 위험단계별로 다음에 열거하는 비율을 합계하여 얻은 비율로 한다.
- 1.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손해(다음 호에서 규정하는 진료기술료 등을 제외한다)에 대응하는 기준공제부금률 이상이 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규정 등에서 정하는 비율
- 2. 진료기술비 등(질병 및 상해에 의한 손해 중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에 대응하는 기준 공제부금률을 밑돌지 아니하고,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규정 등에서 정하는 비율
- ③ 전2항의 기준공제부금률은 비율을 위험 단계별 공제금액의 합계금액 예상액으로 가 중평균하여 얻은 비율이 공제부금표준율과 일치하도록 폐사·폐용공제의 경우에는 공제 목적의 종류별 및 위험단계별로, 질병·상해

害共済にあつては共済目的の種類ごと、前項 各号に規定する損害の区分ごと及び危険段階 ごとに、それぞれ組合等が定める。

4 前項の共済掛金標準率は、死亡廃用共済に あつては共済目的の種類ごとに、疾病傷害共 済にあつては共済目的の種類ごと及び第二項 各号に規定する損害の区分ごとに、それぞれ 過去一定年間における被害率を基礎として、 農林水産大臣が定める。

5 前項の共済掛金標準率は、三年ごとに一般に改定する。

第百四十五条 (共済金)

死亡廃用共済に係る共済金は、共済事故に係る家畜の価額を基礎として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算定された損害の額に、共済金額の共済価額に対する割合を乗じて得た金額とする。ただし、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死亡廃用共済の共済関係にあつては、農林水産大臣が定める金額を限度とする。

2 疾病傷害共済に係る共済金は、農林水産省 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共済事故によつて 組合員等が被る損害の額として算定された額 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前項ただし書 の規定を準用する。

第百四十六条(共済金の支払とみなされる場合)

疾病傷害共済に付した家畜につき共済事故が 発生した場合において、組合等又は都道府県 連合会が診療その他の行為をし、又はその費 用を負担したときは、当該組合等又は当該都 공제의 경우에는 공제 목적의 종류별, 전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손해의 구분별 및 위험 단계별로 각각 조합 등이 정한다.

④ 전항의 공제부금표준율은 폐사·폐용공제의 경우에는 공제 목적의 종류별로, 질병·상해공제의 경우에는 공제 목적의 종류별 및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손해의 구분별로 각각 과거 일정 연간의 피해율을 기초로 농림수산대신이 정한다.

⑤ 전항의 공제부금표준율은 3년마다 일반적으로 개정한다.

제145조(공제금)

① 폐사·폐용공제와 관련된 공제금은 공제사고와 관련된 가축의 가액을 기초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손해액에 공제금액의 공제가액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폐사·폐용공제의 공제관계인 경우에는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한다.

② 질병·상해공제와 관련된 공제금은 농림수 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고에 의 하여 조합원 등이 입는 손해액으로서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전항 단서의 규 정을 준용한다.

제146조(공제금의 지급으로 보는 경우)

질병·상해공제에 붙인 가축에 대하여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합 등 또는 도도부현 연합회가 진료 및 그 밖의 행위를 하거나 비용을 부담한 때에는 해당 조합 등 또는 해당

道府県連合会の組合員たる組合等は、当該診療その他の行為に要した費用の額の限度において共済金を支払つたものとみなす。

第四款 果樹共済

第百四十七条 (共済関係の成立)

果樹共済の共済関係は、収穫共済にあつては その共済目的の種類ごと及び果実の年産ご と、樹体共済にあつてはその共済目的の種類 ごと及び共済責任期間ごとに、組合員又は共 済資格者が、事業規程等で定めるところによ り、当該組合員又は共済資格者が現に栽培し ている収穫共済又は樹体共済の共済関係を成 立させないことを相当とする農林水産省令で 定める事由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の全て を収穫共済又は樹体共済に付することを申し 込み、組合等がこれを承諾することによつ て、成立するものとする。

第百四十八条 (共済金額)

収穫共済の共済金額は、収穫共済の共済目的 の種類(農林水産大臣が特定の共済目的の種類につき品種、栽培方法等に応じて区分を定めたときは、その共済目的の種類については、その定めた区分。以下この款において同じ。)ごとに、次に掲げるいずれかの金額とする。

一 当該収穫共済の共済目的の種類に係る標準 収穫量に果実の単位当たり価額を乗じて得た 金額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農林水産省令 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組合員又は共済資格者 が申し出た金額 도도부현 연합회의 조합원인 조합 등은 해당 진료 및 그 밖의 행위에 소요된 비용액의 한 도에서 공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4관 과수공제

제147조(공제관계의 성립)

과수공제의 공제관계는 수확공제의 경우에는 공제 목적의 종류별 및 과실의 연간생산별, 수체공제의 경우에는 공제 목적의 종류별 및 공제책임기간별로 조합원 또는 공제자격자가 사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 합원 또는 공제자격자가 현재 재배하고 있는 수확공제 또는 수체공제의 공제 목적인 과수 (수확공제 또는 수체공제의 공제관계를 성립 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한 농림수산성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다)의 전부를 수확공제 또는 수체공제에 붙 일 것을 신청하고, 조합 등이 이를 승낙함으 로써 성립한다.

제148조(공제금액)

① 수확공제의 공제금액은 수확공제의 공제 목적의 종류(농림수산대신이 특정 공제 목적 의 종류에 대하여 품종, 재배방법 등에 따라 구분을 정한 때에는 공제 목적의 종류에 대 해서는 정한 구분. 이하 이 관에서 같다)별 로 다음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수확공제의 공제 목적의 종류와 관련된 표준수확량에 과실의 단위당 가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조합원 또는 공제자격자가 신청한 금액

- 二 当該収穫共済の共済目的の種類に係る共済 限度額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農林水産省 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組合員又は共済資格 者が申し出た金額
- 2 前項第一号の標準収穫量は、組合員又は共 済資格者ごとに、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 ろにより組合等が定める数量とし、同号の果 実の単位当たり価額は、収穫共済の共済目的 の種類ごとに、過去一定年間における果実の 平均価格を基礎として、農林水産大臣が定め る金額とする。
- 3 第一項第二号の共済限度額は、基準生産金額に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割合を乗じて得た金額とする。
- 4 前項の基準生産金額は、組合員又は共済資格者ごとに、過去一定年間において収穫された収穫共済の共済目的の種類ごとの果実の生産金額(当該果実に係る収入金額で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ものを含む。第百五十条第二項において同じ。)を基礎として、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組合等が定める金額とする。
- 5 農林水産大臣が特定の収穫共済の共済目的の種類につきその細区分を定めたときは、当該収穫共済の共済目的の種類についての第一項第一号及び第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号中「収穫共済の共済目的の種類に係る標準収穫量に」とあるのは「収穫共済の共済目的の種類の細区分ごとの標準収穫量にそれぞれ当該細区分に係る」と、「得た金額」とあるのは「得た金額の合計金額」と、同項中「収穫共済の共済目的の種類の細区分」とす「収穫共済の共済目的の種類の細区分」とす

- 2. 해당 수확공제의 공제 목적의 종류와 관련된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또는 공제자격자가 신청한 금액
- ② 전항 제1호의 표준수확량은 조합원 또는 공제자격자별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조합 등이 정하는 수량으로 하고, 같은 호의 과실의 단위당 가액은 수확공제의 공제 목적의 종류별로 과거 일정 연간 과실 의 평균가격을 기초로 농림수산대신이 정하 는 금액으로 한다.
- ③ 제1항제2호의 공제한도액은 기준생산금 액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 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 ④ 전항의 기준생산금액은 조합원 또는 공제 자격자별로 과거 일정 연간 수확된 수확공제 공제 목적의 종류별 과실의 생산금액(해당 과실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농림수산성령으 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150조제2항에 서 같다)을 기초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등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⑤ 농림수산대신이 특정 수확공제의 공제 목적의 종류에 대하여 상세구분을 정한 때에는 수확공제의 공제 목적의 종류에 대한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같은 호 중 "수확공제의 공제 목적의 종류와 관련된 표준수확량에"는 "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의 세부구분별 표준수확량에 각각 해당 세부구분과 관련된"으로, "얻은 금액"은 "얻은 금액의 합계금액"으로, 같은 항중 "수확공제의 공제 목적의 종류"는 "수확공제의 공제 목적의 종류"는 "수확공제의 공제 목적의 종류"는 "수확공제의 공제 목적의 종류의 세부구분"으로

る。

6 樹体共済の共済金額は、樹体共済の共済目 的の種類(農林水産大臣が特定の共済目的の 種類につきその種類たる果樹の生育の程度に 応じて区分を定めたときは、その共済目的の 種類については、その定めた区分。以下この 款において同じ。)ごとに、共済価額を超え ない範囲内において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 ころにより組合員又は共済資格者が申し出た 金額とする。

7 前項の共済価額は、樹体共済の共済目的の 種類ごと及び組合員又は共済資格者ごとに、 樹体共済の共済関係に係る果樹及び支持物の 価額を基礎として、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 ころにより組合等が定める金額とする。

第百四十九条 (共済掛金率)

果樹共済の共済掛金率は、収穫共済にあつては収穫共済の共済目的の種類その他の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共済関係の区分(以下この条において「収穫共済掛金区分」という。)ごと及び危険段階ごとに、樹体共済にあつては樹体共済の共済目的の種類その他の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共済関係の区分(以下この条において「樹体共済掛金区分」という。)ごと及び危険段階ごとに、それぞれ基準共済掛金率を下回らない範囲内において事業規程等で定める。

2 前項の基準共済掛金率は、その率を危険段階ごとの共済金額の合計金額の見込額により加重平均して得た率が共済掛金標準率に一致するように、収穫共済にあつては収穫共済掛

한다.

⑥ 수체공제의 공제금액은 수체공제의 공제 목적의 종류(농림수산대신이 특정 공제 목적 의 종류에 대하여 그 종류인 과수의 생육정 도에 따라 구분을 정한 때에는 공제 목적의 종류에 대해서는 정한 구분. 이하 이 관에서 같다)별로 공제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 내에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또는 공제자격자가 신청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전항의 공제가액은 수체공제의 공제 목적의 종류별 및 조합원 또는 공제자격자별로수체공제의 공제관계와 관련된 과수 및 지지물의 가액을 기초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등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49조(공제부금률)

① 과수공제의 공제부금률은 수확공제의 경우에는 수확공제의 공제 목적의 종류 및 그밖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공제관계의구분(이하 이 조에서 "수확공제부금 구분"이라 한다)별 및 위험단계별로, 수체공제의 경우에는 수체공제의 공제 목적의 종류 및 그밖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공제관계의구분(이하 이 조에서 "수체공제부금 구분"이라 한다)별 및 위험단계별로 각각 기준공제부금률 이상이 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규정등을 정한다.

② 전항의 기준공제부금률은 비율을 위험단 계별 공제금액의 합계금액 예상액으로 가중 평균하여 얻은 비율이 공제부금표준율과 일 치하도록 수확공제의 경우에는 수확공제부금 []

金区分ごと及び危険段階ごとに、樹体共済に あつては樹体共済掛金区分ごと及び危険段階 ごとに、それぞれ組合等が定める。

3 前項の共済掛金標準率は、収穫共済にあつては収穫共済掛金区分ごとに、樹体共済にあっては樹体共済掛金区分ごとに、それぞれ過去一定年間における被害率を基礎として、農林水産大臣が定める。

4 第二項の共済掛金標準率は、三年ごとに一般に改定する。

第百五十条 (共済金)

組合等は、第百四十八条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金額を共済金額とする収穫共済については、収穫共済の共済目的の種類ごとに、共済事故による果実の減収量が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数量を超えた場合に、共済金額に、当該減収量の基準収穫量に対する割合に応じて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率を乗じて得た金額を共済金として支払うものとする。

2 組合等は、第百四十八条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金額を共済金額とする収穫共済については、収穫共済の共済目的の種類ごとに、共済事故による果実の減収又は品質の低下(これらのうち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ものに限る。)が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年産の果実の生産金額が同号の共済限度額に達しないときに、当該共済限度額と当該生産金額との差額に、共済金額の共済限度額に対する割合を乗じて得た金額を共済金として支払うものとする。

3 第一項の減収量は、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

구분별 및 위험단계별로, 수체공제의 경우에는 수체공제부금 구분별 및 위험단계별로 각각 조합 등이 정한다.

③ 전항의 공제부금표준율은 수확공제의 경우에는 수확공제부금 구분별로, 수체공제의 경우에는 수체공제부금 구분별로 각각 과거일정 연간 피해율을 기초로 농림수산대신이정한다.

④ 제2항의 공제부금표준율은 3년마다 일반 적으로 개정한다.

제150조(공제금)

① 조합 등은 제148조제1항제1호에 열거하는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하는 수확공제에 대해서는 수확공제의 공제 목적의 종류별로 공제사고에 의한 과실의 수확감소량이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수량을 초과한 경우, 공제금액에 해당 수확감소량의 기준수확량에 대한 비율에 따라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한다.

② 조합 등은 제148조제1항제2호에 열거하는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하는 수확공제에 대해서는 수확공제의 공제 목적의 종류별로 공제사고에 의한 과실의 수확감소 또는 품질의저하(이들 중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 연간생산 과실의생산금액이 같은 호의 공제한도액에 이르지아니한 때에 해당 공제한도액과 해당 생산금액의 차액을 공제금액의 공제한도액에 대한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하다.

③ 제1항의 수확감소량은 농림수산성령으로

ところにより算定するものとし、同項の基準 収穫量は、第百四十八条第一項第一号の標準 収穫量に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 一定の調整を加えて得た数量とする。

4 第百四十八条第五項の規定により細区分が 定められた収穫共済の共済目的の種類につい ての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 「果実の減収量」とあるのは「収穫共済の共 済目的の種類の細区分ごとの果実の減収量に それぞれ当該細区分に係る果実の単位当たり 価額を乗じて得た金額の合計金額」と、「数 量」とあるのは「金額」と、「減収量の基準 収穫量」とあるのは「合計金額の基準収穫金 額(当該細区分ごとの果実の基準収穫量にそ れぞれ当該細区分に係る果実の単位当たり価 額を乗じて得た金額の合計金額をいう。)」 とする。

5 組合等は、樹体共済については、樹体共済 の共済目的の種類ごとに、共済事故によつて 組合員等が被る損害の額が農林水産省令で定 める金額を超えた場合に、その損害の額に、 共済金額の共済価額に対する割合を乗じて得 た金額を共済金として支払うものとする。

6 前項の損害の額は、共済事故に係る果樹又 は支持物の価額で樹体共済の共済価額の算定 の基礎となつたものにより、農林水産省令で 定めるところにより、事業規程等で定める方 法によつて算定するものとする。

第百五十一条 (共済責任期間)

果樹共済の共済責任期間は、収穫共済にあつては第一号に掲げる期間、樹体共済にあつては第二号に掲げる期間とする。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고, 같은 항의 기준 수확량은 제148조제1항제1호의 표준수확량 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한 조정을 하여 얻은 수량으로 한다.

④ 제14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세부구분이 정해진 수확공제의 공제 목적의 종류에 대한 제1항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같은 항 중 "과실의 수확감소량"은 "수확공제의 공제 목 적의 종류의 세부구분별 과실의 수확감소량 에 각각 해당 세부구분과 관련된 과실의 단 위당 가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의 합계금액" 으로, "수량"은 "금액"으로, "수확감소량의 기 준수확률"은 "합계금액의 기준수확금액(해당 세부구분과 관련된 과실의 단위당 가액을 곱 하여 얻은 금액의 합계비율을 말한다)"으로 한다.

⑤ 조합 등은 수체공제에 대해서는 수체공제의 공제 목적의 종류별로 공제사고에 의하여조합원 등이 입을 손해액이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손해액에 공제금액의 공제가액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한다.

⑥ 전항의 손해액은 공제사고와 관련된 과수 또는 지지물의 가액에서 수체공제 공제가액 의 산정기초가 된 것에 의하여 농림수산성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규정 등에서 정 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151조(공제책임기간)

과수공제의 공제책임기간은 수확공제의 경우에는 제1호에 열거하는 기간, 수체공제의 경우에는 제2호에 열거하는 기간으로 한다.

- 一 共済目的の種類たる果樹の花芽の形成期、 共済事故の発生態様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て 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基準に従い事業規程等 で定める期間
- 二 共済目的の種類ごとに事業規程等で定める 日から一年間

第五款 畑作物共済

第百五十二条 (共済関係の成立)

畑作物共済の共済関係は、共済目的の種類ごと及び農作物又は蚕繭の年産ごとに、組合員又は共済資格者が、事業規程等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組合員又は共済資格者が栽培又は養蚕を行う畑作物共済の共済目的たる農作物又は蚕繭(畑作物共済の共済関係を成立させないことを相当とする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事由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の全てを畑作物共済に付することを申し込み、組合等がこれを承諾することによつて、成立するものとする。

2 組合等が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事業規程等で畑作物共済の共済目的たる農作物又は蚕繭につき共済目的の種類に応じて区分を定めた場合における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共済目的の種類ごと」とあるのは、「次項の規定により定められた区分ごと」とする。

第百五十三条(共済金額)

畑作物共済の共済金額は、共済目的の種類 (農林水産大臣が特定の共済目的の種類につ き品種、栽培方法、蚕期等に応じて区分を定 めたときは、その共済目的の種類について

- 1. 공제 목적의 종류 과수의 꽃눈 형성기, 공제사고의 발생형태 및 그 밖의 사정을 고 려하여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사업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간
- 2. 공제 목적의 종류별로 사업규정 등에서 정하는 날부터 1년간

제5관 받작물공제

제152조(공제관계의 성립)

- ① 발작물공제의 공제관계는 공제 목적의 종류별 및 농작물 또는 누에고치의 연간생산별로 조합원 또는 공제자격자가 사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 또는 공제자격자가 재배 또는 양잠을 하는 밭작물공제의 공제 목적인 농작물 또는 누에고치(밭작물공제의 공제관계를 성립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전부를 밭작물공제에 붙이는 것을 신청하고, 조합 등이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조합 등이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규정 등에서 밭작물공제의 공제 목적인 농작물 또는 누에고치에 대하여 공제목적의 종류에 따라 구분을 정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같은 항 중 "공제목적의 종류별"은 "다음 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구분별"로 한다.

제153조(공제금액)

① 발작물공제의 공제금액은 공제 목적의 종류(농림수산대신이 특정 공제 목적의 종류에 대하여 품종, 재배방법, 누에기 등에 따라 구분을 정한 때에는 공제 목적의 종류에 대

は、その定めた区分。以下この款において同 じ。)ごとに、次に掲げるいずれかの金額と する。

- 一 当該共済目的の種類に係る基準収穫量(蚕繭にあつては、基準収繭量)に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割合を乗じて得た数量に、単位当たり共済金額を乗じて得た金額
- 二 当該共済目的の種類に係る共済限度額を超 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 ところにより組合員又は共済資格者が申し出 た金額
- 2 前項第一号の基準収穫量及び基準収繭量は、組合員又は共済資格者ごとに、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組合等が定める数量とし、同号の単位当たり共済金額は、共済目的の種類に係る収穫物又は繭の単位当たり価格に相当する額を限度として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組合員又は共済資格者が申し出た金額とする。
- 3 第一項第二号の共済限度額は、基準生産金額に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割合を乗じて得た金額とする。
- 4 前項の基準生産金額は、組合員又は共済資格者ごとに、過去一定年間において収穫され、又は収繭された共済目的の種類ごとの農作物又は蚕繭の生産金額(当該農作物又は蚕繭に係る収入金額で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ものを含む。第百五十五条第二項において同じ。)を基礎として、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組合等が定める金額とする。

해서는 정한 구분. 이하 이 관에서 같다)별로 다음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 1. 해당 공제 목적의 종류와 관련된 기준수 확량(누에고치의 경우에는 기준고치따기량) 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얻은 수량에 단위당 공제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 2. 해당 공제 목적의 종류와 관련된 공제한 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농림 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또는 공제자격자가 신청한 금액
- ② 전항 제1호의 기준수확량 및 기준고치따 기량은 조합원 또는 공제자격자별로 농림수 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등이 정 하는 수량으로 하고, 같은 호의 단위당 공제 금액은 공제 목적의 종류와 관련된 수확물 또는 고치의 단위당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또는 공제자격자가 신청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제1항제2호의 공제한도액은 기준생산금 액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 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 ④ 전항의 기준생산금액은 조합원 또는 공제 자격자별로 과거 일정 연간에 수확되거나 고 치따기된 공제 목적의 종류별 농작물 또는 누에고치의 생산금액(해당 농작물 또는 누에 고치와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농림수산성령으 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155조제2항에 서 같다)을 기초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등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第百五十四条 (共済掛金率)

畑作物共済の共済掛金率は、共済目的の種類 その他の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共済関係の区 分(以下この条において「共済掛金区分」と いう。)ごと及び危険段階ごとに、基準共済 掛金率を下回らない範囲内において事業規程 等で定める。

- 2 前項の基準共済掛金率は、その率を危険段階ごとの共済金額の合計金額の見込額により加重平均して得た率が共済掛金標準率に一致するように、組合等が共済掛金区分ごと及び危険段階ごとに定める。
- 3 前項の共済掛金標準率は、共済掛金区分ご とに、過去一定年間における被害率を基礎と して、農林水産大臣が定める。
- 4 第二項の共済掛金標準率は、三年ごとに一般に改定する。

第百五十五条 (共済金)

組合等は、第百五十三条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金額を共済金額とする畑作物共済については、共済目的の種類ごとに、共済事故による農作物又は蚕繭の減収量が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数量を超えた場合に、その超えた部分の数量に同号の単位当たり共済金額を乗じて得た金額を共済金として支払うものとする。

2 組合等は、第百五十三条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金額を共済金額とする畑作物共済については、共済目的の種類ごとに、共済事故による農作物又は蚕繭の減収又は品質の低下(これらのうち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ものに限

제154조(공제부금률)

- ① 발작물공제의 공제부금률은 공제 목적의 종류 및 그 밖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공제관계의 구분(이하 이 조에서 "공제부금 구분"이라 한다)별 및 위험단계별로 기준공 제부금률 이상이 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규정 등에서 정한다.
- ② 전항의 기준공제부금률은 비율을 위험단계별 공제금액의 합계금액 예상액으로 가중평균하여 얻은 비율이 공제부금표준율과 일치하도록 조합 등이 공제부금 구분별 및 위험단계별로 정한다.
- ③ 전항의 공제부금표준율은 공제부금 구분 별로 과거 일정 연간에 피해율을 기초로 농 립수산대신이 정한다.
- ④ 제2항의 공제부금표준율은 3년마다 일반적으로 개정한다.

제155조(공제금)

- ① 조합 등은 제153조제1항제1호에 열거하는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하는 밭작물공제에 대해서는 공제 목적의 종류별로 공제사고에의한 농작물 또는 누에고치의 수확감소량이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수량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부분의 수량에 같은 호의 단위당공제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공제금으로지급한다.
- ② 조합 등은 제153조제1항제2호에 열거하는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하는 밭작물공제에 대해서는 공제 목적의 종류별로 공제사고에의한 농작물 또는 누에고치의 수확감소 또는 품질의 저하(이들 중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

る。)が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年産の農作物又は蚕繭の生産金額が同号の共済限度額に達しないときに、当該共済限度額と当該生産金額との差額に、共済金額の共済限度額に対する割合を乗じて得た金額を共済金として支払うものとする。

3 第一項の減収量は、第百五十三条第一項第一号の基準収穫量又は基準収繭量及びその年産の農作物の収穫量又は蚕繭の収繭量を基礎として、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算定するものとする。

第百五十六条 (共済責任期間)

畑作物共済の共済責任期間は、共済目的の種類たる農作物又は桑の発芽期、共済事故の発生態様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て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基準に従い事業規程等で定める期間とする。

第六款 園芸施設共済

第百五十七条 (共済関係の成立)

園芸施設共済の共済関係は、特定園芸施設ごとに、組合員又は共済資格者が、事業規程等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所有し、又は管理する特定園芸施設を組合等の園芸施設共済に付することを申し込み、組合等がこれを承諾することによつて、成立するものとする。

2 組合員又は共済資格者が特定園芸施設の所有者である場合における当該特定園芸施設についての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所有し、又は管理する特定園芸施設を」とあるのは、「所有する特定園芸施設(園芸施設共済の共済関係を成立させないことを相

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 연간생산 농작물 또는 누에고치의 생산금액이 같은 호 의 공제한도액에 이르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 공제한도액과 해당 생산금액의 차액에 공제 금액의 공제한도액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얻 은 금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수확감소량은 제153조제1항제1 호의 기준수확량 또는 기준고치따기량 및 연 간생산 농작물의 수확량 또는 누에고치의 고 치따기량을 기초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156조(공제책임기간)

밭작물공제의 공제책임기간은 공제 목적의 종류인 농작물 또는 뽕나무의 발아기, 공제 사고의 발생형태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 여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 업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관 워예시설공제

제157조(공제관계의 성립)

① 원예시설공제의 공제관계는 특정원예시설 별로 조합원 또는 공제자격자가 사업규정 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특정원예시설을 조합 등의 원예시설 공제에 붙일 것을 신청하고, 조합 등이 이를 승낙함 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합원 또는 공제자격자가 특정원예시설의 의 소유자인 경우에 해당 특정원예시설에 대한 전항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같은 항 중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특정원예시설을"은 "소유하는 특정원예시설(원예시설공제의 공제관계를 성립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한

当とする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事由に該当するもの及び園芸施設共済に付されたものを除 く。)の全てを」とする。

第百五十八条 (共済責任期間)

園芸施設共済の共済責任期間は、組合等が組合員等から共済掛金の支払(事業規程等で定めるところに従い共済掛金の分割支払がされ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第一回の支払)を受けた日の翌日から一年間とする。ただし、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特別の事由があるときは、事業規程等で別段の定め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百五十九条 (共済金額)

園芸施設共済の共済金額は、特定園芸施設等 ごとに、共済価額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 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組合員又 は共済資格者が申し出た金額とする。

2 前項の共済価額は、当該園芸施設共済の共 済関係に係る特定園芸施設及び附帯施設の価 額を基礎とし、当該園芸施設共済の共済関係 に係る施設内農作物の生産費を勘案して、農 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組合等が定 める金額とする。

第百六十条(共済掛金率)

園芸施設共済の共済掛金率は、特定園芸施設の種類その他の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共済関係の区分(以下この条において「共済掛金区分」という。)ごと及び危険段階ごとに、基準共済掛金率を下回らない範囲内において事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 및 원예시설공제에 붙여진 것을 제외한 다) 전부를"로 한다.

제158조(공제책임기간)

원예시설공제의 공제책임기간은 조합 등이 조합원 등으로부터 공제부금을 지급(사업규 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부금이 분 할지급 되는 경우에는 제1회의 지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농림 수산성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사업규정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9조(공제금액)

① 원예시설공제의 공제금액은 특정원예시설 등 별로 공제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또는 공제자격자가 신청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전항의 공제가액은 해당 원예시설공제의 공제관계와 관련된 특정원예시설 및 부대시 설의 가액을 기초로 하고, 해당 원예시설공 제의 공제관계와 관련된 시설 내 농작물의 생산비를 감안하여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등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60조(공제부금률)

① 원예시설공제의 공제부금률은 특정원예시설의 종류 및 그 밖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공제관계의 구분(이하 이 조에서 "공제부금 구분"이라 한다)별 및 위험단계별로 기준공제부금률 이상이 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

業規程等で定める。

- 2 前項の基準共済掛金率は、その率を危険段階ごとの共済金額の合計金額の見込額により加重平均して得た率が共済掛金標準率に一致するように、組合等が共済掛金区分ごと及び危険段階ごとに定める。
- 3 前項の共済掛金標準率は、共済掛金区分ご とに、過去一定年間における被害率を基礎と して、農林水産大臣が定める。
- 4 第二項の共済掛金標準率は、三年ごとに一般に改定する。

第百六十一条 (共済金)

組合等は、園芸施設共済については、特定園芸施設等ごとに、共済事故によつて組合員等が被る損害の額が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金額を超えた場合に、その損害の額に、共済金額の共済価額に対する割合を乗じて得た金額を共済金として支払うものとする。

2 前項の損害の額は、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事業規程等で定める方法によって算定するものとする。

第七款 任意共済

第百六十二条 (共済金額の最高額の制限)

農林水産大臣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任意共済の共済金額について、その最高額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は、任意共済の共済金額は、当該金額を超えてはならない。

규정 등에서 정한다.

- ② 전항의 기준공제부금률은 비율을 위험단 계별 공제금액의 합계금액 예상액으로 가중 평균하여 얻은 비율이 공제부금표준율과 일 치하도록 조합 등이 공제부금 구분별 및 위 험단계별로 정한다.
- ③ 전항의 공제부금표준율은 공제부금 구분 별로 과거 일정 연간의 피해율을 기초로 농 립수산대신이 정한다.
- ④ 제2항의 공제부금표준율은 3년마다 일반적으로 개정한다.

제161조(공제금)

- ① 조합 등은 원예시설공제에 대해서는 특정 원예시설 등 별로 공제사고에 의하여 조합원 등이 입는 손해액이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 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손해액에 공제금액 의 공제가액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 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한다.
- ② 전항의 손해액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7관 임의공제

제162조(공제금액의 최고액 제한)

농림수산대신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의공제의 공제금액에 대하여 최고액을 정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임의공제의 공제금 액은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百六十三条(共済金を交付する事業)

特定組合は、第九十九条第一項又は第六項の 規定により行う共済事業のほか、総会の議決 を経て、当該特定組合の区域内に住所を有す る農業協同組合又は農業協同組合連合会から 共済掛金の支払を受け、第九十八条第五項に 規定する損害と同種の損害について、共済金 を交付する事業を行うことができる。

- 2 都道府県連合会は、総会の議決を経て、その組合員たる農業共済組合、その組合員たる 共済事業を行う市町村に係る共済資格者又は 当該都道府県連合会の区域内に住所を有する 農業協同組合若しくは農業協同組合連合会か ら共済掛金の支払を受け、第九十八条第五項 に規定する損害と同種の損害について、共済 金を交付する事業を行うことができる。
- 3 全国連合会は、第百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により行う共済事業のほか、総会の議決を経て、特定区域内に住所を有する農業協同組合又は農業協同組合連合会から共済掛金の支払を受け、第九十八条第五項に規定する損害と同種の損害について、共済金を交付する事業を行うことができる。
- 4 前三項の規定による事業には、第百十五条 並びに保険法第四条、第六条、第九条から第 十一条まで、第十七条第一項、第十八条第二 項、第二十条、第二十五条、第二十八条、第 三十条、第三十一条第一項及び第二項(第二 号を除く。)並びに第三十二条(第一号に係

제163조(공제금을 교부하는 사업)

- ① 특정조합은 제99조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공제사업 외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특정조합의 구역 내에 주소를 두는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 연합회로부터 공제부금을 지급받고, 제98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손해와 같은 종류의 손해에 대하여 공제금을 교부하는 사업을 할수 있다.
- ② 도도부현 연합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인 농업공제조합, 조합원인 공제사업 을 실시하는 시정촌과 관련된 공제자격자 또 는 해당 도도부현 연합회의 구역 내에 주소 를 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연합 회로부터 공제부금을 지급받고, 제98조제5 항에서 규정하는 손해와 같은 종류의 손해에 대하여 공제금을 교부하는 사업을 할 수 있 다.
- ③ 전국연합회는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공제사업 외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구역 내에 주소를 두는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로부터 공제부금을 지급받고, 제98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손해와 같은 종류의 손해에 대하여 공제금을 교부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④ 전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는 제115조 및 「보험법」 제4조, 제6조, 제9조부터 제 11조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20 조,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제1항 및 제2항(제2호를 제외한다), 제32조(제1호 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규정을 준

る部分に限る。)の規定を準用する。

第二節 農業共済責任保険事業

第百六十四条(都道府県連合会の保険事業)

都道府県連合会は、その組合員たる組合等が 第九十七条第一項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 共済事業によつてその組合員等に対して負う 共済責任を相互に保険する事業を行う。

2 都道府県連合会は、前項の規定による事業のほか、その組合員たる組合等が第九十七条第一項第三号から第六号までに掲げる共済事業によつてその組合員等に対して負う共済責任を相互に保険する事業を行うことができる。

第百六十五条 (保険関係の成立)

都道府県連合会の組合員たる組合等とその組合員等との間に共済事業の共済関係が存する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都道府県連合会と当該組合等との間に、当該共済事業に係る保険事業の保険関係が存するものとする。

第百六十六条 (保険金額等)

前条の保険関係に係る保険金額、保険料及び 保険金に関し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

第百六十七条(保険金の支払とみなされる場 合)

都道府県連合会の組合員たる組合等の疾病傷 害共済に付された家畜につき共済事故が発生 した場合において、都道府県連合会が診療そ 용한다.

제2절 농업공제책임보험사업 제164조(도도부현 연합회의 보험사업)

- ① 도도부현 연합회는 조합원인 조합 등이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하는 공 제사업에 의하여 조합원 등에 대하여 지는 공제책임을 상호 보험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 ② 도도부현 연합회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외에 조합원인 조합 등이 제97조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열거하는 공제사업 에 의하여 조합원 등에 대하여 지는 공제책 임을 상호 보험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5조(보험관계의 성립)

도도부현 연합회의 조합원인 조합 등과 조합 원 등 간에 공제사업의 공제관계가 존재하는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 도부현 연합회와 해당 조합 등 간에 해당 공 제사업과 관련된 보험사업의 보험관계가 존 재하는 것으로 본다.

제166조(보험금액 등)

전조의 보험관계와 관련된 보험금액, 보험료 및 보험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167조(보험금의 지급으로 보는 경우)

도도부현 연합회의 조합원인 조합 등의 질병 ·상해공제에 붙여진 가축에 대하여 공제사고 가 발생한 경우, 도도부현 연합회가 진료 및 の他の行為をし、又はその費用を負担したと きは、当該都道府県連合会は、当該診療その 他の行為に要した費用の額の限度において保 険金を当該組合等に支払つたものとみなす。

第百六十八条(通知義務)

都道府県連合会の組合員は、農林水産省令で 定めるところにより、定期に、都道府県連合 会に対し、当該組合員たる組合等とその組合 員等との間に存する共済関係に関し必要な事 項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り通知した事項に変更を生 じたときは、都道府県連合会の組合員は、農 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遅滞な く、その旨を都道府県連合会に通知しなけれ ばならない。

第百六十九条 (損害防止の指導)

都道府県連合会の組合員は、第百二十五条第 一項の管理その他損害防止について指導しな ければならない。

第百七十条(免責事由)

次の場合には、都道府県連合会は、保険金の 全部又は一部につき、その支払の責任を免れ ることができる。

- 一 組合員が法令又は事業規程等に違反して共済金を支払つたとき。
- 二 組合員が損害額を不当に認定して共済金を 支払つたとき。
- 三 組合員が事業規程等に違反して共済関係を成立させ、又は消滅させなかつたとき。

그 밖의 행위를 하거나 비용을 부담한 때에는 해당 도도부현 연합회는 해당 진료 및 그밖의 행위에 소요된 비용액의 한도에서 보험금을 해당 조합 등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68조(통지의무)

① 도도부현 연합회의 조합원은 농림수산성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도도부 현 연합회에 해당 조합원인 조합 등과 조합 원 등 간에 존재하는 공제관계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도도부현 연합회의 조합원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도도부현 연합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9조(손해방지의 지도)

도도부현 연합회의 조합원은 제125조제1항의 관리 및 그 밖에 손해방지에 관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제170조(면책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도도부현 연합회는 보험금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책임을 면 할 수 있다.

- 1. 조합원이 법령 또는 사업규정 등을 위반 하여 공제금을 지급한 때
- 2. 조합원이 손해액을 부당하게 인정하여 공 제금을 지급한 때
- 3. 조합원이 사업규정 등을 위반하여 공제관 계를 성립시키거나 소멸시키지 아니한 때

四 組合員が第百六十八条の規定による通知を 怠り、又は悪意若しくは重大な過失によつて 不実の通知をしたとき。

五 組合員が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保険料の払込みを遅滞したとき。

六 組合員が前条の規定による指導を怠つたとき。

七 組合員が第百七十二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百二十六条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かつたとき。

八 組合員が第百七十二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 百三十条(第一号を除く。)の規定による通 知を怠り、又は悪意若しくは重大な過失によ つて不実の通知をしたとき。

第百七十一条(審査の申立て)

都道府県連合会の組合員は、保険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不服があるときは、都道府県農業 共済保険審査会に審査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審査の申立ては、時効の完成猶予及 び更新に関しては、これを裁判上の請求とみなす。

第百七十二条(準用)

都道府県連合会の保険事業には、第百十八条 第一項及び第二項、第百十九条から第百二十 一条まで、第百二十六条から第百二十九条ま で、第百三十条(第一号を除く。)、第百三 十一条並びに第百三十二条第三項並びに保険 法第六条及び第十一条の規定を準用する。

- 4. 조합원이 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 한 통지를 한 때
- 5.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보험료 의 납입을 지체한 때
- 6. 조합원이 전조의 규정에 따른 지도를 게 을리한 때
- 7. 조합원이 제172조에서 준용하는 제126조의 규정에 따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 8. 조합원이 제172조에서 준용하는 제130조 (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 한 통지를 한 때

제171조(심사의 신청)

- ① 도도부현 연합회의 조합원은 보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도도부현 농업공제보험심사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 다.
- ② 전항의 심사신청은 시효의 완성유예 및 갱신에 관해서는 이를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172조(준용)

도도부현 연합회의 보험사업에는 제118조제 1항 및 제2항,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0조(제1호 를 제외한다), 제131조, 제132조제3항과 「보험법」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第百七十三条(全国連合会の保険事業等)

全国連合会は、次に掲げる事業を行うことができる。

- 一 特定組合が第九十七条第一項第六号に掲げ る共済事業によつてその組合員に対して負う 共済責任を相互に保険する事業
- 二 特定組合が第百六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事業によつて同項の農業協同組合又は農業協同組合連合会に対して負う共済責任を相互に保険する事業
- 三 都道府県連合会が第百六十三条第二項の規 定による事業によつて同項の農業共済組合、 共済資格者又は農業協同組合若しくは農業協 同組合連合会に対して負う共済責任を相互に 保険する事業

四 都道府県連合会が第九十七条第一項第六号 に掲げる共済事業に係る保険事業によつてそ の組合員たる農業共済組合に対して負う保険 責任を相互に再保険する事業

第百七十四条(準用)

前条各号に掲げる事業には、第百十八条第一項及び第二項、第百十九条、第百二十条、第百二十七条、第百二十九条、第百三十十条(第一号を除く。)、第百三十一条第一項、第百三十二条第三項並びに第百六十八条から第百七十条まで並びに保険法第六条及び第十一条の規定を準用する。

第四章 農業経営収入保険事業

第百七十五条 (農業経営収入保険事業)

제173조(전국연합회의 보험사업 등)

전국연합회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1. 특정조합이 제97조제1항제6호에 열거하는 공제사업에 의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지는 공제책임을 상호 보험하는 사업
- 2. 특정조합이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의하여 같은 항의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지는 공제책임 을 상호 보험하는 사업
- 3. 도도부현 연합회가 제1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의하여 같은 항의 농업공제조합, 공제자격자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지는 공제책임을 상호 보험하는 사업
- 4. 도도부현 연합회가 제97조제1항제6호에 열거하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보험사업에 의 하여 조합원인 농업공제조합에 대하여 지는 보험책임을 상호 재보험하는 사업

제174조(준용)

전조 각 호에 열거하는 사업에는 제118조제 1항 및 제2항, 제119조, 제120조, 제126조, 제127조, 제129조, 제130조(제1호를 제외한다), 제131조제1항, 제132조제3항, 제168조부터 제170조까지, 「보험법」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농업경영수입보험사업

제175조(농업경영수입보험사업)

全国連合会は、農業経営収入保険事業を行うことができる。

- 2 農業経営収入保険事業は、次に掲げる事業とする。
- 一 被保険者の農業収入の減少について、当該 被保険者に対し保険金(第百八十二条第一項 の特約をした場合にあつては、同項第二号の 特約補塡金を含む。次号及び第百八十六条に おいて同じ。)を交付する事業
- 二 前号に掲げる事業の被保険者で保険金の支 払が見込まれるものに対し、その見込額の範 囲内で、当該被保険者の農業経営の安定に必 要な資金を貸し付ける事業

第百七十六条 (保険資格者)

全国連合会との間に農業経営収入保険の保険 関係を成立させることができる者は、農業を 営む者であつて、次に掲げる要件のいずれか を満たすもの(以下「保険資格者」とい う。)とする。

- 一 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期間を通じて所得税 法(昭和四十年法律第三十三号)第二条第一 項第四十号に規定する青色申告書である同項 第三十七号に規定する確定申告書を提出する 個人(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基準に従い、農 業の経営管理の合理化を図る上で必要な措置 を講じている者に限る。)であること。
- 二 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期間を通じて法人税 法 (昭和四十年法律第三十四号) 第二条第三 十七号に規定する青色申告書である同条第三 十一号に規定する確定申告書を提出する法人

- ① 전국연합회는 농업경영수입보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농업경영수입보험사업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으로 한다.
- 1. 피보험자의 농업수입 감소와 관련하여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제182조제1항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특약보전금을 포함한다. 다음 호 및 제186조에서 같다)을 교부하는 사업
- 2. 전호에 열거하는 사업의 피보험자로 보험 금의 지급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 예상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피보험자의 농업경영 안정 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 사업

제176조(보험자격자)

- ① 전국연합회와의 사이에서 농업경영수입보 험의 보험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는 자는 농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 이 충족된 자(이하 "보험자격자"라 한다)로 한다
- 1.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통하여 「소득세법」(1965년 법률 제33호) 제2조 제1항제40호에서 규정하는 청색신고서인 같은 항 제37호에서 규정하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개인(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업경영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일 것
- 2.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통하여 「법인세법」(1965년 법률 제34호) 제2조 제37호에서 규정하는 청색신고서인 같은 조 제31호에서 규정하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하

(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基準に従い、農業の経営管理の合理化を図る上で必要な措置を講じている者に限る。) であること。

三 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期間を通じて法人税 法第二条第三十二号に規定する連結確定申告 書を提出する同条第十二号の六の七に規定す る連結親法人(当該連結親法人による同条第 十二号の七の七に規定する連結完全支配関係 にある同条第十二号の七に規定する連結子法 人を含み、これらのうち農林水産省令で定め る基準に従い、農業の経営管理の合理化を図 る上で必要な措置を講じている者に限る。) であること。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保険期間において、組合等との間に、第九十七条第一項第一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共済事業(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の共済関係の存する者その他農業収入の減少について補塡を行う事業であつて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ものを利用する者は、保険資格者に該当しないものとする。

第百七十七条(保険関係の成立)

農業経営収入保険の保険関係は、保険期間ごとに、保険資格者が、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保険関係の成立について申し込み、全国連合会がこれを承諾することによつて、成立するものとする。

2 全国連合会は、前項の規定による申込みを 受けたときは、当該申込みをした者が第百八 十七条において準用する保険法第三十条の規 는 법인(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업경영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일 것

3.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통하여 「법인세법」 제2조제32호에서 규정하는 연결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같은 조 제12호의 6의7에서 규정하는 연결모법인(해당 연결모법인에 의한 같은 조 제12조의7의7에서 규정하는 연결완전지배관계에 있는 같은 조 제12호의7에서 규정하는 연결자법인을 포함하고, 이들 중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업경영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일 것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에 조합 등 과의 사이에서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열거하는 공제사업(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공제관계가 존재하는 자 및 그 밖에 농업수입의 감소에 대하여 보전을 하는 사업으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이용하는 자는 보험자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77조(보험관계의 성립)

① 농업경영수입보험의 보험관계는 보험기간 별로 보험자격자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험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신청하고, 전국연합회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전국연합회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신청을 한 자가 제187조 에서 준용하는 「보험법」 제30조의 규정에 定により農業経営収入保険の保険関係を解除 されたことがある者である場合その他の農林 水産省令で定める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 いては、その承諾を拒んではならない。

第百七十八条 (保険料の支払)

被保険者は、全国連合会との間に保険関係が成立したときは、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支払期限までに、事業規程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保険料を全国連合会に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第百七十九条 (保険金額)

農業経営収入保険の保険金額は、保険限度額 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農林水産省令で定 めるところにより保険資格者が申し出た金額 とする。

- 2 前項の保険限度額は、基準収入金額に農林 水産省令で定める割合を乗じて得た金額とす る。
- 3 前項の基準収入金額は、保険資格者の農林 水産省令で定める期間における農業収入金額 及び保険期間中に見込まれる農業収入金額を 基礎として、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 より全国連合会が定める金額とする。
- 4 前項の農業収入金額(以下「農業収入金額」という。)は、対象農産物等(農作物、家畜及び農産物並びに農産物に簡易な加工を施したものとして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ものをいい、他の農業者が生産したものその他の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以下同じ。)に係る収入金額として農林水産省令で

따라 농업경영수입보험의 보험관계가 해제된 적이 있는 자인 경우 및 그 밖의 농림수산성 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8조(보험료의 지급)

피보험자는 전국연합회와의 사이에서 보험관계가 성립한 때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지급기한까지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보험료를 전국연합회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79조(보험금액)

- ① 농업경영수입보험의 보험금액은 보험한도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농림수 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격자가 신청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전항의 보험한도액은 기준수입금액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 ③ 전항의 기준수입금액은 보험자격자의 농 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농업수입금액 및 보험기간 중에 예상되는 농업수입금액을 기초로 하여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연합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④ 전항의 농업수입금액(이하 "농업수입금액"이라 한다)은 대상농산물 등(농작물, 가축 및 농산물과 농산물에 간단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다른 농업인이 생산한 것 및 그 밖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定めるところにより算出した金額とする。

5 被保険者が生産する対象農産物等の種類の変更その他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事由がある場合は、保険期間の中途においても、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第一項の保険限度額及び保険金額を変更するものとする。

第百八十条 (保険料率)

農業経営収入保険の保険料率は、保険事故の 発生状況その他危険の程度を区分する要因と なる事項に応じて全国連合会が定める区分 (次項において「危険段階」という。)ごと に、基準保険料率を下回らない範囲内におい て事業規程で定める。

- 2 前項の基準保険料率は、その率を危険段階 ごとの保険金額の合計金額の見込額により加 重平均して得た率が保険料標準率に一致する ように、全国連合会が危険段階ごとに定め る。
- 3 前項の保険料標準率は、過去一定年間における被害率を基礎として、農林水産大臣が定める。
- 4 第二項の保険料標準率は、三年ごとに一般に改定する。

第百八十一条 (保険金)

全国連合会は、被保険者の保険期間中の農業 収入金額が第百七十九条第一項の保険限度額 に達しないときに、当該保険限度額と当該農 業収入金額との差額に、保険金額の保険限度 額に対する割合を乗じて得た金額を保険金と して支払うものとする。 한다.

⑤ 피보험자가 생산한 대상농산물 등의 종류 변경 및 그 밖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의 도중이라 도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 항의 보험한도액 및 보험금액을 변경한다.

제180조(보험요율)

- ① 농업경영수입보험의 보험요율은 보험사고의 발생 상황 및 그 밖에 위험의 정도를 구분하는 요인이 되는 사항에 따라 전국연합회가 정하는 구분(다음 항에서 "위험단계"라한다)별로 기준보험요율 이상이 되는 범위내에서 사업규정에서 정한다.
- ② 전항의 기준보험요율은 비율을 위험단계 별 보험금액의 합계금액 예상액으로 가중평 균하여 얻은 비율이 보험료표준율과 일치하 도록 전국연합회가 위험단계별로 정한다.
- ③ 전항의 보험료표준율은 과거 일정 연간의 피해율을 기초로 농림수산대신이 정한다.
- ④ 제2항의 보험료표준율은 3년마다 일반적으로 개정한다.

제181조(보험금)

전국연합회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 중에 농업수입금액이 제179조제1항의 보험한도액에 이르지 아니하는 때, 해당 보험한도액과 해당 농업수입금액의 차액에 보험금액의 보험한도액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第百八十二条(特約)

農業経営収入保険の保険関係が成立する場合には、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 これと併せて次に掲げる内容の特約を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被保険者が、農業収入の減少がその農業経 営に及ぼす影響を緩和するための積立金を全 国連合会に積み立てるものであること。
- 二 全国連合会が、被保険者の保険期間中の農業収入金額が補塡限度額に達しないときに、 当該被保険者に対し、特約補塡金を支払うも のであること。
- 三 全国連合会が、保険期間の満了後、第一号の積立金(以下この条において「積立金」という。)の額に残余があるときは、その残余の額を当該被保険者に払い戻すものであること。
- 2 積立金は、その額、その積立ての方法その 他の事項が、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基準に適 合するものとする。
- 3 第一項第二号の補塡限度額(次項において 「補塡限度額」という。)は、次に掲げる金 額を合計して得た金額とする。
- 一 第百七十九条第一項の保険限度額
- 二 第百七十九条第二項の基準収入金額に、農 林水産省令で定める割合を乗じて得た金額 (次項において「基準補塡金額」という。)
- 4 第一項第二号の特約補塡金(次項において 「特約補塡金」という。)の金額は、補塡限 度額と当該被保険者の保険期間中の農業収入

제182조(특약)

- ① 농업경영수입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함께 다음에 열거하는 내용의 특약 을 할 수 있다.
- 1. 피보험자가 농업수입의 감소가 농업경영 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적립금을 전국연합회에 적립할 것
- 2. 전국연합회가 피보험자의 보험기간 중 농업수입금액이 보전한도액에 이르지 아니하는 때,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 특약보전금을 지급할 것
- 3. 전국연합회가 보험기간의 만료 후, 제1호의 적립금(이하 이 조에서 "적립금"이라 한다)의 금액에 잔여가 있는 때에는 그 잔여액은 해당 피보험자에게 환급할 것
- ② 적립금은 금액, 적립방법 및 그 밖의 사항이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2호의 보전한도액(다음 항에서 "보전한도액"이라 한다)은 다음에 열거하는 금액을 합계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 1. 제179조제1항의 보험한도액
- 2. 제179조제2항의 기준수입금액에 농림수 산성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다음 항에서 "기준보전금액"이라 한다)
- ④ 제1항제2호의 특약보전금(다음 항에서 "특약보전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보전한도 액과 해당 피보험자의 보험기간 중 농업수입

金額との差額に、補塡対象金額(基準補塡金額の範囲内において、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被保険者が申し出た金額をいう。第一号において同じ。)の基準補塡金額に対する割合を乗じて得た金額とする。ただし、次に掲げる金額のうちいずれか少ない金額を限度とする。

- 一 補塡対象金額
- 二 積立金の額に四を乗じて得た金額

5 前項の場合において、特約補塡金の金額の うち、その四分の一に相当する金額は積立金 をもつて充て、その四分の三に相当する金額 は第十八条の交付金をもつて充てるものとす る。

6 保険期間の満了日の翌日に開始する保険期間において第一項の特約を継続する場合には、同項第三号の規定にかかわらず、積立金の残余の額を当該保険期間における積立金の全部又は一部に充てることができる。

第百八十三条(保険期間)

農業経営収入保険の保険期間は、課税期間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て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 基準に従い事業規程で定める期間とする。

第百八十四条(死亡、解散等の場合の権利義 務の承継)

被保険者が死亡し、又は合併により解散し、 若しくは分割(農業経営収入保険の保険関係 に係る農業経営の全部を承継させるものに限 る。)をした場合には、その包括承継人は、 금액의 차액에 보전대상금액(기준보전금액의 범위 내에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신청한 금액을 말한다. 제1 호에서 같다)의 기준보전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 1. 보전대상금액
- 2. 적립금액에 4를 곱하여 얻은 금액
- ⑤ 전항의 경우, 특약보전금의 금액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적립금으로써 충당하고,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18조의 교부금으로써 충당한다.

⑥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개시하는 보험기간에 제1항의 특약을 계속하는 경우 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의 잔여액을 해당 보험기간의 적립금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3조(보험기간)

농업경영수입보험의 보험기간의 과세기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기 간으로 한다.

제184조(사망, 해산 등 경우의 권리의무 승계)

①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해 산하거나 분할(농업경영수입보험의 보험관계 와 관련된 농업경영의 전부를 승계시킨 것으 로 한정한다)을 한 경우에는 포괄승계인은 全国連合会の承諾を受けて、農業経営収入保 険の保険関係に関し被保険者の有していた権 利義務を承継することができる。被保険者 が、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農業 経営収入保険の保険関係に係る農業経営の全 部を一体として譲り渡した場合におけるその 譲受人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2 全国連合会は、前項の包括承継人が第百七十六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要件を満たしていないことその他の正当な理由がなければ、前項の承諾を拒むことができない。

第百八十五条(被保険者の遵守すべき事項)

全国連合会は、被保険者が、帳簿を備えて農作業の状況その他のその農業経営に関する事項を記入すべきこと、保険金額を変更すべき事由が生じた場合に全国連合会に通知すべきことその他の被保険者の遵守すべき事項として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事項を事業規程において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百八十六条 (免責事由)

次の場合には、全国連合会は、保険金の全部 又は一部につき、その支払の責任を免れるこ とができる。

一 第百七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込みを した被保険者が、当該申込みの際、当該申込 みに係る農業収入金額に関する農林水産省令 で定める重要な事実又は事項につき、悪意又 は重大な過失によつてこれを通知せず、又は 不実の通知をしたとき(全国連合会がこれを 知つていたとき、及び過失によつてこれを知 らなかつたときを除く。)。 전국연합회의 승낙을 받아 농업경영수입보험의 보험관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가진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농업경영수입보험의 보험관계와 관련된 농업경영의 전부를 일체로서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에 대해서도 같다.

② 전국연합회는 전항의 포괄승계인이 제 176조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 및 그 밖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전항의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제185조(피보험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전국연합회는 피보험자가 장부를 비치하여 농작업 상황 및 그 밖의 농업경영에 관한 사 항을 기입할 것, 보험금액을 변경하여야 하 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전국연합회에 통지 할 것 및 그 밖의 피보험자가 준수하여야 하 는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사업규정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186조(면책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전국연합회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책임을 면할 수있다.

1. 제1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한 피보험자가 해당 신청 시, 해당 신청과 관련된 농업수입금액에 관한 농림수산성령으로정하는 중요한 사실 또는 사항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통지를 한 때(전국연합회가이를 알고 있던 때 및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때를 제외한다)

- 二 被保険者が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保険料の払込みを遅滞したとき。
- 三 被保険者が前条の規定により事業規程で定められる被保険者の遵守すべき事項を遵守しなかつたとき。

四 被保険者が次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百二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義務を怠つたとき。

五 被保険者が次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百二十六条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かつたとき。

六 被保険者が次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百三十 条 (第一号を除く。)の規定による通知を怠 り、又は悪意若しくは重大な過失によつて不 実の通知をしたとき。

七 その他政令で定める事由があるとき。

第百八十七条(準用)

農業経営収入保険には、第百十八条第一項及 び第二項、第百二十条、第百二十五条から第 百二十七条まで、第百二十九条、第百三十条 (第一号を除く。)、第百三十一条第一項並 びに第百三十二条第三項並びに保険法第四 条、第六条、第十一条、第十七条第一項、第 二十条、第二十一条、第二十五条、第二十七 条、第二十八条、第三十条、第三十一条第一 項及び第二項(第二号を除く。)、第三十二 条 (第一号に係る部分に限る。) 並びに第九 十五条の規定を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 て、第百十八条第一項中「賦課する」とある のは「負担させる」と、同条第二項中「賦課 金の賦課」とあるのは「事務費の負担」と、 第百二十条中「賦課金」とあるのは「事務 費」と、第百二十五条第一項中「共済目的に

-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보험 료의 납입을 지체한 때
- 3. 피보험자가 전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피보험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4. 피보험자가 다음 조에서 준용하는 제125 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한 때
- 5. 피보험자가 다음 조에서 준용하는 제126 조의 규정에 따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 6. 피보험자가 다음 조에서 준용하는 제130 조(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통지 를 게을리하거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한 통지를 한 때
- 7.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187조(준용)

농업경영수입보험에는 제118조제1항 및 제2 항, 제120조,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 129조, 제130조(제1호를 제외한다), 제131 조제1항, 제132조제3항과 「보험법」 조, 제6조, 제11조제17조제1항, 제20조, 제 21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 31조제1항 및 제2항(제2호를 제외한다), 제 32조(제1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 118조제1항 중 "부과할 수"는 "부담시킬 수" 로, 같은 조 제2항 중 "부과금의 부과"는 "사 무비의 부담"으로, 제120조 중 "부과금"은 "사무비"로, 제125조제1항 중 "공제 목적에 관하여 통상 하여야 하는 관리 및 그 밖에 손해방지"는 "통상의 농업인이 실시하는 농 업경영과 관련된 노력 및 그 밖에 보험사고 ついて通常すべき管理その他損害防止」とあるのは「通常の農業者の行う農業経営に係る 努力その他保険事故の発生の防止」と、同条 第二項中「管理その他損害防止」とあるのは 「努力その他保険事故の発生の防止」と、第 百二十六条及び第百二十七条中「損害防止」 とあるのは「保険事故の発生の防止」と、第 百二十九条中「損害の防止又は」とあるのは 「保険事故の発生の防止又は保険事故の」 と、「共済目的のある土地又は工作物」とあるのは「被保険者の事務所その他の施設」と 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ほか、必要な技術的読 替えは、政令で定める。

第百八十八条 (業務の委託)

全国連合会は、農業経営収入保険事業に係る 業務のうち、保険料の徴収に係るもの、資金 の貸付けに係るもの(貸付けの決定を除 く。)その他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ものを次 に掲げる者に委託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農業共済組合、都道府県連合会又は共済事業を行う市町村
- 二 農業協同組合又は農業協同組合連合会その 他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金融機関
- 三 その他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法人
- 2 前項第一号に掲げる者は、同項の規定による委託を受けて同項に規定する業務を行うことができる。
- 3 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者は、農業協同組合法第十条の規定その他の法律の規定にかかわ

의 발생 방지"로,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 및 그 밖에 손해방지"는 "노력 및 그 밖에 보험사고의 발생 방지"로, 제126조 및 제 127조 중 "손해방지"는 "보험사고의 발생 방 지"로, 제129조 중 "손해의 방지 또는"은 "보험사고의 발생 방지 또는 보험사고의"로, "공제 목적이 있는 토지 또는 인공구조물"은 "피보험자의 사무소 및 그 밖의 시설"로 대 체하는 외에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188조(업무의 위탁)

- ① 전국연합회는 농업경영수입보험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 보험료의 징수와 관련된 것, 자금의 대부와 관련된 것(대부의 결정을 제외한다) 및 그 밖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다음에 열거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있다.
- 1. 농업공제조합, 도도부현 연합회 또는 공 제사업을 실시하는 시정촌
- 2.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 및 그 밖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금융기 관
- 3. 그 밖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법인
- ② 전항 제1호에 열거하는 자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을 받아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2호에 열거하는 자는 「농업협동 조합법」 제10조의 규정 및 그 밖의 법률의

らず、同項の規定による委託を受けて同項に 規定する業務を行うことができる。

第百八十九条 (秘密保持義務)

全国連合会の役員若しくは職員又はこれらの 職にあつた者は、農業経営収入保険に関して 知り得た秘密を漏らしては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委託を受けて行う農業経営収入保険に係る業務に従事する者又はこれらの者であつた者について準用する。

第百九十条(連携及び技術的な協力の確保 等)

全国連合会は、農業経営収入保険事業の効率 的かつ円滑な実施を図るため、全国連合会の 行う事業と同種の事業を行う者(農業の担い 手に対する経営安定のための交付金の交付に 関する法律(平成十八年法律第八十八号)第 四条第一項の交付金を交付する事業その他の 農業収入の減少について補塡を行う事業を行 う者を含む。)との連携及び技術的な協力の 確保に努めるものとする。

- 2 全国連合会は、農業経営収入保険事業の実施に関して必要があるときは、国、独立行政法人、地方公共団体及び対象農産物等の販売の事業を行う者その他の関係者に対し、資料又は情報の提供その他必要な協力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 3 行政庁は、全国連合会に対し、農業経営収入保険事業の効率的かつ円滑な実施に関し必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을 받아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89조(비밀유지의무)

- ① 전국연합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는 농업경영수입보험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전항의 규정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농업경영수입보험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러한자였던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90조(연계 및 기술적인 협력의 확보)

- ① 전국연합회는 농업경영수입보험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실시하는 자(「농업담당자에 대한 경영안정을 위한 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법률」(2006년 법률 제88호) 제4조제1항의 교부금을 교부하는 사업 및 그 밖의 농업수입 감소에 대하여 보전을 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자를 포함한다)와의 연계 및 기술적인 협력 확보에노력한다.
- ② 전국연합회는 농업경영수입보험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 독립행정법인, 지방공공단체 및 대상농산물 등의 판매 사업을 하는 자 및 그 밖의 관계자에게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전국연합회에 대하여 농업경영 수입보험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실시에

要な情報の提供又は指導若しくは助言を行う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

第五章 政府の再保険事業等

第一節 農業共済責任保険事業に係る再 保険事業

第百九十一条(政府の再保険事業)

政府は、都道府県連合会が第九十七条第一項 第一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共済事業に係 る保険事業によつてその組合員に対して負う 保険責任を再保険するものとする。

第百九十二条 (再保険関係の成立)

都道府県連合会とその組合員との間に第九十七条第一項第一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共済事業に係る保険事業の保険関係が存する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政府と当該都道府県連合会との間に、当該保険事業に係る再保険事業の再保険関係が存するものとする。

第百九十三条 (再保険金額等)

前条の再保険関係に係る再保険金額、再保険 料及び再保険金に関し必要な事項は、政令で 定める。

第百九十四条 (再保険料の分割支払)

政府は、都道府県連合会が事業規程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組合員から保険料を分割して徴収するときは、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都道府県連合会の支払うべき再保険料を分割して支払わせることができ

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지도나 조 언을 하도록 노력한다.

제5장 정부의 재보험사업 등 제1절 농업공제책임보험사업과 관련된 재보험사업

제191조(정부의 재보험사업)

정부는 도도부현 연합회가 제97조제1항제1 호부터 제5호까지에 열거하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보험사업에 의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지는 보험책임을 재보험한다.

제192조(재보험관계의 성립)

도도부현 연합회와 조합원 간에 제97조제1 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열거하는 공제사 업과 관련된 보험사업의 보험관계가 존재하 는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와 해당 도도부현 연합회 간에 해당 보험사 업과 관련된 재보험사업의 재보험관계가 존 재한다.

제193조(재보험금액 등)

전조의 재보험관계와 관련된 재보험금액, 재 보험료 및 재보험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194조(재보험료의 분할지급)

정부는 도도부현 연합회가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보험료를 분할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도부현 연합회가지급하여야 하는 재보험료를 분할하여 지급

る。

第百九十五条 (通知義務)

都道府県連合会は、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農林水産大臣に対し、当該都道府県連合会とその組合員との間に存する保険関係に関し必要な事項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り通知した事項に変更を生じたときは、都道府県連合会は、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れを農林水産大臣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百九十六条

都道府県連合会は、保険金の支払をすべき原 因が発生したと認めるときは、農林水産省令 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遅滞なく、その旨を 農林水産大臣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百九十七条(免責事由)

次に掲げる場合には、政府は、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再保険金の全部又は一部につき、その支払の責任を免れることができる。

- 一 都道府県連合会が法令又は事業規程に違反 して保険金を支払つたとき。
- 二 都道府県連合会が損害額を不当に認定して 保険金を支払つたとき。
- 三 都道府県連合会が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再 保険料の払込みを遅滞したとき。

四 都道府県連合会が前二条の規定による通知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5조(통지의무)

① 도도부현 연합회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대신에게 해당 도도부현 연합회와 조합원 간에 존재하는 보험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도도부현 연합회는 농림수산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림수산대 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6조

도도부현 연합회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원인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수산대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7조(면책사유)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농림수산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 다.

- 1. 도도부현 연합회가 법령 또는 사업규정을 위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
- 2. 도도부현 연합회가 손해액을 부당하게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
- 3. 도도부현 연합회가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 도 재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한 때
- 4. 도도부현 연합회가 전2조의 규정에 따른

を怠り、又は悪意若しくは重大な過失によつ て不実の通知をしたとき。

第百九十八条(審査の申立て)

都道府県連合会は、再保険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不服があるときは、農漁業保険審査会に 審査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場合には、第百七十一条第二項の規定を準用する。

第百九十九条 (準用)

この節の規定による政府の再保険事業には、 第百十九条及び第百二十条並びに保険法第十 一条の規定を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 必要な技術的読替えは、政令で定める。

第二節 農業共済事業に係る保険事業

第二百条(政府の保険事業)

政府は、特定組合又は全国連合会(次条において「特定組合等」という。)が第九十七条 第一項第一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共済事業によつてその組合員に対して負う共済責任 を保険するものとする。

第二百一条 (保険関係の成立)

特定組合等とその組合員との間に第九十七条 第一項第一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共済事業の共済関係が存するときは、政令で定める ところにより、政府と当該特定組合等との間 に、当該共済事業に係る保険事業の保険関係 が存するものとする。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에 의하여 부실한 통지를 한 때

제198조(심사의 신청)

① 도도부현 연합회는 재보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농어업보험심사 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제17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9조(준용)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재보험사업에는 제119조 및 제120조, 「보험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2절 농업공제사업과 관련된 보험사업

제200조(정부의 보험사업)

정부는 특정조합 또는 전국연합회(다음 조에서 "특정조합 등"이라 한다)가 제97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열거하는 공제사업에 의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지는 공제책임을 보험한다.

제201조(보험관계의 성립)

특정조합 등과 조합원 간에 제97조제1항제1 호부터 제5호까지에 열거하는 공제사업의 공제관계가 존재하는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정부와 해당 특정조합 등 간에 해당 공제사업과 관련된 보험사업의 보험관 계가 존재하다.

第二百二条 (保険金額等)

前条の保険関係に係る保険金額、保険料及び 保険金に関し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

第二百三条(準用)

政府の保険事業には、第百七十条(第三号に 係る部分に限る。)及び第百九十四条から第 百九十九条までの規定を準用する。この場合 において、必要な技術的読替えは、政令で定 める。

第三節 農業経営収入保険事業に係る再 保険事業

第二百四条 (政府の再保険事業)

政府は、全国連合会が農業経営収入保険によって被保険者に対して負う保険責任を再保険 するものとする。

第二百五条 (再保険関係の成立)

全国連合会と保険資格者との間に農業経営収入保険の保険関係が存する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政府と全国連合会との間に、農業経営収入保険に係る再保険事業の再保険関係が存するものとする。

第二百六条 (再保険金額等)

前条の再保険関係に係る再保険金額、再保険料及び再保険金に関し必要な事項は、政令で 定める。

第二百七条(準用)

この節の規定による政府の再保険事業には、

제202조(보험금액 등)

전조의 보험관계과 관련된 보험금액, 보험료 및 보험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203조(준용)

정부의 보험사업에는 제170조(제3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94조부터 제1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3절 농업경영수입보험사업과 관련된 재보험사업

제204조(정부의 재보험사업)

정부는 전국연합회가 농업경영수입보험에 의하여 피보험자에 대하여 지는 보험책임을 재 보험한다.

제205조(재보험관계의 성립)

전국연합회와 보험자격자 간에 농업경영수입 보험의 보험관계가 존재하는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와 전국연합회 간에 농업경영수입보험과 관련된 재보험사업의 재보험관계가 존재한다.

제206조(재보험금액 등)

전조의 재보험관계와 관련된 재보험금액, 재 보험료 및 재보험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207조(준용)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재보험사업에는

第百二十条、第百七十条(第三号に係る部分に限る。)及び第百九十四条から第百九十八条まで並びに保険法第十一条及び第九十五条の規定を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必要な技術的読替えは、政令で定める。

第六章 監督

第二百八条 (報告)

行政庁は、農業共済団体又は共済事業を行う 市町村(以下「農業共済団体等」という。) が法令、法令に基づいてする行政庁の処分又 は定款等若しくは共済事業の実施に関する条 例を守つているかどうかを知るために必要が あるときは、農業共済団体等又は受託者(第 百十四条第一項又は第百八十八条第一項の規 定により農業共済団体等から業務の委託を受 けた者をいう。以下同じ。)からその業務又 は会計(共済事業を行う市町村にあつては 会計に限る。以下同じ。)に関し必要な報告 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九条 (検査)

行政庁は、農業共済団体等が法令、法令に基づいてする行政庁の処分又は定款等若しくは 共済事業の実施に関する条例を守つているか どうかを知るために必要があるときは、農業 共済団体等又は受託者の業務又は会計の状況 を検査することができる。

2 行政庁は、農業共済団体等の業務又は会計の状況につき、毎年一回を常例として検査し

제120조, 제170조(제3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94조부터 제198조까지, 「보험법」 제11조 및 제95조의 규정을 준 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정 령으로 정한다.

제6장 감독

제208조(보고)

행정청은 농업공제단체 또는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시정촌(이하 "농업공제단체 등"이라한다)이 법령, 법령에 기초하여 실시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정관 등이나 공제사업의실시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알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업공제단체 등또는 수탁자(제114조제1항 또는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공제단체 등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같다)로부터 업무 또는 회계(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시정촌의 경우에는 해당 공제사업과관련된 업무 또는 회계, 수탁자의 경우에는위탁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회계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요구할 수 있다.

제209조(검사)

- ① 행정청은 농업공제단체 등이 법령, 법령에 기초하여 실시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정관 등이나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업공제단체 등 또는 수탁자의 업무또는 회계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농업공제단체 등의 업무 또는 회계 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를 상례로 검

なければならない。

3 組合員が、総組合員の二十分の一以上の同意を得て、行政庁に対し、農業共済団体又は受託者の業務又は会計が法令、法令に基づいてする行政庁の処分又は定款等に違反する疑いがあることを理由として当該農業共済団体又は受託者の検査を行うべき旨を請求したときは、当該行政庁は、当該農業共済団体又は受託者の業務又は会計の状況を検査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前三項の規定による検査をする職員は、その身分を示す証明書を携帯し、関係人の請求があつたときは、これを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による検査の 権限は、犯罪捜査のために認められたものと 解してはならない。

第二百十条(必要な措置等の命令)

行政庁は、第二百八条の規定により報告を求め、又は前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により検査を行つた場合において、農業共済団体又は受託者の業務又は会計が法令、法令に基づいてする行政庁の処分又は定款等に違反す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農業共済団体又は当該受託者に業務を委託した農業共済団体に対し、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2 行政庁は、前項の規定によるほか、この法 律の規定による共済事業又は保険事業を適正 かつ効率的に行わせる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 きは、農業共済団体に対し、これらの事業に つき、業務の執行方法の変更その他監督上必 사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이 총 조합원의 2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정청에 대하여 농업공제단체 또는 수탁자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 에 기초하여 실시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정관 등을 위반하는 의심이 있음을 이유로 해당 농업공제단체 또는 수탁자를 검사하여 야 하는 사실의 청구를 한 때에는 해당 행정 청은 해당 농업공제단체 또는 수탁자의 업무 또는 회계 상황을 검사하여야 한다.

④ 전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직원 은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 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0조(필요한 조치 등의 명령)

① 행정청은 제208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요구하거나 전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 농업공제단체 또는 수탁자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기초하여 실시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정관 등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농업공제단체 또는 해당 수탁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농업공제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실을 명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외에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 또는 보험사업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농업공제단체에 대하여 이러한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집행방법의

要な命令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十一条(必要な措置等の指示)

都道府県知事は、第二百八条の規定により報告を求め、又は第二百九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検査を行つた場合において、共済事業を行う市町村又は受託者の業務又は会計が法令、法令に基づいてする行政庁の処分又は共済事業の実施に関する条例に違反す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市町村又は当該受託者に業務を委託した共済事業を行う市町村に対し、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旨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2 都道府県知事は、前項の規定によるほか、この法律の規定による共済事業を適正かつ効率的に行わせる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きは、共済事業を行う市町村に対し、当該事業につき、業務の執行方法の変更その他監督上必要な指示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十二条(役員の改選等の命令)

農業共済団体が第二百十条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ときは、行政庁は、当該農業共済団体に対し、期間を指定して、その役員の全部又は一部の改選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 2 農業共済団体が前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 反したときは、行政庁は、当該命令に係る役 員を解任することができる。
- 3 農業共済団体が第二百十条の規定による命 令に違反したときは、行政庁は、当該農業共

변경 및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수 있다.

제211조(필요한 조치 등의 지시)

① 도도부현지사는 제208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요구하거나 제209조제1항 또는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시정촌 또는 수탁자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기초하여 실시하 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 당 시정촌 또는 해당 수탁자에게 업무를 위 탁한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시정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실을 지시할 수 있 다.

② 도도부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시정촌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집행 방법의변경 및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수 있다.

제212조(임원 변경 선임 등의 명령)

- ① 농업공제단체가 제21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청은 해당 농업공 제단체에 기간을 지정하여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선임을 명할 수 있다.
- ② 농업공제단체가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청은 해당 명령과 관련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③ 농업공제단체가 제21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청은 해당 농업공

済団体の解散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十三条(決議等の取消し)

行政庁は、組合員が総組合員の十分の一以上の同意を得て、総会若しくは総代会の招集手続若しくは議決の方法又は役員若しくは総代の選挙が法令、法令に基づいてする行政庁の処分又は定款に違反することを理由として、その議決又は選挙若しくは当選の決定の日から一月以内に当該決議又は選挙若しくは当選の取消しを請求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違反の事実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決議又は選挙若しくは当選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第七章 独立行政法人農林漁業信用基金 の農業保険関係業務

第二百十四条(独立行政法人農林漁業信用基 金の業務)

独立行政法人農林漁業信用基金(以下「信用基金」という。)は、農業共済団体等が行う 共済事業及び保険事業の健全な運営に資する ため、これらの事業に必要な資金の供給を円 滑に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次に掲げる業務 を行う。

- 一 農業共済団体等が農作物共済、家畜共済、 果樹共済、畑作物共済又は園芸施設共済に係 る共済金又は保険金の支払に関して必要とす る資金の貸付け
- 二 全国連合会が農業経営収入保険に係る保険 金の支払又は第百七十五条第二項第二号の資 金の貸付けに関して必要とする資金の貸付け

제단체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213조(결의 등의 취소)

행정청은 조합원이 총 조합원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 또는 대표회의 소집절차나 의결방법 또는 임원이나 대표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기초하여 실시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함을 이유로 하여 의결 또는 선거나 당선의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결의 또는 선거나 당선의취소를 청구한 경우, 위반의 사실이 있다고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결의 또는 선거나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장 독립행정법인 농림어업신용기금 의 농업보험 관계 업무

제214조(독립행정법인 농림어업신용기금의 업무)

- ① 독립행정법인 농림어업신용기금(이하 "신용기금"이라 한다)은 농업공제단체 등이 실시하는 공제사업 및 보험사업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1. 농업공제단체 등이 농작물공제, 가축공제, 과수공제, 밭작물공제 또는 원예시설공제와 관련된 공제금 또는 보험금의 지급과 관련하 여 필요로 하는 자금의 대부
- 2. 전국연합회가 농업경영수입보험과 관련된 보험금의 지급 또는 제175조제2항제2호의 자금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자금의 대부

[]

三 農業共済団体等が農作物共済、家畜共済、 果樹共済、畑作物共済又は園芸施設共済に係 る共済金又は保険金の支払に関して金融機関 に対し負担する債務の保証

四 全国連合会が農業経営収入保険に係る保険金の支払又は第百七十五条第二項第二号の資金の貸付けに関して金融機関に対し負担する債務の保証

五 前各号に掲げる業務に附帯する業務

2 信用基金は、前項の規定により行う業務に 必要な資金に充てるため、農業共済団体等か ら金銭の寄託を引き受け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十五条 (業務の委託)

信用基金は、業務方法書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前条の規定により行う業務(以下「農業保険関係業務」という。)の一部を、農林中央金庫、農業協同組合法第十条第一項第二号及び第三号の業務を併せ行う農業協同組合連合会その他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金融機関に委託することができる。

- 2 信用基金は、業務方法書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農業共済団体等に係る資金の貸付け又は債務の保証の業務の一部を当該農業共済団体等の所属する農業共済組合連合会に委託することができる。
- 3 第一項に規定する者は、他の法律の規定にかかわらず、同項の規定による委託を受け、当該業務を行うことができる。

- 3. 농업공제단체 등이 농작물공제, 가축공제, 과수공제, 밭작물공제 또는 원예시설공제와 관련된 공제금 또는 보험금의 지급과 관련하 여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채무의 보증
- 4. 전국연합회가 농업경영수입보험과 관련된 보험금의 지급 또는 제175조제2항제2호의 자금 대부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채무의 보증
- 5. 전 각 호에 열거하는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 ② 신용기금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업 공제단체 등으로부터 금전의 기탁을 인수할 수 있다.

제215조(업무의 위탁)

- ① 신용기금은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전조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이하 "농업보험 관계 업무"라 한다)의 일부를 농림중앙금고, 「농업협동조합법」 제10조제 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병행하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 및 그 밖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신용기금은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공제단체 등과 관련된 자금대부 또는 채무보증 업무의 일부를 해당 농업공제단체 등이 소속된 농업공제조합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을 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農業共済組合連合会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委託を受け、当該業務を行うことができる。

第二百十六条(貸付金等の使用)

農業共済団体等は、信用基金から貸付けを受けた資金(次項において「貸付金」という。)又は信用基金の保証に係る借入金を農作物共済、家畜共済、果樹共済、畑作物共済若しくは園芸施設共済若しくは農業経営収入保険に係る共済金若しくは保険金の支払又は第百七十五条第二項第二号の資金の貸付け以外の目的に使用してはならない。

2 農業共済団体等が前項の規定に違反して貸付金又は同項の借入金を他の目的に使用したときは、信用基金は、業務方法書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農業共済団体等に対し、貸付金の弁済期前の償還、違約金の納付その他必要な措置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十七条 (区分経理)

信用基金は、農業保険関係業務に係る経理については、農業保険関係勘定を設けて、その他の業務に係る経理と区分して整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十八条 (農業保険関係資金)

信用基金は、農業保険関係業務に関して、農業保険関係資金を設け、政府、農業共済組合連合会及び特定組合が当該農業保険関係資金に充てるべきものとして示して出資した額に相当する額をもつてこれに充てなければなら

④ 농업공제조합연합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을 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다.

제216조(대부금 등의 사용)

① 농업공제단체 등은 신용기금으로부터 대부를 받은 자금(다음 항에서 "대부금"이라한다) 또는 신용기금의 보증과 관련된 차입금을 농작물공제, 가축공제, 과수공제, 밭작물공제나 원예시설공제 또는 농업경영수입보험과 관련된 공제금이나 보험금의 지급 또는제175조제2항제2호의 자금대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농업공제단체 등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부금 또는 같은 항의 차입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신용기금은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업공제단체등에 대부금 변제기 전의 상환, 위약금의 납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7조(구분경리)

신용기금은 농업보험 관계 업무와 관련된 경리에 대해서는 농업보험 관계 계정을 설치하고, 그 밖의 업무와 관련된 경리와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218조(농업보험 관계 자금)

① 신용기금은 농업보험 관계 업무와 관련하여 농업보험 관계 자금을 설치하고, 정부, 농업공제조합연합회 및 특정조합이 해당 농 업보험 관계 자금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시하여 출자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ない。

2 農業共済組合連合会及び特定組合は、前項 の農業保険関係資金に充てるべきものとして 示して出資する場合に限り、信用基金に出資 することができる。

3 第一項の農業保険関係資金に係る持分については、農業共済組合連合会又は特定組合でなければ、その譲渡し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

第二百十九条 (財務大臣との協議)

農林水産大臣は、次に掲げる場合には、財務 大臣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第二百十五条第一項の農林水産省令を定め ようとするとき。
- 二 農業保険関係業務に関して独立行政法人農 林漁業信用基金法 (平成十四年法律第百二十 八号) 第十六条第一項の承認をしようとする とき。

第二百二十条(独立行政法人農林漁業信用基金法の特例)

農業保険関係業務についての独立行政法人農林漁業信用基金法第五条第六項、第十六条第一項、第二十条第一項及び第二十三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法第五条第六項中「第十五条各号に掲げる業務」とあるのは「第十五条各号に掲げる業務及び農業保険関係業務」と、同法第十六条第一項中「前条各号に掲げる業務及び農業保険関係業務」とあるのは「前条各号に掲げる業務及び農業保険関係業務」と、同法第二十条第一項中「又は

써 이에 충당하여야 한다.

- ② 농업공제조합연합회 및 특정조합은 전항 의 농업보험 관계 자금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시하여 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 용기금에 출자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농업보험 관계 자금과 관련된 지분에 대해서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 또는 특정조합이 아니면 양도를 받을 수 없다.

제219조(재무대신과의 협의)

농림수산대신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재무대신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제215조제1항의 농림수산성령을 정하고 자 하는 때
- 2. 농업보험 관계 업무에 관하여 「독립행정법인 농림어업신용기금법」(2002년 법률 제128호) 제16조제1항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

제220조(「독립행정법인 농림어업신용기금법」 의 특례)

농업보험 관계 업무에 대한 「독립행정법인 농림어업신용기금법」 제5조제6항, 제16조 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제23 조제1항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조제6항 중 "제15조 각 호에 열거하는 업무"는 "제15조 각 호에 열거하는 업무 및 농업보험 관계 업무"로, 같은 법 제16조제1 항 중 "전조 각 호에 열거하는 업무"는 "전 조 각 호에 열거하는 업무 및 농업보험 관계 업무"로, 같은 법 제20조제1항 중 " 또는 中小漁業融資保証法」とあるのは「、中小漁 業融資保証法又は農業保険法」と、同法第二 十二条第二項及び第二十三条第一項中「第十 五条各号に掲げる業務」とあるのは「第十五 条各号に掲げる業務及び農業保険関係業務」 とする。

第八章 補則

第二百二十一条 (損害評価会)

組合等及び都道府県連合会に、損害評価会を 置く。

- 2 損害評価会は、事業規程等で定めるところ により、共済事故に係る損害の防止及び認定 に関する重要事項について調査審議する。
- 3 損害評価会は、前項に規定する事項に関し 学識経験を有する者のうちから、事業規程等 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農業共済団体の理 事又は共済事業を行う市町村の長が選任した 委員をもつて組織する。
- 4 前三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損害評価会の組織及び運営に関し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

第二百二十二条(都道府県農業共**済保険**審査会)

都道府県に都道府県農業共済保険審査会を置く。ただし、当該都道府県の区域をその区域とする都道府県連合会がない場合には、当該都道府県に都道府県農業共済保険審査会を置かないことができる。

2 都道府県農業共済保険審査会は、第百七十

「중소어업융자보증법」"은 ", 「중소어업융자보증법」 또는 「농업보험법」"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중 "제15조 각 호에 열거하는 업무"는 "제15조 각 호에 열거하는 업무 및 농업보험 관계 업무"로한다.

제8장 보칙

제221조(손해평가회)

- ① 조합 등 및 도도부현 연합회에 손해평가 회를 설치한다.
- ② 손해평가회는 사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고와 관련된 손해의 방지 및 인정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다.
- ③ 손해평가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사업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업공 제단체의 이사 또는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시 정촌의 장이 선임한 위원으로써 조직한다.
- ④ 전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손해평가 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222조(도도부현 농업공제보험심사회)

- ① 도도부현에 도도부현 농업공제보험심사회를 설치한다. 다만,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을 그 구역으로 하는 도도부현 연합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도도부현에 도도부현 농업공제보험심사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도도부현 농업공제보험심사회는 제171조

- 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その権限に属させられた事項を処理するほか、都道府県知事の諮問に応じて次の事項を調査審議する。
- ー 農業災害の発生、予防及び防止に関する事 項
- 二 共済掛金、共済金額、保険料及び保険金額のうち都道府県の区域の全部又は一部をその区域とする農業共済団体等が行う共済事業又は保険事業に係るものの適正化に関する事項
- 三 その他この法律の運用に関する重要事項
- 3 前二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都道府県農業共済保険審査会に関し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

第二百二十三条 (農漁業保険審査会)

農林水産省に農漁業保険審査会を置く。

- 2 農漁業保険審査会は、第百九十八条第一項 (第二百三条及び第二百七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漁船損害等補償法(昭和二十七年法律第二十八号)第百三十七条第一項及び漁業災害補償法(昭和三十九年法律第百五十八号)第百四十七条の十三第二項の規定によりその権限に属させられた事項を処理する。
- 3 前二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農漁業保険審査会に関し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

第二百二十四条 (行政庁)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에 속하게 된 사항을 처리하는 외에 도도부현지사의 자문에따라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 1. 농업재해의 발생,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
- 2. 공제부금, 공제금액, 보험료 및 보험금액 중 도도부현의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구 역으로 하는 농업공제단체 등이 실시하는 공 제사업 또는 보험사업과 관련된 것의 적정화 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이 법률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 ③ 전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도도부현 농업공제보험심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223조(농어업보험심사회)

- ① 농림수산성에 농어업보험심사회를 설치한다.
- ② 농어업보험심사회는 제198조제1항(제 203조 및 제20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어선손해 등 보상법」(1952년 법률 제28호) 제137조제1항 및 「어업재해 보상법」(1964년 법률 제158조) 제147조의 1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에 속하게 된 사항을 처리한다.
- ③ 전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농어업보 험심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224조(행정청)

この法律の規定中「行政庁」とあるのは、第七十二条及び第七十三条第一項の場合並びに「法令に基づいてする行政庁の処分」とある場合を除いて、農業共済組合(都道府県の区域を超える区域をその区域とするものを除く。)及び共済事業を行う市町村については都道府県知事(第二百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検査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は、都道府県知事の要請があり、かつ、農林水産大臣が必要があると認める場合には、農林水産大臣及び都道府県知事)、その他の農業共済団体については農林水産大臣とする。

第二百二十五条 (事務の区分)

この法律(第百七十一条第一項及び第二百二十二条第二項を除く。)の規定により都道府県が処理することとされている事務は、地方自治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六十七号)第二条第九項第一号に規定する第一号法定受託事務とする。

第二百二十六条(農林水産省令への委任)

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実施のための手続その他この法律の施行に関し必要な事項は、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

第九章 罰則

第二百二十七条

第百八十九条第一項(同条第二項において準 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違反して秘密 を漏らした者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 る。 이 법률의 규정 중 "행정청"은 제72조 및 제73조제1항의 경우 및 "법령에 기초하여 실시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농업공제조합(도도부현의 구역을 넘는 구역을 그 구역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시정촌에 대해서는 도도부현지사(제20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도부현지사의 요청이 있고, 농림수산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대신 및 도도부현지사), 그 밖의 농업공제단체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대신으로 한다.

제225조(사무의 구분)

이 법률(제171조제1항 및 제222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1947년 법률 제67호) 제2조제9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1호 법정수탁사무로 한다.

제226조(농림수산성령에 대한 위임)

이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이 법률의 실 시를 위한 절차 및 그 밖에 이 법률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다.

제9장 벌칙

제227조

제189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二百二十八条

第二百八条の規定による報告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報告をし、又は第二百九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による検査を拒み、妨げ、若しくは忌避した者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第二百二十九条

農業共済団体又は受託者の代表者又は代理人、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が、その農業共済団体の業務又は受託者の受託した業務に関して前条の違反行為をしたときは、行為者を罰するほか、その農業共済団体又は受託者に対しても、同条の刑を科する。

第二百三十条

次の場合には、農業共済団体の役員又は清算 人を五十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

- 一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行政庁の認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にその認可を受けなかったとき。
- 二 農業共済団体が法律の規定により行うことができる事業以外の事業を行つたとき。
- 三 第七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登記をすることを怠つたとき。
- 四 第四十条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

五 第四十八条第一項、第四十九条第一項又は第五十条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

六 第五十二条第一項若しくは第五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書類を備え置かず、その 書類に記載すべき事項を記載せず、若しくは

제228조

제208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허위로 보고를 하거나, 제209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229조

농업공제단체 또는 수탁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사자가 농업공제단체의 업무 또는 수탁자가 수탁한 업무와관련하여 전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농업공제단체 또는 수탁자에 대해서도 같은 조의 형을 부과한다.

제230조

다음의 경우에는 농업공제단체의 임원 또는 청산인은 50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 1.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
- 2. 농업공제단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실시한 때
- 3.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기하는 것을 게을리한 때
- 4.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 5.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 6.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

不実の記載をし、又は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 第五十二条第二項若しくは第五十三条第二項 の規定による閲覧を拒んだとき。

七 第五十四条第四項(第六十一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第五十七条第四項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

八 第五十八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せず、又は虚偽の届出をしたとき。

九 第六十二条から第六十四条まで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

十 第六十八条又は第六十九条第二項(これらの規定を第九十三条及び第九十四条第三項に 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違反 して合併又は事業譲渡をしたとき。

十一 第七十九条又は第八十五条に規定する書類に記載すべき事項を記載せず、又は不実の記載をしたとき。

十二 第八十条第一項の期間内に債権者に弁済 をしたとき。

十三 第八十条第一項又は第八十二条第一項の 規定による公告を怠り、又は不実の公告をし たとき。

十四 第八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破産手続開始の申立てを怠つたとき。

十五 第百二十一条(第百七十二条において準 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違反したと き。

十六 第二百十条の規定による命令に従わなかったとき。

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제52조제2항 또는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을 거부한 때

- 7. 제54조제4항(제6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7조제4항의 규정 을 위반한 때
- 8.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때
- 9.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 10. 제68조 또는 제69조제2항(이러한 규정을 제93조 및 제9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합병 또는 사업양도를 한 때
- 11. 제79조 또는 제85조에서 규정하는 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기재를 한 때
- 12. 제80조제1항의 기간 내에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때
- 13. 제80조제1항 또는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공고를 한 때
- 14. 제8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산절 차개시의 신청을 게을리한 때
- 15. 제121조(제1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때
- 16. 제21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十七 法令又は定款に違反して剰余金を処分 | 17.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잉여금을 처 し、又は共済金額を削減したとき。

第二百三十一条

第四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た者は、十万円 以下の過料に処する。

분하거나 공제금액을 삭감한 때

제231조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Table 1]

区分	割合
○・○三以下の部分	百分の五十
○・○三を超える部分	百分の五十五

[丑 1]

[22 2]	
구분	비율
0.03 이하의 부분	100분의 50
0.03을 초과하는 부분	100분의 55